

#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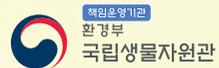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엮음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⑧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⑧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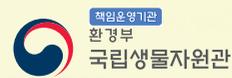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TEL 032-590-7173 FAX 032-590-7165 <http://www.abs.go.kr>



9 788968 113406 94360  
ISBN 978-89-6811-340-6  
ISBN 978-89-6811-304-8 (세트)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377-01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⑧

#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6-2017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엮음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⑧

#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6-2017

이 자료집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간한 ABS 뉴스레터의  
기사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발행일 2018년 5월  
발행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기획 최선두, 오현경, 안능호, 유진희, 송송이  
디자인 베이스라인 [www.baseline.co.kr](http://www.baseline.co.kr)  
인쇄 수프린팅

© 2018. 국립생물자원관 All rights reserved.

ISBN 978-89-6811-340-6(94360)  
978-89-6811-304-8(세트)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377-01

목 차

아시아

발간사	08
말레이시아, 생물해적행위 규제 법안 대의원 통과 	11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법령 채택 	12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 州, 366개 마을 생물다양성기록부 작성 	13
인도 상무부 장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 법률 제도 도입 주장 	14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온라인 포털 구축 	15
인도, ABSCH에 24건의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 일괄 등록 	16
인도 마하라시트라 주 6개 기업, ABS 로열티 지불에 합의 	17
인도네시아, 외국인들의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진행 중 	18
일본 도쿄농업대학,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엄' 협약 체결 	19
일본 종자회사 사카타(Sakata), 신종종 개발 이익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 예정 	19
일본 종자회사 사카타(Sakata) 사,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 	20
일본 와타나베 교수, 일본인 최초로 ABS 의무준수인증서(IRCC) 획득 	21
일본 환경성, 3개 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서 일본 ABS 지침(안) 설명회 개최 	22
일본, 2월 10일 '유전자원 ABS지침(안)' 공청회 개최 	23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찌 산코'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나고야의정서 포함 	24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공개, 4월 22일까지 국민 의견 접수 	25
중국 전문가와 함께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동향을 논한다! 7월 13일 제16차 ABS 포럼 개최 소식 	25
중국 나고야의정서 가입! 	26
필리핀 정부, ABS 행정명령 연내 마무리 	27
한국 '생물자원 원료 중계업체 대상 나고야의정서 세미나' 개최 	28
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확정·공포 	29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제20차 한국ABS포럼 개최 	30
한국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 	31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심포지엄 성공리에 마쳐 	32
한국 7월 6일 국제심포지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 개최 	34
한국 제16차 생물자원 전통지식 전문가 포럼 개최 	35
한국, 일본 나고야의정서 비준... 8월 중순부터 당사국된다 	36
한국 제19차 ABS 포럼 개최 	37
한국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개최 	38
한국 2월 14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관련 세미나 개최 	39
한국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40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콘퍼런스 개최 	41
한국 제18차 한국 ABS 포럼 개최 	42

유럽

한국 제16차 한국ABS 포럼 개최...“최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중국과의 협력 논의” 	43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제15차 한국 ABS 포럼 개최 	43
기타 아시아동향	44
네덜란드 CBI(개도국 수입지원센터), 화장품 원료상품의 EU시장 진출 시 고려할 법제도 안내문 배포 	59
네덜란드, 몰도바, 말리, 나고야의정서 비준 	59
네덜란드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2016년 4월 발효 	60
독일, 74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 	61
독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62
룩셈부르크와 시에라리온,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63
벨기에와 불가리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64
벨기에 정부제출 나고야 비준법안, 국회 위원회에서 채택 	64
불가리아 정부,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국회제출 예정 	65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나고야의정서 비준 	65
스위스, 나고야의정서와 ABS: 과학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 워크숍 개최 	66
스위스 연방의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례 가결 	67
스페인 프로비탈 그룹, 화장품 원료회사 최초로 ABS 의무준수인증서(IRCC) 획득 	68
슬로바키아 나고야의정서 수락,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70개국 돌파 	69
영국 왕립 원예협회 워킹그룹,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성명 발표 	70
포르투갈, 나고야의정서 비준...현재까지 비준국 수 97개국 	71
프랑스 정부 연구기관(IRD), 생물해적행위 논란 이후 자국령 지방정부들과 이익공유 합의 	72
핀란드 나고야의정서 수락 - 나고야의정서 77개국 비준 	73
기타 유럽동향	74

아프리카

나미비아 의회, ABS 법률안 심의 중 	83
나미비아 환경부장관, “자국 ABS법 도입 절차 막바지 단계” 	84
남아공,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등록 	85
부탄, 나고야의정서-ITPGRFA 상호 이행 워크숍 개최 	86
상투메프린시페,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재까지 비준국 수 94개국 	86
세네갈, 나고야의정서 비준(16.3.3), 총 73개 비준국 돌파 	87

## 아메리카

아프리카 환경 전문가들 생물해적행위 대책 논의	88
잠비아,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등 보호법 마련 	89
차드·레바논, 나고야의정서 비준 - 비준국 수 104개국  	89
케냐 ABS 정보포탈 접근 허가 신청 현황 	90
토고와 영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91
기타 아프리카동향	92

과라니족(Guarani), "코카콜라, 스테비아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중단하라"	97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나고야의정서 적용 잠정 중단 결정 	98
과테말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의무준수 인증서 등록 	98
멕시코 환경 시민단체, 멕시코 생물다양성 입법 반대 성명서 제출 	99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출처 확인 가능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
미국 특허청 서 출원된 천연 색소 특허에 최초로 ABS 언급돼 	101
미국 Maxey 화장품, 케이맨 제도와 산호 수확 이익공유계약 체결 	102
볼리비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비준국 수 87개국 달성 	103
나고야의정서 102번째 당사국, 에콰도르 	103
에콰도르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국가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 지목 	104
트리니다드토바고: 나고야의정서 비준 결정을 위해 카리브해 지역 프로젝트 참여 	105
페루 반생물해적행위위원회, 자국 생물종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특허 사례 추적해 	106
페루의 생물해적행위 투쟁의 성과 및 문제점 	108
기타 아메리카동향	109

## 오세아니아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 연구 지원금 관련 준거법으로	117
나고야의정서 제시 	
기타 오세아니아동향	118

## 중동

카타르, 앙골라 나고야의정서 비준...현재까지 비준국 수 96개국  	121
나고야의정서 100번째 당사국, 쿠웨이트 	121
기타 중동동향	122

## 국제기구

CBD 사무국,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ABS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서 공개	125
CBD 공지	126
CBD 사무국, 지역별 바이오브리치 이니셔티브 회의 개최	127
[CBD] 올해 11월 '제3차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개최	128
[CBD]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21), 제10차 협약 및 제8조 차항 작업반회의 개최	129
[CBD 공지문]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관련 연구사업 참가의향서(EOI) 제출	130
[CBD]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 CBD 사무총장 취임	131
[CBD 공지문]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및 ABSCH에 정보 게재 요청	132
[CBD]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서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 논의돼	133
[CBD]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주간 멕시코서 개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합성생물학,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등 논의	134
[CBD]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공고문	136
2016년 상반기 나고야의정서 관련 보고서 소개	137
[CBD]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제1차 이행보조기구 회의 결과: 나고야의정서의 진전사항	139
[CBD]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제2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결과: 나고야의정서 관련 내용 중심	140
국제상공회의소(ICC), '기업 관점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보고서' 제출	141
국제기구, ABS 이행체계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142
국제사회,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입장 표명	143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 '생물공정무역' 강조	144
더바디샵 200만 파운드 '바이오브리치 캠페인' 기금 설립	145
나고야의정서, 계절성 독감 백신 공급에 지연 가져올 수 있어	146
내추라 코스메틱, 40여개 원료에 대한 UEBT 인증 획득	14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적권 관련 ABS 계약서 DB 구축	148
WHO-PIP '바이러스 유전자염기서열정보' 포함 여부 고심	149
세계보건기구(WHO),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논의	150
세계보건기구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 프레임워크(WHO PIP Framework), 나고야의정서 제4조 상 국제문서 포함 모색	151
식량농업식품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이사회,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논의 예정	152
유엔무역개발회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담당자를 위한 ABS 핸드북 공개	15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페루 생물다양성 보전 및 ABS 역량개발을 위해 워크숍 개최	153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국제적 규제 논의중	154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 '생물공정무역과 ABS의 영향' 논의	155
제2차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개발에 대한 준비위원회,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논의	156
기타 국제기구동향	157

## ABS 꿀팁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에게 자원보유국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 국가가 이를 이용할 경우 원산지 국가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많은 나라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에 필요한 이행체계 및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 5월에 국회에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공식 발효됨과 동시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하에서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산하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바이오 산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소식 및 동향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1년부터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최신 소식을 국내 바이오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에 제공하기 위해 ABS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6-2017」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공해 온 ABS 뉴스레터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본 책자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계 종사자,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제 동향 및 사례 등을 파악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ASIA



## 말레이시아, 생물해적행위 규제 법안 대의원 통과



이달 초, 말레이시아 대의원에서 생물해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생물해적행위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뜻한다.

규제법(안)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허가증이 필요하게 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토착지역공동체 또는 정부 등 자원 제공자와의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학, 연구소 등 순수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이익공유 계약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말레이시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국민 뿐 아니라 해외 연구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경우 반드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12위의 생물자원 부족으로 손꼽히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을 보유하고 있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자생식물을 이용한 에이즈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thesundaily.my/news/2017/08/07/finally-law-curb-biopiracy>

##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법령 채택



5월 12일, 베트남 정부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법령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을 채택했다.

법령은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공자와 유전자원 이용 등에 대한 정의, 유전자원 접근 시 의무 사항, 이익공유 유형 및 이익공유 비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유전자원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책임기관\*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베트남은 국가책임기관으로 '농업농촌개발부'와 '천연자원환경부'를 지정하고 있다. 농업작물, 가축, 어류, 종묘 유전자원일 경우 농업농촌개발부에, 그 외의 유전자원일 경우에는 천연자원환경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 |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절차 |



국가책임기관의 등록 승인을 받으면,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와 등록승인서 사본을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인민위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와 등록승인서 사본 일체는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기본 절차가 끝난다.

- \* 베트남은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전 반드시 베트남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2항), 라이선스 획득 후부터 이익공유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법령에는 금전적 이익공유의 비율을 연간 총수입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해당 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베트남 유전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국·내외 개인 및 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영문) :  
[https://gallery.mailchimp.com/fa03cd8ada851a2047d59e055/files/ef8be141-4e84-4200-8fb4-6e2bd640b4f7/Vietnam\\_ABS\\_decree\\_English\\_Jun\\_03\\_clean\\_002\\_.pdf](https://gallery.mailchimp.com/fa03cd8ada851a2047d59e055/files/ef8be141-4e84-4200-8fb4-6e2bd640b4f7/Vietnam_ABS_decree_English_Jun_03_clean_002_.pdf)

##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 주, 366개 마을 생물다양성기록부 작성



인도 북부에 위치한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주가 UN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주 내 주요 6개 도시 366개 마을 자치기구에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인도는 「생물다양성법(2002)」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 주 정부 단위에는 주생물다양성위원회(SBB)\*, 지역 단위에는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 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 \* SBB: State Biodiversity Boards
- \* BMC: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이번 히마찰 프라데시 주에 설치된 366개 관리위원회는 「생물다양성규칙(2004)」, 제22조에 따라, 지역 내 서식하는 모든 생물다양성 및 관련 전통지식을 문서화할 계획이다. 제22조는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 '생물다양성 기록부(The People's Bio-diversity Register)'를 마련하고, 기록부에 들어갈 내용으로 지역 생물자원의 정보, 약효와 기타 용도, 관련 전통 지식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는 기록부의 양식, 세부항목 및 전자 DB의 형식을 명시해야 하며(제22조 제8항), 접근이 허가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 부과된 비용, 창출된 이익과 공유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록부에 기록할 의무가 부여된다(제22조 제11항).

참고 자료 <http://www.dailypioneer.com/state-editions/chandigarh/hp-sets-up-biodiversity-committees-in-366-gram-panchayats.html>

「생물다양성규칙2004」 보기:  
[http://nbaindia.org/uploaded/pdf/Compendium\\_Book.pdf](http://nbaindia.org/uploaded/pdf/Compendium_Book.pdf)  
 이미지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16494777>



리타 테오티아 인도 상무장관이 3월 15일 자국에서 개최한 TRIPS\*-CBD 연계 컨퍼런스에서 님나무, 강황 등 인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외국의 무분별한 특허 출원을 막는 효율적인 국제 법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TRIP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테오티아 장관은 “국내법만으로는 외국 특허청에 있는 인도 전통지식의 남용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이러한 생물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 법률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인도 민간 전통지식인 आयुष(Ayush)\* 시장 규모는 약 12억 달러(1조 3천억원대)이며 약초 제품의 세계 거래량은 1,200억 달러(136조 8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규모는 2050년에 7조 달러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규모가 큰 무역 시장을 가진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Ayush: 인도의 전통 대체 의학인 आयुर्वेद(ayurveda), 요가(yoga), 자연요법(naturopathy), 유나니(unani), 시다(siddha), 전통요법(homoeopathy)의 머릿글자를 딴 단어로 산스크리트어 'life'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함

인도를 포함한 여러 개도국들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의 원산지 출처를 공개하고 사전 접근 승인 및 이익 공유 증거 제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WTO-TRIPS 협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abs-initiative.us5.list-manage1.com/track/click?u=fa03cd8ada851a2047d59e055&id=83a2658077&e=2551263b5e>

이미지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entre\\_for\\_WTO\\_Studies.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entre_for_WTO_Studies.jpg)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국무 장관은 2017년 3월 30일,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하려는 내·외국인을 위한 인도의 ABS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인도의 국가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당국에서 온라인

포털([www.nbaindia.org](http://www.nbaindia.org))을 통해 내·외국인의 ABS 신청서를 접수한다.

해당 시스템은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과 국가정보화센터가 공동 개발하였으며, 인도의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내·외국인의 원활한 ABS 신청을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개발되었다.

신청서는 총 4종류가 있으며 이 중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인도 ABS 신청서 종류 |

서식 I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신청서
서식 II	외국인, 외국회사, 재외 동포 인도인에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 결과물 이전을 위한 신청서
서식 III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서
서식 IV	접근하는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3자 이전 신청서

인도 정부는 ABS 온라인 포털 이용자를 위한 ‘이용자 매뉴얼’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요령부터 제출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은 신청서 수정 및 검토 기능, 증빙 문서 업로드, 디지털 서명 등록, 온라인 수수료 납부 등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까지 접수된 ABS 신청 건수는 약 1,600건이며 그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신청서는 총 408건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해당 온라인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ABS 신청서 접수 및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시켜 발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orissadiary.com/environment-minister-launches-online-filing-access-benefit-sharing-applications/>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 온라인 포털:

<http://www.nbaindia.org/>

이용자 매뉴얼:

<http://absefiling.nic.in/NBA/login/showDc?filename=manual&dataName=manual&id=50>

이미지 출처:

<https://www.nbaindia.org>

## 인도, ABSCH에 24건의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 일괄 등록



인도는 지난 4월 6일, 24건의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IRCC, 이하 인증서)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http://absch.cbd.int>)'에 등록했다. 이번 인도의 인증서 등록으로 현재 인도 25건, 과테말라 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건 등 총 27건의 인증서가 ABSCH에 등록되게 되었다.

\* 국제인정의무인증서(IRCC: Internationally Recognis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함

이번에 등록된 24건의 인증서는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에서 발급한 것으로 연구/상업목적 유전자원 접근 관련 9건, 연구결과 이전 관련 1건, 지식재산권의 신청 관련 14건이다. 인증서에서는 사전통고승인 여부 및 신청 목적에 따라 인도의 2002년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2004년 생물다양성 규정(The 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 및 2014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인증서가 신청자 및 목적(상업적/비상업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도의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은 2002년 생물다양성법(이하 '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1)외국인 등의 인도 생물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시(법 제3조), 2)인도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외국인 등에게 이전 시(법 제4조), 3)인도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에 기초한 발명에 대한 인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신청 시(법 제6조), 4)접근 승인된 생물유전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이전 시(법 제20조) 사전에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는 2004년 생물다양성규정을 통해 상기 4가지 사전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였으며, 최근 201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와 이익공유 비율을 공시한 바 있다.

## 인도 마하라시트라 주 6개 기업, ABS 로열티 지불에 합의



인도 제약산업정보포털 Pharmabiz의 2016년 9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인도 서남부 마하라시트라 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the Maharashtra State Biodiversity Board-MSBB)가 지난 7개월 간 마하라시트라 내 제조업자들에게 300여 개의 ABS 로열티 지불 통지를 발송한 결과, 6개의 업체가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사건들이 현재 봄베이 고등법원 및 1급 치안법원에 계류 중이며 인도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BD) Act, 2002)에 따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마하라시트라 주의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BMC)들 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해당법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MSBB)의 ABS 지불금을 모금(collect)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

한편 최근 '국가환경법원'(National Green Tribunal-NGT)은 캐스터 오일(castor plant)을 비롯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약 및 화장품 기업들에게 ABS 로열티 지불을 명령한 바 있다. '국가환경법원'(NGT)은 명령 거부 시 거부자들의 이름을 신문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기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인도는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 시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SBB)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500,000루피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익공유 비율의 경우 무역업자는 구매가의 1~3%, 제조업자는 3~5%를 이익 공유해야 하며 이에 대체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 0.1%, 0.2%, 0.5%의 이익을 공유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도 내 제조업자들은 이번 ABS 통지가 외국기업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 내 전반적인 소비를 위해 거래되는 원자재들의(commodities) 대부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제조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마하시트라 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MSBB) 관계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전반적인 원자재 및 생물자원의 비상업적 활용은 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pharmabiz.com/ArticleDetails.aspx?aid=97502&sid=1>

## 인도네시아, 외국인들의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진행 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연구자들이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자국 유전자원을 밀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생물해적행위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대처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에 명시된 사전통고승인이나 공평한 이익 공유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개발하는 외국인들의 생물해적행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연구기술고등교육부는 지난 2월 외국인들의 이러한 생물해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고, 파푸아 섬이나 말루쿠 섬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연구를 권장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의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허가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내국인 연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서 신종 동·식물을 발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조사관은 "일부 여행객들이 생태여행 성격으로 산림 보호지역의 생물자원을 밀수하다 현장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 연구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비이며 CITES 부속서 II에 명시된 희귀종 '골리앗 버드윙'(Goliath birdwing)을 파푸아 섬에서 채집하여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프랑스인의 밀반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랑스인의 이번 표본 채집 행위 자체를 생물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조사관은 "2012년에도 영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산림보호지역에서 허가 없이 표본을 채집하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에 대해 프랑스 대사관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http://asiapacificreport.nz/2017/03/23/indonesia-steps-up-fight-against-foreign-research-biopiracy/>

## 일본 도쿄농업대학,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움' 협약 체결



도쿄농업대학이 스리랑카 고유 식물종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알비온, 일본사가대학, 스리랑카 와안바 대학과 4자간 스리랑카 유용 식물

산업화 컨소시움 협약을 체결했다.

아유르베다 등 고유종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스리랑카는 2014년부터 (주)알비온과 스리랑카 전통식물연구소를 설립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도쿄농업대학은 "연구소 개설 초기부터 우리 대학은 연구에서 얻은 이익이나 기술 등을 스리랑카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올해 8월 20일 일본 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공국 스리랑카와의 이익공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4자간 산학연 컨소시움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컨소시움 논의를 위해 도쿄농업대학 종합연구소 야마모토 유우지 소장과 (주)알비온, 사가대학, 와안바 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11월 스리랑카 각 기관 담당자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참고  
자료

<https://www.u-presscenter.jp/2017/12/post-38548.html>

이미지 출처:

By Syohei Arai (<http://www.nodai.ac.jp/>)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 일본 종자회사 사카타(Sakata), 신품종 개발 이익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 예정

일본 대형 종자회사 사카타가 내년 4월부터 봉선화 신품종 '산파첸스 핑크키스(*Impatiens hawkeri*)'를 일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산파첸스는 총 16종류의 라인업으로 구성된 봉선화 개량종으로 지난 10년 간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2억주 이상 판매고를 올린 인기 품종이다.

이번 신규 라인업에 추가된 산파첸스 핑크키스는 인도네시아 자생 식물을 육종하여 만든 것으로, 사카타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전자원 이용 관련 합의를 맺었다.

사카타는 일찌감치 2000년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대응해왔다.

8월 28일 사카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산파첸스 핑크키스 관련 글에 따르면 "사카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인도네시아 자생식물 소재로 육종 개발한 이익의 일부를 해당 정부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나고야의정서 효력이 발생했다. 사카타는 그동안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행 실적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어, 앞으로도 해외 자원국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품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라 밝혔다.

참고  
자료

<http://www.sakataseed.co.jp/corporate/news/20170828.html>

## 일본 종자회사 사카타(Sakata) 사,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



2016년 3월, 일본계 글로벌 종자기업 '사카타 사'(Sakata Seed Corp.)는 봉선화 이종교배종인 '산파첸스(SunPatens)'의 추가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사카타 사와 '인도네시아 관상 작물연구소(IOCRI: Indonesian Ornamental Crops Research Institute)'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유전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절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카타 사는 2000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산파첸스 관련 인도네시아 원산 종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실시해왔다. 그 당시 사카타 사는 '인도농업연구개발청(IAARD: Indonesian Agency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의 산파첸스 관련 종에 대한 접근권을 얻게 되었다. 사카타 사가 접근을 통해 산파첸스 시리즈의 꽃들을 개발하면 그 로열티 수익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불된다. 이러한 금전적 이익공유 외에도 사카타 사는 '인도네시아 관상작물연구소(IOCRI: Indonesian Ornamental Crops Research Institute)'에 향후 5년간 육종 기술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이익공유의 답례로 사카타 사는 IOCRI가 사카타 사의 기술지원으로 획득한 신규 우성(superior) 품종을 우선적으로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preferential rights)를 얻게 된다.

사카타 사의 CEO인 데이비드 암스트롱(David Armstrong)은, "일본이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였고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인 사카타 사는 이러한 자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을 준수하는 올바른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에 식물 분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원 부국과 종자회사 간 이익공유를 체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암스트롱은 "오래전부터 육종가들이 자원 부국의 식물종들을 채취해 이를 가방에 넣고 귀국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며 "장기간 그래왔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나, 생물자원 원산국에게 이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무감은 낮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없는 상황에서 많은 발명이 탄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생물다양성협약 의무준수가 농예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하나의 기회'라고 전망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의무준수는 우리 업계가 당연히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사실상 많은 이들이 소유주가 있고, 한정된 유전자원으로부터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원칙 아래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여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https://www.greenhousegrower.com/varieties/sakata-signs-agreement-with-indonesian-government-to-cooperate-under-the-convention-of-biological-diversity/>

이미지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Impatiens\\_walleriana](https://en.wikipedia.org/wiki/Impatiens_walleriana)

## 일본 와타나베 교수, 일본인 최초로 ABS 의무준수인증서(IRCC) 획득

일본 츠쿠바대학의 카즈오 와타나베 교수(Dr. Kazuo Watanabe)가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멕시코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를 획득했다.

대상 유전자원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원산 박과식물인 차요테(Chayote)(학명 : *Sechium edule*)로, 중남미권에서는 이 작물을 식재료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원 제공자는 '멕시코 차요테 학제 연구소'로, 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5가지 종류의 차요테를 멕시코 국립 유전자원센터에서 시험관 내 조직 배양한 후 츠쿠바 대학에 전달할 예정이다.

츠쿠바 대학은 차요테를 이용하여 장기 보존법 개발, 재배 형질 평가, 대량 증식, 신품종 개발 등의 기초 학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와타나베 교수팀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멕시코 농업 사회 및 아시아권에 환원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츠쿠바 대학의 한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의 ABS 법률 및 이행 사례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며 이번 일본의 IRCC 획득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s://absch.cbd.int/search/nationalRecords?schema=absPermit>  
<http://www.jst.go.jp/pr/announce/20170309-2/>

## 일본 환경성, 3개 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서 일본 ABS 지침(안) 설명회 개최

일본 환경성은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지침(안)」(이하 'ABS 지침(안)')의 공청회(2.10, 도쿄)에 앞서 3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작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결과 등 국제 동향 및 일본의 'ABS 지침(안)'에 대해 소개한다.

\* 'ABS 지침(안)': 일본 환경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이 함께 작업하여 마련한 일본의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조치로 현재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음(1.20~2.18)

### | 환경성의 ABS 지침(안) 설명회 일정 |

도시명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일시	2017.2.6	2017.2.9	2017.2.13
프로그램	1.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최근 국제동향(COP-MOP 2 결과 등) 2. ABS 지침(안) 소개 3. 질의응답 및 토론		

한편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2월 22일 '해외 식물유전자원의 이용 촉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타가다(Takada) 농림수산업성 환경정책실 보좌가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야마구치 대학의 시교(Shigyo) 교수가 '농업분야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초 강연을 맡는다.

일본의 ABS 관련 세미나에 대한 세부 내용은 [http://nig-chizai.sakura.ne.jp/abs\\_tft/](http://nig-chizai.sakura.ne.jp/abs_tft/)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일본, 2월 10일 '유전자원 ABS지침(안)' 공청회 개최

일본 환경성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유전자원 ABS 지침(안)」)을 1월 20일 공개했다. 유전자원 ABS 지침(안)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본의 국내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본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환경성은 1월 20일~2월 18일까지 이번 지침(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유전자원 ABS 지침(안)은 환경성 홈페이지 (<http://www.env.go.jp/info/iken.html>) 또는 전자정부통합창구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침(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10일 동경역 니혼바시 컨퍼런스 센터에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는 일본 ABS 학술대책팀의 스즈키(Suzuki) 박사가 진행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일본 기후대학의 코바야시(Kobayashi) 교수, 동경해양대학의 시타라(Shitara) 교수가 각각 소속 대학의 ABS 대응 방안과 체계에 대해 발표하며 주제발표 뒤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 프로그램 일정 |

프로그램	발표자
개회사	ABS 학술대책팀 Mitsuaki Suzuki
나고야의정서 국내조치 검토 상황	문부과학성 라이프사이언스
나고야의정서대응의 국제동향과 ABS 학술대책팀의 활동	ABS 학술대책팀 Mitsuaki Suzuki
기후대학의 ABS 대처방안과 대응체계	기후대학 Kunihiko Kobayashi
동경해양대학의 ABS 대처방안과 대응체계	동경해양대학 Aiko Shitara
휴식	
패널 토론	패널: Kunihiko Kobayashi(기후대학), Aiko Shitara(동경해양대학) Ayako Ishikawa(나고야대학), Mikihito Kanou (미에대학), Natsuko Watanabe(카나자와 대학)
폐회	ABS 학술대책팀 Mitsuaki Suzuki

참고 자료 <http://nigchizai.moon.bindcloud.jp/iken2016/pg189390.html>

##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찌 산쿄'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나고야의정서 포함



일본 제약업계 3위 업체인(2014년 기준) 다이이찌 산쿄(Daiichi Sanky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 정책에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명시했다. 다이이찌 산쿄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준수하고,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동향에도 유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1899년 설립된 다이이찌 산쿄는 전세계 60여 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한국 법인(한국 다이이찌 산쿄(주))이 설립되어 있다. 일본 5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다이이찌 산쿄는 글로벌 제약회사로서 연구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다이이찌 산쿄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 목표로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daiichisankyo.co.jp/corporate/csr/compliance/index.html>

이미지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Daiichi\\_Sankyo#/media/File:Daiichi\\_Sankyo\\_Co.\\_logo.png](https://en.wikipedia.org/wiki/Daiichi_Sankyo#/media/File:Daiichi_Sankyo_Co._logo.png)

##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공개, 4월 22일까지 국민 의견 접수



중국 환경보호부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草案))을 3월 23일 공개했다.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으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4월 22일

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국 환경보호부 홈페이지(<http://sts.mep.gov.cn/>)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ts.mep.gov.cn/>

이미지 출처:

<http://sts.mep.gov.cn/>

## 중국 전문가와 함께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동향을 논한다! 7월 13일 제16차 ABS 포럼 개최 소식

### 제16차 한국 ABS 포럼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

#### 주요 내용

-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ABS 국내법
- ABS 사례연구 및 국가적 이행
- 글로벌 ABS 체계 및 중국과 한국

일시 : '16.7.13(화) 9:00~18:00

장소 :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13일 서울가든호텔(마포구)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6차 ABS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에 가입하고자 가입서를 기탁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 및 입법 개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족중앙민족대학의 Dayuan Xue 교수를 비롯하여 중국환경보호부 남경환경과학연구소의 Rong Dai 박사, 중국환경과학원의 Jin Xu 박사 등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국내법', 'ABS 사례연구 및 국가적 이행', '글로벌 ABS 체계'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포럼의 자세한 일정 확인과 사전 등록은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http://www.abs.go.kr>)에서 가능하다.

## 중국 나고야의정서 가입!



2016년 6월 8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여,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중국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중국은 국가연락기관을 환경보호부 자연생태보호국 생물다양성보전과로 지정하였다.

중국은 ABS 정보공유체계(<http://absch.cbd.int>)에 현재까지 국가책임기관, 관련 법률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나, 2010년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기술 가이드 라인', '지역 생물다양성 평가 기준', '생물유전자원

등급 구분 기준'을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2011년에 공포(2012년 시행)한 바 있으며, 2014년 5월 30일에는 '생물 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을, 2014년 10월 30일에는 '대외 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시한 바 있는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최근 잠비아, 핀란드, 중국 등의 나고야의정서 비준과 78개국 비준에 대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진정한 글로벌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3개국의 비준으로 올해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전에 나고야의정서 100개 비준국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보도자료 :

<https://www.cbd.int/doc/press/2016/pr-2016-06-13-Nagoya-ratifications-en.pdf>

## 필리핀 정부, ABS 행정명령 연내 마무리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공유 및 생물해적행위 방지를 담은 행정명령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행정명령 초안 마무리 작업을 위해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을 중심으로 기술작업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을 구성하고, 11월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토안으로는 1)ABS 절차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부처합동기구 설립 2)유용자원 국가인벤토리 구축 3)인벤토리-특허-R&D-상업화 절차도 마련 등을 다루었다.

조세핀 사토(Josephine Ramirez Y. Sato) 하원 의원은 "생물해적행위로부터 필리핀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가정책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행정명령을 요청했다.

사토 의원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필리핀의 ABS 이행을 담은 하원법안 2163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필리핀의 경우 별도의 ABS 법령은 없는 상태이며,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자연자원부를 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businessmirror.com.ph/duterte-to-issue-ao-adding-teeth-to-fight-vs-biopirates/>

이미지출처:

By User:Achim1999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 한국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체 대상 나고야의정서 세미나' 개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8일(금) 14:00 웨라톤 팔라스 강남호텔에서 '생물자원 원료 중개업체 및 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8월 17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을 소개하고, 국내 원료 수입업체의 현황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원료 중개업체의 유전자원 접근 시 이행절차에 대해 다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물 원료 중개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여 바이오업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개요 |

- 주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대상: 생물자원 수출입 관련 원료 중개업체 및 벤처기업중심의 바이오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
- 일시: 2017.12.8. 14:00 ~ 17:00
- 장소: 웨라톤 팔라스 강남호텔 다이너스티 홀

### | 프로그램 |

시간	소요시간	내용	발표자
13:30 ~ 14:00	30분	등록	
14:00 ~ 14:10	10분	인사말씀	오경희 과장
14:10 ~ 14:40	30분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오현경 연구관
14:40 ~ 15:10	30분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의 현황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차장
15:10 ~ 15:30	20분	휴식	
15:30 ~ 16:00	30분	원료 중개업체의 유전자원 접근 시 이행 절차	코스맥스 전용석 변호사
16:00 ~ 17:00	60분	토론 및 질의	
17:00		폐회	

▶ 사전등록: <http://www.abs.go.kr/kabsch/program/forum/view.do?cid=100&idx=81>

## 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확정·공포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유전자원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이 2017년 11월 27일 확정·공포됐다(환경부령 제720호).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33호)

이번에 공포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은 국내 유전자원 등을 접근 및 이용하는 자가 제출하는 ▲접근 신고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 ▲접근 변경신고서 등의 신고양식과 신고 수리 후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접근 신고증명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 준수 신고서 양식도 담고 있다.

더불어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대상인 외국인 등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접근 신고 시 수수료 금액도 정하였다.

이번 시행규칙은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즉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전문을 살펴볼 수 있다.

##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제20차 한국ABS포럼 개최

‘유전자원 현지외보전기관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0차 한국ABS포럼이 오는 11월 24일(금) 서울 강남 SC컨벤션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포럼에서는 미생물 분양센터, 소재은행 등 현지외보전기관의 유전자원의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 주제: 유전자원 현지외보전기관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방안
-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4:00~17:00
- 장소: SC컨벤션 아나이스홀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 사전등록: <http://www.abs.go.kr/kabsch/program/forum/view.do?cid=100&idx=61>, 11월 22일(수)까지

###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발표자
13:30 ~ 14:00(30')	참석자 등록	
14:00 ~ 14:05(05')	개회 인사	최원목 교수 한국ABS포럼 회장
14:05 ~ 14:15(10')	축사	김동구 부장 국립생물자원관
14:15 ~ 14:45(30')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법적 동향 - 유전자원 신탁등록 운영 등 -	허인 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45 ~ 15:15(30')	연구소재은행 해외 분양 및 기탁 절차	안경숙 부장 연구소재중앙센터
15:15 ~ 15:30(15')	휴식	
15:30 ~ 16:00(30')	국내 유전자원법 주요 사항과 연구계 대응	오현경 연구관 국립생물자원관
16:00 ~ 16:10(10')	유전자원법 이행방안	이상준 연구사 국립생물자원관
16:10 ~ 17:00(50')	패널 종합 토론 - 발표자 및 전문가(3명)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최근진 과장 ·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권순우 연구관 · 질병관리본부 황규잠 연구관	최원목 교수(좌장)
17:00	폐회 및 정리	

## 한국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에는 기업,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되어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은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심포지엄 성공리에 마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7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부터 생물다양성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미얀마의 우 킨 마웅 이 차관의 축사와 환경부 안병욱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련 부처,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은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등과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 등 총 7개 국가 정부 관계자가 모여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법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인도: 이익공유 연간 0.1~0.5%, ABS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첫 번째 발표는 국가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총국의 K.P 라후람 박사가 진행하였다. 라후람 박사는 인도의 ABS 법률체계가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을 소개하면서, 국가단위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 주정부 단위에서는 주생물다양성위원회(SBB)\*, 지역 단위에서는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외국인의 유전자원 접근은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이 담당한다.

- \* 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 \* SBB: State Biodiversity Authority
- \* BMC: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의 경우 연간 출고가(Annual ex-factory sale of product)의 0.1~0.5%를 이익공유 비율로 규정하였다.

연간 출고가	이익공유비율
1000만 루피	0.1%
1000~3000만 루피	0.2%
3000만 루피 이상	0.5%

생물다양성총국은 원활한 ABS 신청을 위해 온라인 포털(www.nbainia.org)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1,722건의 신청서 중 462건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일본: 일본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고승인(PIC) 요건 없음 'Free Access'

일본 환경성의 마호 마츠모토 팀장이 발표했다. 일본은 국내 이행 조치로 AB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1)의무준수조치, 2)접근 조치, 3)ABS 체계 증진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일본은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공동 연구 활동을 위해 자국 내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접근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멸종위기보호종 등 기타 목적과 관련된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전법」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안)」 마련

중국환경보호부의 레이 차이 박사는 국무원이 2020년까지 ABS 제도 개발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여 현재 다부처 작업그룹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미얀마: 국내 ABS 이행 제도 마련을 위한 ABS 프로젝트 진행 중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의 산 오 과장은 국내 ABS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개발계획(UNDP)과 AB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독일: 독일연방자연보전청(BfN) '일원화시스템(One Stop Shop)'으로 ABS 총괄

독일 연방환경부의 스테판 퀴르케 박사는 EU 규칙과 독일의 ABS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일은 2015년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EU ABS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가책임기관인 독일연방자연보전청(BfN)\*은 ABS 정보, 조인, 신고, 점검, 제재 등의 업무를 총괄 하고 있다. 그 외 특허청, 로버트-코흐 연구소, 농업식량연방청이 ABS 관련하여 독일연방자연보전청과 협력하고 있다.

\* BfN: Bundesamt für Naturschutz

### 남아프리카공화국: 접근시 물질이전계약·이익공유계약 체결, 생물탐사신탁기금 운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및 ABS 법제에 대해 환경부 생물탐사·생물다양성경제과 나탈리 펠트만 과장이 발표했다. 펠트만 과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익공유를 위한 입법 조치로는 2004년 제정한 「국가환경관리·생물다양성 법(NEMBA\*)」 생물다양성 법의 세부 이행을 위해 2015년 제정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개정 규칙(BABS\*)」을 소개하였다.

- \* NEMB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 \* BABS: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Amendments Regulation 2015

발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물탐사활동을 두 가지 유형(발굴단계/상업화단계)으로 구분하여 생물탐사를 위한 사전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허가 요건으로는 상업화를 위한 외국인의 생물자원 접근의 경우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은 생물탐사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자금이 납입되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급도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 올해 1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마지막으로 한국은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 배정환 사무관이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은 올해 1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법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각국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 및 가동하는 현시점에서, 주요 당사국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협력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 7월 6일 국제심포지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 개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하고 한국 ABS 포럼이 주관하는 국제심포지엄이 7월 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그 이행체제 수립과 관련한 수많은 도전과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와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국의 이행 경험과 당면과제를 공유하는 것은 제도이행 당국과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7개국의 국가별 ABS 이행 동향을 살펴보고, 각국의 효과적인 ABS 이행체제 수립 및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 국제심포지엄 개요 |

- 주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
- 일시: 2017년 7월 6일(목), 10:00~17:00
- 장소: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 A홀(3층)

▶ 사전등록: 2017년 7월 2일(일)까지 한글이름, 영문이름 (이름+성 순서대로), 한글소속, 영문소속 및 이메일주소 작성후 사무국 ni.br.abs@gmail.com로 이메일 송부

### | 프로그램 |

일정 Time	발표주제 Title of Presentation	발표자
09:30 - 10:00	등록 Registration	
10:00 - 10:30	개회 및 개회 소개 Opening Remark and Introduction	조영재 회장 Dr. Keung-Ae Oh Execut, NI.BR, MRC, Korea
10:30 - 10:45	환영사 및 축사 Welcoming Address	황영주 차장 Vice Minister,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이연아 전연사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Myanmar
10:15 - 10:30	사진촬영 Photo Time	
<b>Session 1</b>		
10:30 - 11:00	일본의 생물다양성-나고야 이행 Implementation of ABS in Japan	조영재 차장 Dr. Keung-Ae Oh Director, NI.BR, MRC, Korea
11:00 - 11:30	일본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Progress Update for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Japan	일본 JAPAN Ms. Mitsu Matsumoto Section Chief of Biodiversity Division, MRE
11:30 - 12:00	중국의 생물다양성지침서 접근 및 이익분배 현황 및 과학 Data Status and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Biological Resource	송재 K.K. CHINA Dr. Lai QH Director of Bio-resources Commission, Department of Nature & Ecology Commission of MOP
12:00 - 12:30	점심시간 Lunch	
<b>Session 2</b>		
13:30 - 14:00	미얀마의 ABS 법제 및 이행의 현황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BS System in Myanmar	이연아 MYANMAR Dr. Sai So Director for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4:00 - 14:30	중국의 ABS 이행 Implementation of ABS in China	황영주 CHINA Dr. Stefan Lillies Head of ABS for Legislation, NI.BR, Ministry
14:30 - 15:00	북아프리카 생물 다양성 및 ABS 이행 현황 An overview of the South African legal framework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남아공 SOUTH AFRICA Ms. Hilda Feltman Director for Bioprospecting and Biodiversity Economy
15:30 - 16:00	브라질의 ABS 이행 Implementation of ABS in Brazil	브라질 REPUBLIC OF BRAZIL Ms. Juliana Ivo Brazil Director of ABS Affairs, MRC
<b>특별토론 및 발표자담 Discussion and Q&amp;A</b>		
16:00 - 17:00	회장 인사말 : Prof. Whang Chul, Chairman of Korea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발표자 인사말 : Prof. Sen Young Oh, Executive Director of Korea ABS Forum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Sang-ha Park, Chief Researcher/NI.BR, 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e Prof. Jongwon Park, Policy/NI.BR, National University	

# 한국 제16차 생물자원 전통지식 전문가 포럼 개최



2017년 6월 20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6차 생물자원 전통지식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자생생물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기구의 최근 논의 동향을 다루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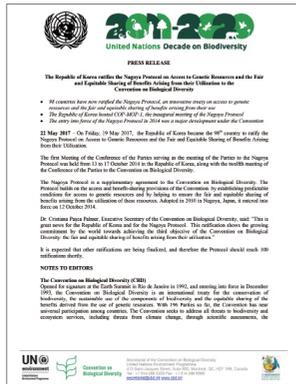
### | 제16차 포럼 개요 |

- 주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동향
- 일시: 2017. 6. 20(화), 13:15~17:00
- 장소: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2층 세미나실

### | 프로그램 안내 |

시간	내용	진행 및 발표
< 주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동향 >		
13:15 ~ 13:45(30')	등록	
13:45 ~ 13:50(5')	개회 인사 및 내빈 소개	김병직 연구관 (국립생물자원관)
13:50 ~ 14:00(10')	인사말	국립생물자원관장
14:00 ~ 14:30(30')	CBD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강화를 위한 입법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윤익준 교수 (연세대학교)
14:30 ~ 15:00(30')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전통지식의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허 인 책임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00 ~ 15:30(30')	중국의 전통지식 관련 입법 체계 및 동향	류예리 박사 (경상대학교)
15:30 ~ 15:50(20')	휴식	
	<질의 및 토론>	오경희 과장 (국립생물자원관)
15:50 ~ 16:50(60')	발표자 3인 토론자 이상훈 책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진무현 연구위원(LG생활건강) 정명철 박사(국립농업과학원)	
16:50 ~ 17:00(10')	맺음말	국립생물자원관장
17:00	폐회	

## 한국, 일본 나고야의정서 비준... 8월 중순부터 당사국된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5월 19일, 5월 22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로써 한국은 98번째, 일본은 99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0)'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으며 개최지의 이름을 딴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어 2014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2)'가 한국 평창에서 개최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표되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1)'도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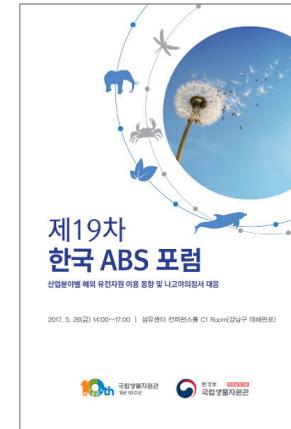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 총장은 이번 비준에 대해 '대단히 기쁜 소식'이라고 밝히며 "양국의 비준은 CBD의 세 번째 목표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 째 발효된다. 따라서 한국은 8월 17일, 일본은 8월 20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올해 들어 6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가운데(한국, 일본, 카타르,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포르투갈), 비준국 수는 곧 100개국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05-22-abs-en.pdf>

## 한국 제19차 ABS 포럼 개최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빌딩에서 「산업분야별 해외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주제로 한 '제19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EU·일본·중국·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및 국내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사항 등을 소개하고, 의약, 화장품, 농업 등 분야별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 | 제19차 ABS 포럼 개요 |

- 일시: 2017.5.26(금) 14:00~17:00
- 장소: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C1 Room(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출구)
- 발표자: 고려대 정명현 교수, 휴온스 천연물신약팀 연성흠 이사, (주)뜨르르 윤길영 대표, LG화학-팜한농 신택수 책임연구원
- 패널토론: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숭실대 오선영 교수,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순웅 변리사, 국립생물자원관 오경희 과장

### | 프로그램 안내 |

시간	내용	진행 및 발표
13:30 ~ 14:00(30')	참석자 접수	
14:00 ~ 14:05(5')	개회 인사 및 내빈 소개	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
14:05 ~ 14:15(10')	인사말	국립생물자원관 김동구 부장
14:15 ~ 14:45(30')	이용자 측면에서 본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법제도 현황	고려대학교 정명현 교수
14:45 ~ 15:15(30')	의약 분야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방안	휴온스 천연물 신약팀 연성흠 이사
15:15 ~ 15:25(10')	휴식	
15:25 ~ 15:55(30')	화장품 분야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방안	(주)뜨르르 윤길영 대표
15:55 ~ 16:25(30')	농업 분야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방안	LG화학-팜한농 신택수 책임연구원
16:25 ~ 16:55(30')	패널 종합토론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
16:55 ~ 17:00(5')	맺음말	국립생물자원관 김동구 부장
17:00	폐회	

## 한국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개최

4월 2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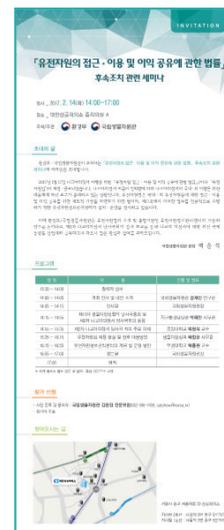
이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 및 이용 점검을 담당하는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법률과 유전자원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ABS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http://www.abs.go.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 컨퍼런스 개요 |

- 일시: 2017.4.28(금) 10:00 ~ 18:00
-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101~102호)
- 주최: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후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환경법학회
- 주요내용: (세션1)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과 이슈, (세션 2) 자생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 (세션 3) 해외 유전자원의 입법적 활용과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세션 4)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공유

## 한국 2월 14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관련 세미나 개최



올해 1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33호, 제정 2017.1.17)」(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전자원법 제정 현황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14일 개최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정부부처 관계자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며,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대응방안 및 새롭게 설치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작년 12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결정문과 '합성생물학' 및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 등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환경부는 유전자원법의 시행과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국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접근·이용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국내 바이오 산업계의 성장 동반자가 되도록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세미나 개요 |

- 주제: 유전자원법 제정 현황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 방안
- 일시 및 장소: 2017. 2. 14.(화), 14:00 ~ 17: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주최 및 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참석자: 산업계, 정부부처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이해당사자

### | 세부일정 |

일정	내용	진행 및 발표
13:30 ~ 14:00	참석자 접수	
14:00 ~ 14:05	개회 인사 및 내빈 소개	국립생물자원관 강재신 연구관
14:05 ~ 14:15	인사말	국립생물자원관장
14:15 ~ 14:55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동향	지구환경담당관실 박혜민 사무관
14:55 ~ 15:35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주요 의제	중앙대학교 박원석 교수
15:35 ~ 16:15	유전자원법 제정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생물다양성과배정관 사무관
16:15 ~ 16:55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개념 및 운영 방안	부경대학교 박종원 교수
16:55 ~ 17:00	맺음말	국립생물자원관장
17:00	폐회	

▶ 주제 발표는 발표 30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  
(문의) 국립생물자원관(032-590-7439, [catchow@korea.kr](mailto:catchow@korea.kr))

## 한국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7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구분	소관부처	주요 기능
국가연락기관	외교부, 환경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국가책임기관	미래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처리
국가점검기관	책임기관+산업부	국의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준수 신고 처리 및 절차준수여부 조사·권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환경부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취합·조사·제공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키파일락)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기업·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또한,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을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www.ab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콘퍼런스 개최



11월 24일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일호 밀양시장을 비롯해 바이오산업계, 학계, 지자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은 현재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을 제정과 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있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체제 적응을 위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그동안 국립생물자원관이 밝혀낸 생물자원의 가치를 학계 및 산업계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강연은 한국 ABS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으며 '생물다양성 시대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바이오산업계의 나고

야의정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비해 국립생물자원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을 바이오산업계에 널리 알리는 '생물자원 기술정보교류회'도 개최되었다.

기술정보교류회에서는 '쇠물푸레잎을 이용한 항산화용 물질 활용' 등 5가지 유망 기술과 '느타리버섯으로부터 분리한 균주를 이용한 합성연료 분해기술' 등 20건의 특허 기술을 공유하고, 관심 기업의 기술이전 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이 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비해 우리 생물자원의 쓰임과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 제18차 한국 ABS 포럼 개최



제18차 한국 ABS 포럼이 24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최되었다. 콘퍼런스와 함께 개최된 이번 ABS 포럼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바이오협회, 제약기업,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발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정보허브 역할에 대한 구상'(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 '국내외 현지의 컬렉션의 사전통고승인 대응 현황'(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은정 부연구위원), '국내외 유전자원 이익공유 사례'(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 '나고야의정서 국내인식과 해외 동향'(국립생물자원관 이상준 연구사), '생물다양성협약 신규 이슈: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동향'(충북대학교 김영창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ABS 포럼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정보 교류 및 산·학·연 등의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2년 6월부터 매년 3~4회 걸쳐 열리고 있다.

## 한국 제16차 한국ABS 포럼 개최...“최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중국과의 협력 논의”



7월 13일, 국립생물자원관이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이하 ABS)' 포럼을 개최했다.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리우 하오우(Liu, Haiou) 중국 환경보호부 대외협력센터 박사, 수에 다이엔(Xue, Dayuan) 중앙민족대학 교수 등 10여 명의 중국 전문가와 우리나라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주최, 한국 ABS 포럼 주관, 한국바이오협회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중국은 지난 6월 8일에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으며,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ABS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해외 유전자원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중국의 생물자원 주요 이용국인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은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ABS 이행 상황과 국내입법, 중국 소수 민족들의 전통지식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중 ABS 교류협력'을 주제로 오찬세미나가 개최되어 한·중 ABS 관련 전문가 인력 양성 취지를 담은 양국 대학원생간 교류·협력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찬세미나는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연구논문을 관련분야 대학원생들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포럼은 한·중 ABS 관련 정보 공유와 대응에 관련한 의견을 양국의 전문가들이 열린 마음으로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최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향후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제15차 한국 ABS 포럼 개최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5차 한국 ABS 포럼을 3월 22일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있을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명아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와 유전자원 이익공유의 법적 과제'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부연구위원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일본의 국내 조치'라는 제목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향후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abs.go.kr](http://www.abs.go.kr))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 기타 아시아동향

### 도쿄농업대학,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움' 설립

1. 도쿄농업대학은 2014년부터 스리랑카 고유 식물종 관련 전통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주식회사 알비온과 '스리랑카 전통 식물 연구소'를 설립, 약초의 기초 연구와 재배 연구를 수행 중
2. 일본 내 나고야의정서가 2017년 8월 20일 발효됨으로써 제공국 스리랑카와의 이익공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산학연 4자간(도쿄농업대학-일본사가대학-알비온-스리랑카 와안바대학)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움'을 설립함
3. 올해 11월, 동경 농업 대학 종합 연구소 야마모토 유우지 소장이 알비온, 사가 대학, 와안바 대학 관계자와 함께 스리랑카 각 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함

### 필리핀 정부, ABS 행정명령 연내 마무리 목표

1.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은 "필리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초안을 올해 안 마무리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힘
2. 현재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을 중심으로 기술작업그룹(TWG)이 구성되어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 중이며 검토안에는 1)ABS 절차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부처합동기구의 설립, 2)유용자원 국가인벤토리 구축 3)인벤토리-특허-R&D-상업화 흐름도 마련 등이 있음
3. 한편 조세핀 사토 하원 의원은 "생물해적행위로부터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약용 식물자원 공급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며 하원 법안 2163을 발의한 바 있음.

### 아태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개최

1. CBD 사무국은 10월 16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인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임
2. 이번 회의는 CBD 사무국과 대한민국 환경부가 함께 개최하며, 장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세미나 실임
3. BBI 홍보, 사업 선정 절차 소개 및 협력 모범사례 공유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

### 히마찰 프라데쉬 주, 366개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설치

1. 히마찰 프라데쉬 주 생물다양성위원회(SBB)는 UN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참바, 쿨루, 시라, 시르마우르, 킨나우르, 라홀-스피티 지역 내 366개 마을 자치기구에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를 설치함
  - \* SBB(STATE BIODIVERSITY BOARD): 주 정부 단위의 생물다양성 위원회
  - \* BMC(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지역단위의 생물다양성 위원회
2. 366개 BMC는 생물다양성규칙(2004) 제22조에 따라 지역 내 서식하는 모든 생물다양성 및 관련 전통지식을 문서화할 계획임
3. 히마찰 프라데쉬 주는 현재 약 3400종, 1038속, 180과에 해당하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핫스팟임

### 일본 사카타社, 인도네시아와 신품종 관련 이익공유 계약 체결

1. 일본 종자회사 사카타 사는 내년 4월부터 봉선화 신품종 '산파첸스 핑키키스'를 일본 시장에 출시할 예정임
2. 산파첸스는 총 16종류의 라인업으로 구성된 봉선화 개량종으로, 지난 10년동안 전세계 시장에서 2억 주 이상 판매된 인기 품종
3. '산파첸스 핑키키스'는 인도네시아 자생 식물을 육종하여 만들어졌으며, 사카타사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함. 사카타사는 계약에 따라 산파첸스 핑키키스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인도네시아에 환원할 계획'이라 밝힘.

### 말레이시아, 생물해적행위 규제법(안) 대의원 통과

1. 8월 초 생물해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말레이시아 대의원을 통과함
2.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시 반드시 PIC 요구됨
3. 상업적 목적인 경우 이익공유 계약이 의무화되나, 대학 등 순수 학술 목적인 경우 이익공유 계약이 요구되지 않음

### 중국, "세계 식물종의 10분의1, 중국서 서식한다"

1.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제19차 국제식물학총회(the 19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에서 중국 발표자는 "세계 식물종의 10분의 1이 중국에서 서식한다"고 밝힘
  - \* 국제식물학총회(IBC): 식물과학분야 중 가장 크고 권위 있는 국제학술회의
2. 발표자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34,000종의 고등 식물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3위의 식물자원 부국임
3. 원예기술 개발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국은 국토 14.8%에 해당하는 2,740곳을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함

### 태국 특허법 개정(안), ABS 의무 조항 신설

1. 6월 5일 태국의 특허법 개정(안)이 공개되었음. 본 개정안은 특허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임
2. 특허법 개정(안)에는 ABS 조항들이 신설되었으며 특허 '유전자원', '유전물질', '파생물', '전통지식'등 정의 조항이 포함됨
3. 또한 특허 출원자에게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를 밝히고, 해당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전 사전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4.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승인 통보 담당 기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대한 법령 채택

1. 5월 12일 베트남 정부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대한 법령(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을 채택함
2. 법령은 UNCTAD, UEBT, UNDP, ASEAN Biodiversity Centre 등 다양한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됨
3. 법령은 총 28개 조문과 9개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서식에는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연구 등 비상업 목적으로 유전자원 해외이전 요청서 등이 포함됨)

## 일본 츠쿠바 대학, 멕시코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ABS 세미나 개최

1. 일본 최초로 ABS 의무준수인증서(IRCC)를 획득한 일본 츠쿠바 대학에서 ‘멕시코 유전자원 획득 및 대학기관의 ABS 이행’을 주제로 제1회 나고야의정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2. 이 세미나는 츠쿠바 대학 기능식물학신연구센터(T-PIRC)와 일본 ABS 학술대책팀이 공동주최
3. 발표는 ABS 학술대책팀 스즈키 박사, 츠쿠바 대학 타나베 카즈오 박사, 멕시코 농업과학대학원 호르헤 카데나 이니게스 교수임

## 고아주 생물다양성위원회(GSBB), 생물자원 정보 구축 시작

1. 인도 중서부에 위치한 고아 주(Goa)의 ‘주생물다양성위원회’(GSBB)는 주 내 농업, 산림,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한 정보 구축 사업에 착수할 예정
2. 이 사업은 인도 환경산림부와 유엔환경계획 지구환경기금(UNEP-GEF)의 ABS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됨
3. 환경산림부와 국가생물다양성당국(NBA)는 2012년부터 UNEP-GEF ABS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내 효과적인 ABS 체계 운영을 위한 ‘생물자원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중임
4. GSBB는 이 사업을 통해 인도 생물다양성법2002와 생물다양성규칙2004의 ABS 조항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 일본 나고야의정서 비준...8월 중순부터 당사국된다

1. 한국과 일본이 각각 5월 19일, 5월 22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
2. 이로써 한국은 98번째, 일본은 99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됨
3.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 째 발효되어 한국은 8월 17일, 일본은 8월 20일 의정서 당사국이 될 예정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접근 및 이익공유(ABS) 온라인 신청 포털 구축

1.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국무 장관은 2017년 3월 30일,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2. 이는 인도 정부의 ‘Digital India’ 정책과 연계한 것으로써 인도의 국가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당국’(NBA)의 온라인 포털(www.nbaindia.org)을 통해 내외국인의 ABS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 가능함
3.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우선 NBA 포털(www.nbaindia.org)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포털 메인 화면에 있는 “Apply Online”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중국서 마카 대량 재배, 마카 관련 외국의 특허 출원으로 고통받는 페루 농민들

1. 페루 자생식물인 마카(Maca)가 성 기능 향상에 좋은 슈퍼푸드라 알려지면서 페루의 마카 재배 농민들을 커다란 수익을 얻어옴
2. 그러나 중국인들이 마카를 페루에서 사지 않고 자국에서 직접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마카 시장의 판도가 바뀜
3. 값싼 중국산 마카가 시장에 유입되자 페루산 마카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됨. 마카 재배로 생계를 이어가는 페루 후닌 주 주민들은 정부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함
4. 페루 정부는 ‘국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를 발족하여 페루 유전자원을 이용한 전세계 특허 등록 사항을 조사, 감시하고 있음. 현재까지 폴란드, 한국, 미국, 중국 등의 마카 관련 특허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남

## 인도,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 법제도 도입 주장

1. 인도는 자국에서 개최한 TRIPS-CBD 연계 콘퍼런스에서 “넝( neem)나무, 강황 등 자국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외국의 무분별한 특허 출원을 막는 국제적인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힘
2. 인도 상업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국법 만으로는 외국 특허청에 있는 인도 전통지식의 남용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이러한 생물해적행위를 막는 ‘국제 법률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
3. 그동안 인도 등 개도국 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협정) 개정안에 특허 출원 시 생물자원의 원산지 출처 공개, PIC 및 이익 공유 증거 제시를 규정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해옴

## 인도네시아, 외국인들의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진행중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연구자들이 여행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자국 유전자원을 밀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생물해적행위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대처하는 중임
2. 외국인들의 생물해적행위가 늘어감에 따라 인도네시아 연구기술고등교육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함
3. 또한 생물해적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제를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올해 2월, 프랑스 국적의 한 외국인 연구자가 파푸아 섬에서 골리앗 버드wing으로 알려진 지구상 두번째로 큰 나비(학명 : Ornithoptera goliath)를 무단 밀수하다가 적발되었음.
4. 주인도네시아프랑스대사관 측은 ‘이에 대한 코멘트는 할 수 없다’며 인도네시아 당국이 프랑스국적 연구자의 생물해적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일본 와타나베 교수, 일본인 최초로 ABS 의무준수인증서(IRCC) 획득

1. 일본 츠쿠바대학 와타나베 교수가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멕시코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인증서’(IRCC)를 획득함 (ABSCH-IRCC-MX-208823-1)
2. 대상 유전자원은 열대 아메리카 원산 박곡식물인 차요테(Chayote) (학명: *Sechium edule*)이며 용도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표기되어 있음
3. 유전자원 제공자는 멕시코 차요테 학제 연구소(Grupo Interdisciplinario de Investigacion en Sechium edule en Mexico A.C.(GiSeM))이며 기관에 보존된 5가지 종류의 차요테를 멕시코 국립유전자원센터에서 시험관 내 조직 배양 후 츠쿠바 대학에 전달할 예정임

## 인도 Ayush 기업 155곳, '마하라슈트라 주 생물다양성이사회'에 등록

1. 인도의 민간 전통 지식인 Ayush를 다루는 기업 155곳이 자사의 상업화에 사용된 생물 자원의 세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하라슈트라 주 생물다양성위원회(Maharashtra State Biodiversity Board: MSBB)에 등록함  
\* Ayush는 인도의 전통 대체 의학인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yoga), 자연요법(naturopathy), 유나니(unani), 시다(siddha), 전통요법(homoeopathy)의 머릿글자를 딴 단어로 산스크리트어 'life'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함
2. MSBB는 기업의 ABS 의무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생물자원 조달기업에 600건의 공지를 보낸 바 있음
3.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BD) Act, 2002)에 따르면 생물자원 관련 제조사들은 상업화에 사용된 생물자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Form I에 맞춰 작성한 뒤 MSBB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4. 동법에 따라 MSBB는 ABS 의무준수 차원에서 Ayush 제조사들에게 90만 루피(1,550만원 상당)의 로열티를 받아 관리해 옴

## 일본 환경성, 유전자원 ABS 관련 지침 공청 시작

1. 일본 환경성은 2017년 1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대응조치로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과 공동으로 '유전 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배분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2017년 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18일 까지 의견을 수렴예정

## 일본 바이오협회, CBD-COP13 보고회 개최

1. 일본바이오협회(JBA)는 오는 2017년 1월 27일 일본 바이오 산업계에서 본 CBD-COP13에서의 주요논의의 보고회 개최 예정
2. <프로그램>
  - 전체개요
  - 개별의제 1: 나고야의정서 제10조의 맥락에서 본 '합성생물학,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논의
  - 개별의제 2: 전통지식 8조 j항, ABSCH, 의정서의 평가 및 검토
  - 개별의제 3: COP13 사이드 이벤트에서의 주제 등

## 일본 NITE, 미얀마 해외생물공동탐사사업 공고

1. 일본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는 해외생물자원 이용체제 확보 및 접근 경로 확보를 위하여 미얀마와 구축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생물탐사 사업에 참여할 기업, 대학, 연구소를 모집 중
2. 본 사업 참여자는 공동연구시설인 미얀마 파테인 대학에서 채집시료의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으며, NITE와 파테인 대학이 맺은 물질이전계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일본으로 이전 및 사용할 수 있음
3. 금전적 이익공유의 경우 CBD의 ABS 원칙에 따라 미생물의 제공, 미생물을 이용한 특허 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마일스톤 지불방식의 물질이전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경우 현지에서의 미생물 분리동정 및 기능 분석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이 있을 수 있음

## 베트남-UNDP, 다오족 약용식물유전자원 및 전통의학 프로젝트 출범

1. 베트남 환경부와 UNDP는 북부의 Lao Cai주의 소수민족인 다오족을 대상으로 하는 약용식물 유전자원고 전통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출범하였음
2. 본 프로그램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프로젝트인 '베트남에서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2015~2018)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일본학술회의, 학술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고야의정서비준에 따른 조치 공표

1. 일본학술회의는 학술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른 조치를 공표하였으며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 (1) 나고야의정서의 다양한 과제와 그 해결을 위한 비준의 필요성
      - ① 나고야의정서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글로벌 과제
      - ② 나고야의정서 비준
      - ③ 국내 조치의 내용
    - (2) 생물 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와 그 지원
      - ① 생물 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 ② 제공업자 정보 제공 및 상담 창구
      - ③ 대학·연구 기관의 실무 운용 체제
    - (3) 일본의 자원 제공국으로서 국내 조치
  3. 제언
    - (1) 나고야의정서의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이니셔티브 발휘 및 그의 실현을 위한 조속한 비준
      - ① 나고야의정서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글로벌 도전의 대응
      - ② 나고야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 ③ 분명하고 간결 국내 조치의 수립
    - (2) 생물 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철저한 주지 및 지원 체제
      - ① 생물 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철저한 주지
      - ② 제공업자 정보 제공 및 상담 창구의 설치
      - ③ 대학·연구 기관의 실무 운용 체제의 정비 구축
    - (3) 일본의 자원 제공국으로서 국내 조치

<용어 설명>

<참고 문헌>

<참고 자료 1> 유전자 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ABS)에 관한 행동 규범 사례

<참고 자료 2> 상호 합의(MAT) 권장 사항

<참고 자료 3> 농학 분야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검토 분과회 심의 경과

## UNCTAD, 베트남에서의 ABS와 생물무역 보고서 발간

- |                         |                            |
|-------------------------|----------------------------|
| I. 서론                   | C. 향후 과제                   |
| II. 개관                  | D. 베트남에서의 생물무역의 인식         |
| A. 베트남의 생물자원            | E. 생물무역 수치                 |
| B. 유전자원                 | F. 베트남의 생물무역의 과제 및 추가 조치   |
| C.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       | V. ABS 규정과 생물무역에서의 접근법     |
| III. 베트남에서의 나고야의정서와 ABS | A. 생물무역과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       |
| A. 이행 전략                | B. 시너지와 이행 및 그 교훈          |
| B. 베트남의 국가 ABS 규제체계     | C. ABS와 생물무역의 차별화          |
| IV. 베트남에서의 생물무역과 그 발전   | D. 생물무역 원칙의 이행과 베트남의 ABS 법 |
| A. 생물무역의 개념과 원칙         | VI. 정책과 규제 옵션 및 제언         |
| B. 베트남의 생물무역            |                            |

## 일본 환경성 CBD COP13 보도자료

1. 일본과 CBD COP13의 관계 및 회의 개요(일정 및 주제) 소개
2. CBD COP13 일본 전시 부스: 생물다양성 주류화 박람회에 일본의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소개 전시 부스 설치 (환경부와 농림수산부 공동)
3. 일본 환경성과 관련된 8개의 사이드 이벤트
  - UNBD(유엔생물다양성10년위원회)의 날: UNBD-J(유엔생물다양성10년 일본위원회), CBD 사무국(환경성, IUCN-J 공동개최)
  - 해양의 밤: 생물다양성사무국, Blue Solutions(GIZ/GRIDArendal/IUCN/UNE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위한 전략행동: 사토야마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 유엔대학 고등학술연구소, 환경성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날(IUCN 일본연락사무소 외)
  - 녹색경제촉진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일본의 시도와 기여: JICA, 환경성, CBD 사무국
  -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에 있어서의 젠더에 대한 고려: CBD 사무국
  - 아이치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선진광역지자체 연합: 아이치현 등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의 선순환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의 형태: JICA, 일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경제산업성, 환경성(CBD 사무국, GEF 공동개최)

##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치 산교,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나고야의정서 포함

1.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치 산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관련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추진 부분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대응하면서 나고야의정서 채택 동향에 유의하고 있음을 밝힘

## ANRRC, 생물다양성 ABS 논의 정보

1. 2016년 일본 교토에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 8차 연구자원센터 아시아 네트워크(Asian network of Research Resource Centers, ANRRC) 국제회의의 ABS 세션에서 아시아 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사항을 발표되었음(한국, 중국, 태국,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2. 그 중 중국, 태국,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파키스탄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중국: 2016년 9월 6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현재 규정의 형태 및 실시 방법을 논의 중이며 기존의 컬처 컬렉션의 규정을 참고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태국: 태국은 Offic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이 담당기관으로 비준은 하지 않았으나 이행절차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2015년 비준하였으며 현재 유엔사무국에서 비준절차 진행 중
  - 베트남: 2014년 비준하였으며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ABS 지침이 작성된 바 있음
  - 파키스탄: 2014년 국가 정부보고서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제안이 접수된 상황이며 2016년에 승인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 ABS 학술정보팀, 연구자를 위한 ABS 실무자 강습회 개최

1. 일본 ABS 학술정책팀에서는 2015년 11월 24일 목요일 도쿄에서 해외에서 유전자원을 취득하고 연구하는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등을 상대로 강습회를 개최
  - [일시] 2016년 11월 24일 (목) 14:00-16:30
  - [장소] AP동경 아에스대로 12층C
  - [프로그램]
    - 14:00-14:40 나고야의정서를 둘러싼 국내 조치와 국제협상의 상황
    - 14:40-14:50 ABS 학술대책팀 활동보고
    - 15:00-16:00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배분 (사카타노타네 소속 카모가와 토모히로) (사카타노타네 サカタのタチ는 일본 제1의 종묘기업임)

##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6개기업, ABS 로열티 지불에 합의

1.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생물다양성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 제조업자들에게 300여개의 ABS 로열티 지불통지를 발송했으며 6개의 업체가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함
2. 관련 사건들이 봄베이 고등법원 및 봄베이 고등법원 나그푸르 지원, 1급지안법원에 계류중이며 최근 국가환경 법원은 캐스터 오일 등을 이용한 제약 화장품 기업들에게 ABS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명령하면서 거부자들의 이름을 신문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기소할 것을 지시함
3. 인도는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구매가의 무역업자는 1-3%, 제조업자는 3-5%를 이익공유해야 하며 이에 대체하여 매출규모에 따라 0.1%, 0.2%, 0.5%의 이익을 공유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일본 JBA, 생물다양성종합대책사업 보고서

1. 일본 바이오산업협회(JBA)가 2016년 3월 발간한 2015년 보고서는 유전자원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정비/나고야의정서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분석/ 관련 자료집으로 구성
  2. 목차 (2-1-4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른 EU 및 회원국의 입법동향 부분은 영문보고서)
    1. 유전자원에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1-1 ABS 모범사례 모델 구축을 위한 조사 분석
        - 1-1-1 유전자원 제공국 조사 및 정보 수집
          - (1) 브라질 ABS법 2015
          - (2)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관련 상세지도요강
          - (3) ABS 클리어링 하우스 운영 현황
        - 1-2 유전자원 접근 관련 정보전파
          - 1-2-1 해외 유전자원 접근 관련 웹사이트
          - 1-2-2 해외 유전자원 접근 관련 상담창구 운영
          - 1-2-3 ABS 관련 설명회 개최
      2. 국제동향 분석
        - 2-1 나고야의정서를 둘러싼 국제 동향 개관
          - 2-1-1 EU의 상황
          - 2-1-2 국제상공회의소 ABS 워크샵 참가보고
          - 2-1-3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EU 실시 규칙
          - 2-1-4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른 EU 및 회원국의 입법동향(영문)
          - 2-1-5 프랑스 ABS 법안
- <자료집>
- (1) EU No 511/2014 실시규칙(가안-일역)
  - (2) EU 규칙 지침(가안-일역)
  - (3) 브라질 유전자원관련법률(2015.5.20-일역)
  - (4)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관련 상세지도요강(일역)
  - (5) 프랑스 생물다양성법(일역)
  - (6) 나고야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결의내용(일역)
  - (7) WIPO IGC 동향 정리(2015.2 이후)
  - (8) 전통지식을 둘러싼 국제동향 정리
  - (9)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책정관련 정리

## 일본 JBA, CBD/ABS 관련 세미나 자료 업로드

1. 일본 바이오산업협회(JBA)는 2016년 7월 22일 개최했던 CBD/ABS 관련 세미나 발표자료 홈페이지에 업로드
  - 나고야의정서 제10조 “세계다자간 이익공유체계”논의동향(2016.2 제2회 전문가회의 내용)
  -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상황(벨기에 업체를 통해 2015.9~2016.2월까지 수행한 유럽동향파악 용역결과 포함)
  - SBSTTA20(2016.4) 합성생물학 논의 정리
  - 유엔해양법협약 해양생물다양성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준비위원회(2016.3) 내용정리

## 인도네시아 개정 특허법, 유전자원 이용 특허제품 출처표기 명시

1. 2016년 7월 28일 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2016년 8월 28일부터 발효 될 예정
2. 본 개정안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자원이나 전통지식에서 유래한 발명인 경우 그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였음

## 인도 타미날두주, 제도적 불비로 이익공유 소외

1. 인도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National Biodiversity Board, NBA)는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의 이행을 위해 각 주에 주생물다양성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를 설립하고 생물종 목록화(People's Biodiversity Register, PBR)를 지시하였으나 타미날두주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제도의 마련이 늦어지고 있음
2. NBA 관계자에 따르면 남인도에서 제도의 이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로 카르나타카주(Karnataka, BMC 4636 설치, 468종 목록화)이며 그 뒤를 케랄라주(Kerala, BMC 928개 설치, 758종 목록화), 안드라프라데쉬주(Andhra Pradesh, BMC 928개 설치, 28종 목록화)가 차지하고 있음
3. 타미날두 주의 경우 현재 16개의 BMC가 설치되었으며 종목록화는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익공유 없는 불법적 자원 수탈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 남서지방에서의 참여육종 이익공유사례

\* 참여육종: 지역농민, 현지 육종가, 소비자들과 함께 우수계통을 선발하는 육종

1.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종자기구들과 지역농민들과의 합작으로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강한 옥수수의 종자 개량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참여 육종과정에 있어 지역농민들과 이익공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왔음
2. 종자개량에 참여한 농부들이 일정 지역에서 개량종자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약이 맺어지긴 했으나 법적, 제도적 불비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는 못함(중국법상 이론적으로 농부가 공동 육종자로 기재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자가 국가 소유로 사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고, 중국이 농부권을 인정하는 ITPGRFA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음)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농과학아카데미에서는 대만의 ABS 모델계약을 참고하여(종자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여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구속력있는 이익공유계약 체결할 것을 요함) 개발된 종자의 상업적 판매이익의 0.3%~0.5%를 농부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내부적으로 종자 회사를 지원하는 부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됨

## IDLO, 인도네시아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워크샵 개최

1. 국제개발법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sation, IDLO)와 CBD 사무국은 일본 생물다양성기금의지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법률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샵 개최
2. 워크샵에서는 최신 ABS 관련 법적 행정적 정책 수단의 소개와 각 국가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제 구축에 관한 조언을 제공

## EU가 후원하는 베트남 식물 약학분야 윤리적 생물무역 프로젝트

1. 2016년 6월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EU가 후원하는 ‘베트남 식물 약학분야의 윤리적 생물무역 이니셔티브의 확대’ 프로젝트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됨.
2. EU에서 60만 유로의 재정을 지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는 HELVETAS VIETNAM, 국가의약재료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dicinal Materials, NIMM), 농촌경제개발센터(Center for Rural Economy Development, CRED)가 공동으로 이행하며 베트남 제약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12개의 식물제약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3. 베트남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나 최근 남획 및 보전의 부족으로 중국, 인도의 원료를 제약산업의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4. 본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이 천연물 제공국으로써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윤리적 생물무역으로써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 특허청, 각국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에 관한 자료 공개

1. 일본 특허청은 2016년 2월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각국의 유전자원의 이용과 특허제도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홈페이지에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및 특허제도에 관한 내용을 업로드

- EU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덴마크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프랑스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헝가리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독일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스페인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스위스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노르웨이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남아공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이집트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페루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멕시코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인도네시아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베트남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인도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 인도, ABSCH에 IRCC 24건 업로드

1. 인도는 4월 6일자로 국제의무준수인증서 24건을 업로드 하였음
2. 현재 국제의무준수인증서는 인도 25건, 과테말라 1건, 남아공 1건 총 27건이 업로드 됨.

### ● 인도 의무준수 인증서 업로드 현황

No	제목	허가일	신청 형태	신청인 주소
1	당뇨치료를 위한 마늘 가공의 미국 및 인도 특허를 위한 신청	2015. 11.3	Form-III	미공개
2	식물로부터의 비타민 E 추출을 위한 미국 및 인도 특허를 위한 신청	2015.1.31	Form-III	미공개
3	사상균류 <i>Trichoderma harzianum</i> 의 상업화를 위한 접근	2015.10.10-2016.10.9	Form-I	인도
4	렙도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식물추출물성물의 인도 특허를 위한 신청	2015.5.19	Form-III	미공개
5	건 황색조개 가공 발명의 인도 및 세계 각국에서의 특허를 위한 신청	2015.8.19	Form-III	미공개
6	건새우 가공의 인도 및 세계 각국 특허를 위한 신청	2015.8.28	Form-III	미공개
7	<i>Chlorophytum borivilianum</i> 의 배양을 통한 스티그마스테롤 및 헤코게닌의 강화에 대한 인도에서의 특허를 위한 신청	2016.1.13	Form-III	미공개
8	상업성 판단을 위한 Goa 해수에서의 녹조 및 시아노박테리아의 추출을 위한 접근 및 채집 신청	2015.8.3-2020.8.2	Form-I	미공개
9	병충해 저항성 작물 연구를 위한 <i>Bacillus thuringiensis</i> 연구결과 Bioseed Research India 이전신청	2015.12.22	Form- II	제공자미공개
10	병충해 저항성 작물 개발을 위한 <i>Bacillus thuringiensis</i> 의 2Ai 유전자 접근 및 채취 신청	2015.8.16-2018.8.15	Form-I	미공개
11	나라 시럽 제조를 위한 야자수 수액의 가공과 관련된 인도 내 특허를 위한 신청	2016.1.19	Form-III	인도
12	아요완( <i>Trachyspermum ammi</i> ) 열매 추출물의 필라리아 유충 사멸 효과 관련 인도 내 특허를 위한 신청	2015.12.18	Form-III	인도
13	손상립(damaged rice grains)으로 부터의 알코올추출 과정 관련 인도 내 특허를 위한 신청	2015.12.18	Form-III	미공개
14	새로운 극한 미생물 <i>Geobacillus extremocatosoochus</i> 로 부터의 촉매 효소hyperproduction 관련 인도 내 특허를 위한 신청	2015.11.23	Form-III	인도
15	과일이 함유된 제과관련 인도 내 특허를 위한 신청(바나나, <i>Musa acuminata</i> )	2015.7.8	Form-III(인도)	인도
16	남양복령( <i>Lentinus tuberregium</i> , 버섯) 성분으로부터 항암 성분의 추출과 관련한 인도 내 특허를 위한 신청	2016.1.19	Form-III(인도)	인도
17	마하라슈트라주의 개미, 딱정벌레, 노린재, 양서류 개구리목, 양서류 무족목 연구를 위한 접근 허가	2015.7.2-2017.7.1	Form-I	영국
18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에 손상을 주는 병충해종의 규명을 위해 안드라 파라데쉬주, 비하주, 카르나타카주, 텔랑가나주의 감염된 옥수수( <i>Zea mays</i> ) 잎, 줄기, 껍질의 접근에 대한 허가 신청	2015.9.21-2018.9.20	Form-I	미공개
19	<i>Lepidopterasphingidae</i> (나비목, 박각시과) 연구를 위한 접근 허가 신청	2015.11.16-2020-11.15	Form-I	체코인도
20	아유베르다 정제 캡슐 제조 및 과정에 대한 특허를 위한 신청	2015.3.6	Form-III	인도
21	Tamil Nadu과 Rajasthan 에서의 2개의 생물자원의 연구를 위한 접근 허가 신청	2016.1.12-2019.1.11	Form-I	미공개
22	Karnataka와 Kerala 주의 9개의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접근허가 신청	2016.1.12-2019.1.11	Form-I	미공개
23	Karnataka와 Kerala 주의 7개의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접근허가 신청	2016.1.12-2019.1.11	Form-I	미공개
24	미생물의 조합을 통한 저장가능 살충제의 특허를 위한 신청	2015.10.26	Form-III	인도
25	구자라트 시디(Siddi) 공동체의 전통의학지식 접근을 위한 허가	2015.3.27-2015.3.26	Form-I.(영국)	미공개

[출처] <https://absch.cbd.int/search-new?documentSchema=IRCC>

## 몽골 나고야의정서관련 동향

1. 몽골은 나고야의정서를 2013년 5월 21일 비준하였으며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몽골 국내법은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않음
2.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가 2015년 8월 방문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ABS와 관련하여 환경녹화관광부 추진 1건, 농림식품부 추진 1건 등 총 2건의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며, 제공국 차원의 조치만 입법될 예정이며 이용국 입장에서의 조치는 각국의 상황을 보고 판단 예정임

## 일본 종자회사 사카타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익공유계약

1.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사카타 종자회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봉선화 이종교배종인 산파텐스(SunPatens)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3월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CBD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합의함
2. 사카타는 지난 2000년 무렵부터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집된 생식질(germplasm)의 연구를 해왔으며 계약에 따라 사카타는 새로 개발되는 신품종의 상업화에 대한 우선권을 취득하는 대신 로열티 지급 및 기술이전과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 관상식물곡식연구센터의 배양 및 협동연구를 지원하게 됨

## 중국 종자법 규정 개정 주요사항

1. 2015년 11월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 종자법이 2016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되었음
2. 구법의 경우 신품종의 보호는 사안에 따라 농림부 및 산림청에 의해 분리되어 관할 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신 품종보호와 관련된 일반 규정을 도입함
3. 신법은 생식질(germplasm) 자원을 개인 또는 기관이 외국과 합작하여 연구하는 경우 국가이익공유제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4. 그밖에 농부들이 남은 씨앗을 지역 시장에서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게 한 규정의 삭제, 품종검증제도의 범위 축소, 유전자변형종자의 표기 도입 등이 이루어짐

## 인도 케랄라주, ABS 법에 대한 산업계의 저항

1. 케랄라주 산업계는 ABS 법 이행이 경제적부담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정부에 항의하였으며, 정부는 케랄라주생물다양성위원회에 ABS 메커니즘의 상세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음
2. 관련 산업계는 로비를 통해 부담의 이행을 늦추거나, 관련상품을 적용예외를 받을 수 있는 일반거래 상품으로 파는 등의 회피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주생물다양성위원회는 앞서 환경부에 ABS법 이행을 위한 정부 명령을 요청한바 있으며, 관계자에 의하면 강제집행력을 결여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생물다양성위원회로서는 정부의 도움에 기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힘

##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 촉진 워크숍

1. ABS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해설 및 산업계, 학계 정부 연대로 해외유전자원의 이용촉진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ABS(이와테 대학 명예교수 磯崎 博司)
  - 해외유전자원의 이용촉진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대응(농림수산성)

## 일본 나고야의정서 국내 입법 난항[아사히신문]

1. 일본은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조치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구체화 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음
2. 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우 유전자원 제공을 의정서 대응절차 마련 국가에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연합의 경우에도 유사한 지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비준의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며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음

## 아세안 생물다양성 컨퍼런스 태국 방콕에서 개최

1. 이차 생물다양성 타겟의 점검 및 아세안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들의 논의를 위한 아세안 생물다양성 컨퍼런스가 2016년 2월 16일-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2. 60%의 아세안 국가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가운데 7개의 주제별 세션 중 하나로 마련된 '접근 및 이익공유'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Regional Initiative) 및 섹터별 관점들(Sectoral Perspective) 다루게 된다.

## 인도 시킴주, 무허가 식물종자 채집 의심 외국인 신원 경보

1. 인도 시킴주 관광부는 관광 관련자들에게 생물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영국인 T.D. Atkinson, 미국인 Jhon Mood의 방문에 대해 경계할 것을 통보
2. T.D. Atkinson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시킴주의 식물종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Jhon Mood의 경우 유전공학 작업과관련해 인도의 고유종을 채집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무허가 종자 채집행위는 최고 5년 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임
3. 방문기록에 따르면 Atkinson은 2012-2013년 시킴주를 방문하였으며 도움을 현지인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현재 산림청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 방문허가를 관광부가 여행업자에게 선행하여 발급하는 현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서

1.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에서는 2016년 경제산업성에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서'를 발표
2. 본 제언서는 건강·의료, 물질생산, 생물다양성센터 등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리하고 기타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상황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가생물자원센터(NBRC)의 아시아 각국과 MOU 체결을 통해 해외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지원 및 확보와 연구개발 지원 역할이 증대됨을 소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EUROPE



## 네덜란드 CBI(개도국 수입지원센터), 화장품 원료상품의 EU시장 진출 시 고려할 법제도 안내문 배포



네덜란드 개도국 수입지원센터인 'CBI'(Centre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가 EU 시장에 화장품 천연원료를 수출하려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 및 법률에 관한 안내문 「CBI Buyer Requirement; National ingredients for

cosmetics in Europe.」을 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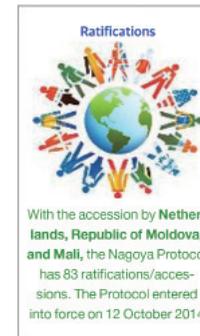
안내문은 원료 수출 기업들이 '화장품 규칙'(Cosmetics Regulation EC 1223/2009),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등의 천연원료 품질 및 안전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준수할 것과 그 외에도 원료 가공 이전 단계를 규율하는 CBD 및 ABS 나고야의정서, CITES를 준수할 것을 제시하였다.

CBI는 개발도상국의 대EU 수출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경제부의 산하기관인 네덜란드 무역진흥청(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소속으로 네덜란드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cbi.eu/sites/default/files/market\\_information/researches/buyer-requirements-europe-natural-ingredients-cosmetics-2016.pdf](https://www.cbi.eu/sites/default/files/market_information/researches/buyer-requirements-europe-natural-ingredients-cosmetics-2016.pdf)

이미지 출처:  
<https://www.cbi.eu>

## 네덜란드, 몰도바, 말리, 나고야의정서 비준



네덜란드(2016.8.19), 몰도바(2016.8.24), 말리(2016.8.31)가 최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3개국의 비준으로 현재까지 비준국의 수는 총 83개국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22개국, 아프리카 34개국, 동유럽 8개국, 중남미 9개국, 서유럽 및 기타국은 9개국을 기록하였다. 올해에만 13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유럽이 8개국을 차지하면서 주요 이용국인 유럽 국가들의 활발한 비준이 관측되고 있다.

현재 추이를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전망한 바와 같이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전까지 100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네덜란드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2016년 4월 발효



2016년 4월 네덜란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이 발효되었다. 이번 네덜란드 나고야 이행법은 나고야의정서와 EU ABS 규칙(EU 511/2014)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법안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연락기관은 '바헤닝언 대학연구소의 유전자원센터(CGN)\*가, 국가책임기관은 '경제부 농업자연국'(DG Agro& Natur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으로 지정되었다.

\* the Centre for Genetic Resources, the Netherlands (CGN) of Wageningen UR, CGN은 정부를 대표하여 농업, 산림에 중요한 생물종 규명 및 유전 다양성 관련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이행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법안 주석에는 배경(제1항),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조항 (제2항, 제3항), 의정서와 기타 관련 협약과의 관계(제4항), EU ABS 규칙의 내용(제5항), 네덜란드의 EU ABS 규칙 이행(제6항), 기타 입법들과의 관계(제7항), 책무(제8항), 네덜란드 이행법에 대한 설명(제9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는 나고야의정서와 EU ABS 규칙, 네덜란드 나고야 이행법을 3단으로 비교해놓은 표가 수록되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전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ehoud en duurzaam gebruik van genetische diversiteit, 2002)정책 문서에서 '네덜란드 내 유전자원 획득에 대해 사전통고승인(PIC)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 따라, 현지내(in situ) 접근의 경우 유전자원은 자연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영역의 대상이 되어 그러한 유전물질에 대한 수집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landowner)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한편 본 법률은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에 대하여 최고 6년형을 구형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EU ABS 규칙, 네덜란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비교 |

나고야의정서	EU ABS 규칙	네덜란드 이행법	네덜란드 방침
제5조(이익공유)	제4조	제2조 제1항	EU ABS 규칙을 통한 이행
제6조(유전자원 접근)	-	-	법안 주석 6.2항 참고
제13조(NFP/CNA)	-	제4조 제1항, 제2항	-
제14조(정보공유)	-	-	이행이 요구되지 않음
제15조 제1항(국내입법)	제4조	제2조 제1항	EU ABS 규칙을 통한 이행
제15조 제2항(국내입법)	제9조 및 제11조	-	-
제15조 제3항(국내입법)	-	-	-
제16조 제1항(전통지식 국내입법)	제4조	제2조 제1항	EU ABS 규칙을 통한 이행
제16조 제2항(전통지식 국내입법)	제9조 및 제11조	제4조 제3항 및 제8조	EU ABS 규칙을 통한 이행
제17조(유전자원 이용 감시)	제7조	제2조 제1항	EU ABS 규칙을 통한 이행

참고 자료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16/04/29/nederland-aan-de-slag-met-het-nagoya-protoco>  
[http://www.wageningenur.nl/upload\\_mm/a/0/a/aa98ced5-fea6-4020-97ba-c51cb8841b69\\_WetiNP.pdf](http://www.wageningenur.nl/upload_mm/a/0/a/aa98ced5-fea6-4020-97ba-c51cb8841b69_WetiNP.pdf)

## 독일, 74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



독일이 지난 4월 21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다. 독일의 비준으로 4월 2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74개국이 되었으며, 이중 70개국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고 있다. 독일은 비준 후 90일이 되는 2016년 7월 20일부터 나고야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독일은 국가연락기관으로 연방환경자연보전핵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의 자연보전경관관리제정

부(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Legislation)을 지정하였다.

지난 2015년 10월 15일, 독일 연방의회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통과하였으며, '특허법 개정과 나고야의정서 및 EU 규정 511/2014 이행법률(Gesetzes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und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Nr. 511/2014 sowie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을 제정하였다. 본 법률에서 독일은 나고야의정서 및 EU 규정 511/2014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으로 연방자연보전청(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을 지정하였으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생물자원의 지리적 원산지 정보가 포함된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청이 그 사실을 연방자연보전청에 알리도록 하였다.

## 독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2015년 10월 15일 '나고야의정서 관련법(안)' (DS 18/5219)이 독일 의회를 통과하여 독일 연방 공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었다. 또한 같은 날 독일은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규칙'(Reg.511/2014)을 이행, 자국의 특허법 및 환경감사법 개정에 대한 이행법(안)(이하 '이행법')(DS 18/5321)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행법은 2015년 12월 2일 연방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내는 환경감사법의 개정사항들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2016년 7월 1일 정식 발효하게 된다.

### | 독일 ABS 관련법 일정 |

- 2015.10.15: '나고야의정서 관련법(안)' (DS 18/5219) 국회 통과
- 2015.10.15: EU ABS 규칙 이행 및 특허법, 환경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법(안) (DS 18/5321) 국회 통과
- 2015.12.02: EU ABS 규칙 이행 및 특허법, 환경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법(안) 공보 게재
- 2016.07.01: EU ABS 규칙 이행 및 특허법, 환경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법(안) 발효

2015년 10월 12일, EU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상의 의무준수 조치에 대한 EU규칙'(EU ABS 규칙)(Reg. 511/2014)이 전면 발효되었다. 곧이어 2015년 11월 9일,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규칙(EU) 511/2014호의 콜렉션 등록부, 이용자 의무준수 감시, 모범관행에 대한 시행규칙'(이하 'EU 시행규칙')(Reg.511/2014)이 발효되었다. EU ABS 규칙 및 EU 시행규칙이 모든 EU 회원국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을 구성하면서, 이 두 법은 EU 전역에 나고야의정서이행을 보장하게 된다.

EU ABS 규칙(511/2014)은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 내 유전물질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의무(due diligence) 준수와 아래의 내용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적절한 ABS 법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접근했는지(나고야의정서 당사국에서 해당 유전자원/전통지식을 획득)
- 적절한 입법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여 이익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는지

따라서 EU ABS 규칙(511/2014)은 연구기금을 받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 및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이용자들에게 문서화와 기록보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ABS 규칙(511/2014)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신고할 의무들도 포함하고 있다.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EU ABS 규칙에 명시된 정보들을 제출해야 한다.

독일 이행법은, '연방자연보전청'(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이하 'BfN')\*이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법 시행을 담당할 독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또한 독일 특허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독일 이행법은 독일 특허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게 특허 출원 시 생물 물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책임기관인 BfN에 이를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전물질의 원산지 표기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허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U ABS 규칙(511/2014)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의무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독일 이행법은 EU ABS 규칙(511/2014) 의무를 의도적 위반 또는 의무 태만 시 행정위반으로 간주하여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행정위반 법규(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제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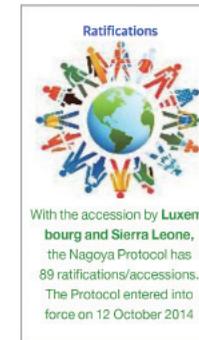
조에 따르면 이러한 벌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하게 된 이익을 상회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에 상한이 없다(fines of unlimited amount)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BfN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이용 활동들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출원에 대해 EU ABS 규칙 의무 위반 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쟁업체 및 제3자는 의무 위반을 다투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은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과 특허권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자료 <http://united-kingdom.taylorwessing.com/synapse/ti-nagoya-germany.html>

## 룩셈부르크와 시에라리온, 나고야의정서 비준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89개국으로 100개국 비준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



10월 25일 룩셈부르크가 비준서를 기탁한 데 이어, 11월 1일에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89개의 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회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 COP-MOP2)'에서는 당사국들의 별다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89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의 지위로서 논의에 참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36개국, 중남미 10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유럽 2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선진국 보다는 주로 개도국의 비준이 많아 NP COP-MOP2에서 개도국들의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비준한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바이오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유럽 바이오의료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목적으로 BioBank를 출범시켰다\*. ABS 국가연락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관광부(Ministèr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s infrastructures)'를 지정·등록하였으나, 국가책임기관과 점검기관은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다. 룩셈부르크 국내 법령으로는 환경법, 「자연 및 자연자원 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ABS 요소가 반영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US Commercial Service 제공 정보(<https://luxembourg.usembassy.gov/doing-business-local.html>)

## 벨기에와 불가리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벨기에와 불가리아가 각각 8월 9일과 8월 11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로써, 2016년 8월 22일 현재 80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76개국에서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준으로 EU 28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EU 회원국인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EU ABS 규칙 511/2014'와 'EU 이행규칙 2015/1866'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관련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벨기에에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에 기초가 된 유전물질의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가리아는 기존 환경보호법에서 생물다양성의 이용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연락기관으로 벨기에에는 보건복지위생환경부 환경국을, 불가리아는 환경수자원부 생물다양성과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는 EU ABS 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당국으로 환경수자원부, 농업식품부, 경제부를 지정하고 있다.

## 벨기에 정부제출 나고야 비준법안, 국회 위원회에서 채택



벨기에 국회의 외교위원회에서 나고야의정서 비준 법안이 채택되었다.

본 문서는 나고야의정서 내용 설명, EU 규칙 채택 경과,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벨기에와 그 연방법에 미치는 영향평가, 비준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어와 불어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http://www.lachambre.be/kvcr/showpage.cfm?section=flwb&language=nl&rightmenu=right&cfm=/site/wwwcfm/flwb/flwbn.cfm?legislat=54&dossierID=1457&inst=K>

## 불가리아 정부,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국회제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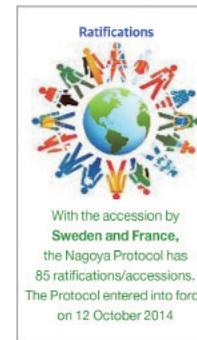
4월 27일, 불가리아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발표했다. 불가리아 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통해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불가리아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정서 비준 이후 유전자원의 상업적 목적에 대한 행정수수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추가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할 것에 대해 명시하였다.

불가리아는 2011년 6월 23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http://www.focus-fen.net/news/2016/04/27/404867/bulgaria-govt-proposes-nagoya-protocol-for-ratification.html>  
<http://www.moew.government.bg/?show=konsultacii&kid=166>

##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나고야의정서 비준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와 유럽의 몰도바, 아프리카의 말리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비준국 수가 85개국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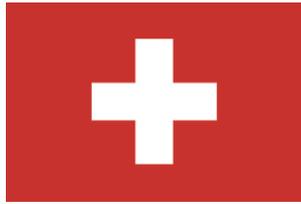
국가명	서명일	비준일	방식	발효일
네덜란드	2011.06.23	2016.08.19	수락	2016.11.17
몰도바 공화국	2012.01.25	2016.08.24	비준	2016.11.21
프랑스	2011.09.20	2016.08.31	비준	2016.11.29
말리	2011.04.19	2016.08.31	비준	2016.11.29
스웨덴	2011.06.23	2016.09.08	비준	2016.12.07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5개국의 비준 소식을 환영하며 “올해 열리는 제13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OP13) 및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까지 100개 비준국을 달성하여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COP13, COP-MOP2 회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당시 56개국이었던 당사국이 현재 85개국이 되면서 2년 사이 29개국이 추가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press/2016/pr-2016-09-09-abs-en.pdf>

## 스위스, 나고야의정서와 ABS: 과학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 워크숍 개최



201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나고야의정서: 과학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의 ABS워크숍이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스위스 과학원(The Swiss Academy of Sciences)과 스위스 연방환경청(the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FOEN)이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유전자원을 다루는 비상업적 연구자들을 위한 자리로 특별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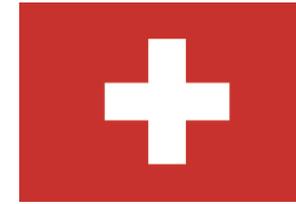
워크숍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1) 참가자의 ABS 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2) 스위스 내 과학연구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탐색, 3)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 지원 수단과 연구자의 의무 및 권리 논의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간	프로그램
09:15 ~ 09:30	개회사
09:30 ~ 09:50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와 스위스의 이행 (나고야의정서 적용영역 외에서의 ABS 팁)
09:50 ~ 10:15	나고야의정서: 모범적인 과학 연구 관행
10:15 ~ 11:00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수단 (모범관행, 모델계약, 연락기관, 웹사이트)
11:00 ~ 11:30	휴식
11:30 ~ 12:00	학술연구 내 ABS: 사례연구 2건
12:00 ~ 12:20	질의응답 및 토론
12:20 ~ 12:30	폐회사

한편 스위스는 2014년 7월 11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같은 해 10월 12일 당사국이 되었다.

**참고 자료** <http://www.naturwissenschaften.ch/service/events/62637-nagoya-protocol-on-access-and-benefit-sharing-rights-and-duties-in-scientific-research>

## 스위스 연방의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례 가결



스위스 연방의회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1일 관련 조례를 가결했다.

\* the amendments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NCHA)

본 조례(Nagoya Ordinance)는 스위스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것으로 총 13조(목적, 정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 요건, 고지의무, 전통지식, 모범관행의 승인, 콜렉션의 승인, 스위스의 유전자원, 스위스 내 유전자원의 접근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FOENN, 타 기관과의 업무, 타 법의 개정, 발효)로 구성되어 있다. 나고야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1장 일반조항	제품	책임기관	결정 조례
제1조 목적	의약품 (사람 또는 동물)	Swiss Agency for products Therapeutic (Swissmedic)	2001.10.17 의약품 조례
제2조 정의	면역의약품 (동물)	Federal Office of Safety Food and Business Veterinarians (OSA)	2001.10.17 의약품 조례
제2장 나고야 당사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 요건	식품, 첨가물, 보조기술	OSA	2005.11.23 식품 및 소비재 조례
제3조 적절주의 의무	식물용 살충제	Federal Office Agriculture (OFAG)	2010.5.12 식물살충제조례
제4조 고지의무	비료	OFAG	2001.1.1 비료 조례
제5조 전통지식	사료	OFAG	2011.10.26 사료 조례
제6조 모범관행의 승인	식물증식재료(산림)	OFEV	2008.9.10 환경배출 조례
제7조 콜렉션의 승인	식물증식재료(산림 외)	OFAG	1998.12.7 증식재료 조례
제3장 스위스의 유전자원	살충제	Federal Office of Health Public (OFSP)	2005.5.18 살충제품 조례
제8조 스위스 내의 유전자원의 접근	화학제품	OFSP	2015.6.5 화학제품 조례
제9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타제품	OFEV	2008.9.10 환경 배출 조례
제4장 책임당국	제5장 최종 규정		
제10조 FOEN	제12조 타법의 개정		
제11조 타 기관의 업무 - 유전자원을 이용한 아래 상품의 제품화에 있어서 제4조, 제5조, 제8조가 지켜졌는지 점검	제13조 발효		

<부칙> 본 조례에 따른 타법의 개정

**참고 자료** <http://www.sib.admin.ch/en/nagoya-protocol/implementation-in-switzerland/index.html>  
<http://www.news.admin.ch/NSBSubscriber/message/attachments/42202.pdf> (조례: 프랑스어)

## 스페인 프로비탈 그룹, 화장품 원료회사 최초로 ABS 의무준수인증서(IRCC) 획득



스페인 화장품 원료회사 프로비탈 그룹(Provitál Group)은 화장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멕시코 환경부로부터 ABS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orga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이하 IRCC)를 획득했다.

이 의무준수인증서는 10월 11일 ABSCH에 게재되었으며, 프로비탈 그룹이 멕시코 식물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R&D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합의조건(MAT)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IRCC의 유효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9년 8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동안 프로비탈 그룹은 케레타로(Querétaro) 주의 여러 부족민들, 국립자치대학교 등과 협업하여 멕시코 식물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IRCC 획득에 대해 프로비탈 측은 “자사의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성 보전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성’은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 중 하나다. 세계 1위 드럭스토어 기업인 영국 부츠(Boots)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 브랜드 소매 업체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및 위생용품들의 특성상 고객들은 자신이 쓰는 제품에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 어느 곳에서 수입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며 생물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https://absch.cbd.int/database/ABSCH-IRCC-MX-238488>

<https://www.cosmeticsdesign-europe.com/Article/2017/10/19/First-cosmetic-ingredients-supplier-to-fulfil-Nagoya-Protocol-on-sustainability>

이미지 출처:

<https://s3.amazonaws.com/absch.documents.abs/abspermit/absch-ircc-mx-238488-1-en.pdf>

## 슬로바키아 나고야의정서 수락,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70개국 돌파



2015년 12월 29일 슬로바키아가 나고야의정서를 수락하면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가 70개국을 달성하게 되었다. 2016년 1월 25일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68개국으로 파키스탄에서는 2016년 2월 21일부터, 슬로바키아에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한다.

7개 비준국 소식에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현재의 비준 속도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올해 말 열릴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전 까지 100개국의 비준국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 평가했다. 디아즈 사무총장의 비준 촉구와 함께 2015년 열린 UN 총회에서는 결의문 70/472를 통해 CBD 당사국들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장려했다.

올해 12월 전까지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COP-MOP2에서 의정서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강력한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돕기 위해 올해 국제개발법기구(ILDO)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에서는 국가 정책 입안자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ABS 입법체계 개발 역량 훈련 과정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는 나고야의정서 핵심 요건, ABS 입법체계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 국가 상황에 따른 다양한 ABS 접근 방식과 모범관행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지난 한 해(2015) 동안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카자흐스탄, 리비아, 모리타니아, 파키스탄, 필리핀, 콩고, 슬로바키아 등 12개국이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press/2016/pr-2016-001-abs-en.pdf>

## 영국 왕립 원예협회 워킹그룹,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성명 발표



Sharing the best in Gardening

'영국왕립원예협회'\* 워킹그룹이 영국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을 8월 3일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워킹그룹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EU 규칙으로 인해 원예분야가 겪게 될 핵심 사안들 및 원예분야의 의무준수를 돕기 위한 업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영국왕립원예협회(RHS, Royal Horticultural Society): 1804년 '런던원예협회'로 설립되어, 1861년 왕립으로 지정을 받게 된 기관이다. 2013년 약 41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4개의 식물원(garden)과 1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매년 첼시꽃박람회(Chelsea Flower Show) 등 다수의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공동 성명서의 세부 내용이다.

2015년 7월 27일, '왕립원예협회'(RHS)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EU 규칙을 논의하고자 원예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정부기관, 식물 학회, 공원, 식물 육종가, 식물 수집가 등을 대표하는 50명의 참가자가 의견을 공유했다.

논의 결과, EU 규칙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으로 여러 원예 분야들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예 분야들은 새로운 식물들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이러한 원인에는 나고야의정서가 신규 식물 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EU 규칙의 의무준수 요건들 및 향후 발생하게 될 식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이는 점차 상업적, 비상업적 원예 분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규칙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향후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원예 분야에 있어 나고야의정서 워킹그룹이 아래의 목적에 따라 설립되었다.

1. 원예분야 및 식물 보전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들의 EU 규칙 인식 제고 증진
2. 모범관행 개발을 통한 의무준수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개발

워킹그룹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관련 지침 및 모범관행 개발을 위한 핵심 사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i) 식물수집: 현 원예 활동에 미칠 영향과 식물 보전 및 기타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
- (ii) 원예에서의 이익공유: 어떻게 평가되고 관리될 것인가?
- (iii) 적절주의 의무: 무엇이 요구되며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가?
- (iv) 이용: 원예에 있어 나고야의정서 '범위 내' 이용에는 어떤 것이 고려되는가?  
상업화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워킹그룹은 원예협회 회원이 아니지만 EU 규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원예 종사자들과 상담을 갖고 그들의 조언을 요청할 것을 목표로 한다. 워킹 그룹은 영국 규제기관과의 소통 창구로서도 활동하게 된다.

워킹그룹 구성원 및 관련 기관들은 EU 규칙의 의무준수를 돕고, 원예분야의 모범관행 및 지침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원예협회 회원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원칙 및 정신을 그들의 정책과 관행에 통합시키고, 의정서 이행을 위해 관련 정부 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 협력한다.

**참고 자료** [http://rhs158.rhs.org.uk/science/pdf/conservation-and-biodiversity/conserving-garden-plants/Nagoya-Protocol-statement-\(3\)-\(2\)](http://rhs158.rhs.org.uk/science/pdf/conservation-and-biodiversity/conserving-garden-plants/Nagoya-Protocol-statement-(3)-(2))

## 포르투갈, 나고야의정서 비준...현재까지 비준국 수 97개국



포르투갈이 4월 11일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현재까지 97개국, 당사국 수는 94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올해 들어 벌써 4개국(상투메프린시페, 카타르, 앙골라, 포르투갈)이 비준하는 등 비준국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포르투갈은 자연보전산림원(Instituto da Conservação da Natureza e das Florestas)을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2017.4.14 현재) |

지역	합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비준국 수	97	18	39	12	5	23
당사국 수	94	17	38	12	5	22

**참고 자료**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이미지 출처:  
<https://www.cbd.int/>

## 프랑스 정부 연구기관(IRD), 생물해적행위 논란 이후 자국령 지방정부들과 이익공유 합의



생물해적행위 비난이 거세지자 프랑스 '개발연구소'(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이하 'IRD')가 말라리아 신약개발로 발생될 수익을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 당국들과 공유할 것임을 약속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이 정부 기관은 기아나 토착지역공동체(ILC)들의 도움으로 전통 의약 식물을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였으며 나 이러한 IPLCs들의 공로를 인정함 없이 신약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지방 당국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이 악화되자 IRD는 2016년 2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말라리아 신약이 시장 진출을 통해 과학,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아나 당국들과 공정하게 공유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IRD는 기아나 지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약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IRD의 해적행위 논란은 프랑스 정부가 ILC의 전통지식 이용 권한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이익들을 공유하는 방법을 다룬 신규 생물다양성법(A new French biodiversity law)을 의회에 상정시키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시말리카락톤 E'(Simalikalactone E (SkE))라는 합성물질로, IRD 연구자들이 Quassia amara 나무에서 추출한 항 말라리아 성분의 추출물이다. Quassia amara는 작은 붉은 꽃잎을 가진 과시아나무 종으로써 중남미지역이 본고장이다. IRD 연구자들은 프랑스의 칼리나(Kali'na)족, 팔리쿠르(Palikur)족, 크레올(Creole)족, 그리고 브라질, 유럽 ILC들과 인터뷰를 통해 Quassia amara 식물종이 전통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IRD는 2009년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SkE에 대한 시험관 테스트 및 동물 연구를 시행한 결과, SkE에 항말라리아 활성 성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RD는 이 추출물을 이용하여 말라리아 신약을 개발하였으며 기아나 ILC들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작년 3월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례는 생물해적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밝힌 토마스 브렐리(Thomas Burelli)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University of Ottawa) 법학 박사는 지난 1월 25일 프랑스 인권 기관 'Foundation Danielle Mitterrand France Libertés'과 함께 IRD의 생물해적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사는 IRD의 이번 행위는 프랑스 식민주의적 관행의 재현이며 비양심적이고 지식재산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으며 "IRD가 SkE에 대한 '상업적 독점(commercial monopoly)'을 획득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기여한 지역공동체들은 부족 대대로 전해진 전통치료제를 마음껏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로돌프 알렉산드레(Rodolphe Alexandre)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의회 의장 또한 IRD의 이번 특허출원에 대해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비난에 대해 장 폴 모아티(Jean-Paul Moatti) IRD 회장은 인권기관 France Libertés 에 보내는 서한에서 '이러한 비난공세는 국민 보건에 대한 연구자들의 장기간의 연구 노력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IRD를 변호하였다. 또한 SkE 효능을 다룬 IRD 2009년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당시 말라리아 치료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던 시기에 지역 공동체들에게 지역 의약 식물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특허출원용 신약 발견 목적의 보고서는 아니었다"고 항변하였다. 회장은 'IRD연구자들이 인터뷰, 조사한 사람들로부터 사전 승인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소급하여 비난하는 것은 바이오의약 개발 과정의 가변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그러나 이후 모아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특히 관련하여 IRD가 기아나 지역공동체들과 좀더 공식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하였다. 이후 프랑스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IRD는 이익 공유 계획을 발표하였다.

브렐리 박사는 이번 이익공유 계획안에 환영하는 한편 계획안에 대해 "성급하고 매우 서두른 감이 있다"고 답하였다. 박사는 "IRD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한 이익공유에 있어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휘둘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브렐리 박사는 말라리아 신약 개발에 특허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번 프랑스 생물다양성 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규법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는 법으로써 전통지식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올해 여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도서연구 환경관측센터'(Center of Island Research and Environmental Observatory) 타마토아 밤브릿지(Tamatoa Bambridge) 박사는 현재까지는 프랑스 내 이익공유 관련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이러한 법률 부재가 과학자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사는 "IRD 연구자들이 ILC들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IRD와 그 외 프랑스 연구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트식민주의 맥락에서 이제는 서로를 존중할 때'라고 그는 덧붙였다.

**참고 자료** <http://www.sciencemag.org/news/2016/02/french-institute-agrees-share-patent-benefits-after-biopiracy-accusations>  
<http://www.gouvernement.fr/action/la-protection-de-la-biodiversite>

**이미지 출처:**  
<http://www.sciencemag.org/news/2016/02/french-institute-agrees-share-patent-benefits-after-biopiracy-accusations>

## 핀란드 나고야의정서 수락 - 나고야의정서 77개국 비준



지난 6월 3일, 핀란드가 나고야의정서에 수락함에 따라, 총 77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가입하였으며, 2016년 6월 3일 현재 73개국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고 있다. 2014년 5월 유럽연합(EU)이 나고야의정서를 승인한 이후,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덴마크, 독일,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체코, 크로아티아, 핀란드, 헝가리 등 9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다.

## 기타 유럽동향

### 영국 3개 기관, 나고야의정서 상 DSI 규제 반대 의견서 제출

1. 영국 내 권위 있는 3개 기관에서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서를 영국 환경부에 제출함
2. 3개 기관은 영국 왕립 생물학회(Royal Society of Biology), 영국 응용미생물학회(Society for Applied Microbiology), 웰컴 트러스트생어센터(Welcome Trust Sanger Institute)임
3.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생물학회인 '영국 응용미생물학회'는 의견서에 "CBD 정신에는 찬성하나 DSI를 오픈 데이터에 게재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힘
4.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체 서열 생산, 분석, 생정보학연구,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는 '웰컴 트러스트생어센터'는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라며 DSI 규제를 강력히 반대

### 동유럽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개최

1. CBD 사무국은 12월 5일부터 이틀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중앙 및 동부 유럽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임(SCBD/IMS/ET/LZ/86820)
2. 이번 회의는 CBD 사무국과 벨라루스 국립유전체포과학원이 함께 개최하며, BBI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금 후원을 받음
3. 중앙 동부 유럽 지역 내 각 정부는 CBD, 나고야의정서 기술과학 협력 및 기술이전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씩 추천하여 본 공지문에 포함된 추천서 양식에 따라 10월 6일까지 CBD 사무국에 제출

### 스페인, ABSCH에 ABS 의무준수인증서(IRCC) 등록

1. 4월 21일 스페인이 ABSCH에 IRCC를 등록함(ABSCH-CNA-ES-209122-1)
2. 유전자원 제공자 및 PIC 발급 기관은 기밀 정보로 표시되어 있음
3. 대상 유전자원은 붉은 개미(Myrmica rubra), 아르헨티나 개미(Linepithema humile), 정원개미(Lasius neglectus)이며 해당 자원들은 비상업적으로 이용될 예정임

### 포르투갈 나고야의정서 비준...현재까지 비준국 수 97개국

1. 포르투갈이 4월 11일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함
2. 이번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현재까지 97개국, 당사국 수는 96개국으로 집계됨
3. 포르투갈은 자연보전산림원(Instituto da Conservação da Natureza e das Florestas)을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ABS-INT, EU 규칙 준수 워크숍 개최

1.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지원을 위한 Abs-int는 2017년 2월 14일 이용자의 ABS 의무준수를 돕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날짜 및 장소: 2017년 2월 14일, 벨기에 루벤
  - 내용: ABS의 법적체계/ABS의 필수요소/R&D 단계에 따른 적절주의의무/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수립

### EU ABS 교육 워크숍

1. EU 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EU ABS 규정과 관련하여 스웨덴 스톡홀름(2016.11.14), 폴란드 바르샤바(2016.11.17), 네델란드 라이덴(2016.11.21), 헝가리 부다페스트(2016.12.21) 교육 워크숍이 개최됨
2. 본 워크숍은 EU ABS 규정에 대한 설명, 현실에 기반한 시나리오에 실제로 ABS 규정을 적용해보는 실전 사례 연구로 구성된 초급과정으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
  - ABS의 법적 체계: 나고야의정서와 CBD 그리고 EU 규칙 511/2014
  - R&D 단계에 따른 적정절차(Due diligence)의 준수
  - 사례연구 발표 및 조별 실습
  - 토론

###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녹색당), 합성생물학과 CBD 자료

1. 녹색당의 씽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는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에서는 '합성생물학 국제시민사회 워킹그룹'이 작업한 '합성생물학과 CBD: COP13&COP-MOP8의 5가지 핵심 결정'을 발간
2. 본 자료에 따르면 1. 합성생물학에 대한 작업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2. 예방적 조치: gene drive, 3. 디지털 DNA 정보에 따른 생물해적행위, 4. 사회경제적 영향, 5.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위험영향평가를 5개의 핵심 이슈로 제시하고 있음
3. 디지털 DNA 정보에 의해 나고야의정서가 부과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가 우회하여 위반될 수 있는 만큼 CBD가 이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익공유체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생물행적 행위를 양산하지 않도록 결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 과학아카데미, 나고야의정서와 과학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 세미나 개최

1. 스위스 과학아카데미는 10월 25일, 스위스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과 과학연구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가 갖는 중요성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 나고야의정서의 스위스에서 이행(ABS 기본사항 및 스위스의 이용국 조치)
  - 과학연구의 모범관행 관점에서 본 나고야의정서(스위스 국가과학기금 지원연구 수행시 ABS 준수 관련)
  - 연구자를 위한 지원 도구(모범관행 가이드라인, 협약틀박스)
  - 과학연구 ABS 사례 3건(브라질 생물자원채집, 약리생물학분야 사례,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혈액 내에 기생하는 편모충) 사례)

## 독일 과학재단, 연구자금 수령에 따른 CBD에 입각한 연구지침

1. 개관
2. CBD ABS 시스템에 따른 체크리스트
3. 배경
  - 1) 생물다양성협약
  - 2) 생물다양성협약 하의 ABS 시스템
  - 3) ABS 시스템의 적용가능성
  - 4) 기초연구의 중요성
  - 5) 범주
4. CBD 하 기초연구의 주요 원칙
5. 유전자원 접근의 주요 절차
  - 1) 연락기관과 책임기관
  - 2) 사전 통보 승인
  - 3) 상호합의계약
  - 4) 이익공유
6. 제안서 및 관련 서류

## 스위스, 연구자를 위한 ABS 모범관행 가이드북 2016

1. 스위스 과학 아카데미의 ABS 모범관행 가이드 북은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로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본 매뉴얼의 목적
  2. 학술연구에 있어 ABS의 필수요소
    - 2.1 ABS란 무엇인가?
    - 2.2 ABS 절차: ABS 관련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 2.3 기본 개념
    - 2.4 연구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
    - 2.5 연수수행에 있어서의 제안
  3. 스위스에서 ABS의 이행
    - 3.1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 3.2 ITPGRFA(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
  4. 사례연구
    - 4.1 식물학: 열대지역에서의 식물 인벤토리 구축
    - 4.2 생태학: 열대림에서의 수목종 다양성 실험
    - 4.3 농업학: Yam(참마) 성장 개선을 위한 지역 균근곰팡이의 분리 및 분석
    - 4.4 농업학: 가뭄시 토종감자의 성장 및 생리활성물질(bioactives)
    - 4.5 약학: 폐결핵의 진화 및 역학
    - 4.6 민속 식물학: 야생식물의 반복적인 수확에 따른 생태적 영향
  5. ABS 심층 정보
    - 5.1 ABS의 근거
    - 5.2 학술연구자의 책임
    - 5.3 주요개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과 이익공유

- 5.4 국제적 법체계
- 5.5 관련 전통지식
- 5.6 ABS 절차의 요소: 권한 및 기관

## 몰도바 나고야의정서 비준

1. 동유럽에 위치한 몰도바가 2016년 8월 24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2.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8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76개의 당사국이 있음.(나고야의정서 제33조에 따라 비준국은 비준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당사국이 됨)

## 벨기에, 불가리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1. 벨기에가 2016년 8월 9일, 불가리아가 2016년 8월 11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2.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8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75개의 당사국이 있음.

## 영국 왕립 원예협회 워킹그룹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성명 발표

1. 영국왕립원예협회 워킹그룹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
2. 나고야의정서 워킹그룹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개인 및 기관의 인식제고와 모범관행의 개발을 통한 의무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시된 핵심적인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 1) 식물채집: 현재 활동의 의미 및 보존과 기타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위협
  - 2) 원예에 있어서의 이익공유: 어떻게 평가되고 관리될 것인가?
  - 3) 적정주의의무: 무엇이 요구되며 식물채집가와 원예가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4) 이용(Utilization): 원예에 있어 나고야의정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며 상업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옥스포드대 연구지원센터, 나고야의정서 가이드선

1. 개요
2. 따라야할 절차
3. 20년간 보존되어야 할 기록들
4. 나고야의정서와 연구사이클
5. 현재까지의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6. 의정서 위반에 대한 벌칙
7. 추가 정보 및 연락처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용한 정보들

## 영국 린넨 학회 총회,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1. 2016년 9월 22일 린넨학회는 나고야의정서에 중점을 둔 전문가회의를 개최 예정
2. '현행 환경규정의 이해 및 이행: 생물학, 국경과 소유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회의는 컬렉션의 거래, 소유, 관리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현재의 규정들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책 및 조언을 제공할 예정

## 독일연방원예협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려 표명

1. 독일 연방원예협회는 나고야의정서의 근본적인 목적에 동의하지만 나고야의정서가 UPOV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육종자의 예외를(신종의 교배 및 선택에 있어 다른 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
2. 원예협회 관계자는 신종 교배 시마다 서류제의 행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과 나고야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경쟁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힘

## 스위스, 나고야의정서와 ABS: 과학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 워크숍 개최

1. 스위스 과학아카데미와 환경국은 2016년 9월 9일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반일 워크숍을 개최하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9:15-9:30	개회	10:15-11:00	연구자를 위한 지원 및 툴(tools)
9:30-9:50	스위스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그 이행(비당사국에 대한 ABS 팁 제공)	11:00-11:30	휴식
9:50-10:15	바른 과학적 연구관행 관점에서의 나고야의정서	11:30-12:00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의 ABS 사례 2건
		12:00-12:20	질문 및 토론

## 체코(Czech Republic), 나고야의정서 비준서 기탁

1. 2016년 8월 4일자로 발효
2. 전체 비준 수: 75(EU 포함), OECD 국가(34개국) 중 9개국 비준(멕시코, 노르웨이, 헝가리,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슬로바키아, 영국, 체코), EU 회원국(28개국) 중 7개국 비준(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3.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계획 운용
4. 생물다양성협약과 ITPGRFA 가입 이후 관련 법률 제정하고 있지만 야생동식물 미적용, 이익공유 미규정 등의 문제

## 네덜란드 국내 나고야 이행법, 2016년 4월 발효

1. 2016년 4월 네덜란드 나고야 국내 이행법이 발효하였으며 이법은 네덜란드 식품안전국을 담당자(regulator)로, 와닝겐 유전자원센터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2. 본 법의 위반에 따른 구제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에 대하여 최고 6년형을 구형할 수 있음

## 불가리아 정부,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국회제출 예정

1. 불가리아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016년 4월 27일 발표
2. 비준법 가안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제공국으로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비준에 따라 국가재정의 직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유전자원의 상업적 목적 접근에 대한 행정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불가리아는 비준에 따른 필요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임을 밝힘

## 독일, 4월 21일자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1. 2011. 6. 23. 서명, 2016. 4. 21. 비준, 2016. 7. 20. 발효
2. 총 비준국 74개국(EU 포함)
3. EU 회원국 7개국 비준(덴마크, 독일,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크로아티아, 헝가리)
4. 국가연락기관 : 연방환경자연보전핵안전부(환경부)
5. 국가책임기관(나고야의정서) : 연방자연보전청
6. 관련법령 :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 규칙(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 특허법 조문 개정(생물자원의 지리적 원산지 정보가 포함된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그 사실을 연방자연보전청에 알리도록 함)
7. \* 식량농업유전자원은 농식품연방사무소와, 인체병원균유전자원은 코베르트 코흐 연구소와 협의하여 연방자연보전청이 관리

## 법률회사 COVINGTON, 유럽의 나고야의정서이행 정리자료

1.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3개 축은 접근, 이익공유, 의무준수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제공국의 이행법률 및 EU 규칙과 그 시행령, 회원국의 의무준수 관련 규정 등이 있음(네덜란드는 EU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마케팅을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음)
2. EU에서 현재 작업중인 가이드라인 초안은 R&D의 불분명한 정의에 대응하여 '리트머스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가 R&D가 유전자원에 "New insight"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음
3. 유전자원 사용자들은 R&D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seek), 보관하고(keep), 이전(transfer)할 의무를 지며, 현재 개발 중인 의무 준수 선언을 업로드 온라인 시스템은 연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4. 산업계에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개발중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함

## 유럽미생물자원연구기반(MIRRI), 유전자원 접근정책 Ver.1

1. 유럽미생물자원연구기반이 2016년 1월에 발표한 유전자원 접근 정책에 따르면 2014년 10월 이후 분리된 균주로 나고야의정서 및 국가 ABS 정책에 따른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문서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MIRRI 컬렉션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

## 프랑스 르몽드지 공공연구소 생물해적행위 기사 및 연구소 입장표명

1. 프랑스 공공기관인 개발연구원(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IRD)의 특허출원을 통한 생물해적행위는 지난 2016년 1월 26일 제1독회(the first reading)를 거쳐 상원을 통과 뒤 제2독회 후 연말 전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생물다양성법이 당면한 도전 중 하나임
2. IRD는 2000명의 고용인가운데 800여명의 연구자들이 지난 60 여년 간 아프리카, 지중해, 남미, 아시아 등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던 만큼 생물해적행위 논란은 향후 연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3. 이에 대해 IRD 대표는 2016년 2월 11일 인터뷰에서 생물해적행위와 본 연구소를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며 이익이 나면 법에 따라 당연히 공유할 것이며 특허출원은 연구결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음을 밝힘

## 영국 BBC, 불법수집 된 히말라야 식물 판매유통 보도

1. 영국 BBC는 취재결과 불법적으로 취득된 해외식물종자가 영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힘
2. 영국의 한 정원협회 관계자는 불법에 대한 인식 없이 인도 시킴 주에서 2012, 2013년도에 허가 없이 종자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일부는 보호구역에서 채집되었
3. 인도 현지의 라이선스 및 수출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연계를 가지고 종자를 공급했다고 하는 밝힌 한 업자는 현재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2016년에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현지에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나 인도 당국에 문의 결과 현지회사와 연계하더라도 외국인이 허가 없이 종자를 반출할 수 없다고 답변
4. 구입자의 종자판매자 허가의 취득여부 확인의 한계, 합법적 취득절차에 대한 제공국의 비협조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 EU 규칙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식재료에 대한 공정무역과 같이 정원에 기르는 식물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함

## 유럽미생물자원연구기반(MIRRI), ABS 모범사례 개발 중

1. 나고야의정서 제20조 및 EU 규칙 제8조에 따라 MIRRI(Microbial Resource Research Infrastructure)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ABS 모범사례를 개발 중임
  -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ABS의 규범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CBD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임을 표방하는 정책 성명
  - 회원 생물자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구조건 설정
  - 물질의 취득, 공급 및 교환, 타 서비스에의 제공 및 연구에 있어서의 모범 사례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영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1. 2016년 2월 22일 영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72개 비준국 및 69개 당사국이 되었음

## 스위스 나고야의정서 이행조례, 2016.2.1 발효

1. 스위스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례(Ordinance)가 2016년 2월 1일 발효되었으며 스위스 과학재단(SNSF)은 ABS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 신청서를 새롭게 업로드 하였음
2. 이로서 해외유전자원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적정주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며 연방환경부에 유전자원의 상품화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어야 함

## 프랑스 생물해적행위 논란 정부연구기관, 특허이익 공유 합의

1.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개발연구원(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IRD)는 프랑스령 기니아의 지역공동체 및 토착지식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의 특허 이익을 기니아 측과 공유하기로 합의
2. IRD는 토착민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중남미를 원산으로 작은 빨간꽃을 피우는 Quassia amara로부터 Simalikalactone E(SkE)를 분리,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였으며, 기니아 지역공동체와의 협의 없이 2015년 3월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얻음
3. 생물해적행위 논란에 따른 특허취소의 목소리가 나오자 초반에 IRD 연구소는 이는 장기적인 보건연구노력에 대한 위협이며 토착민들에 대한 인터뷰는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랑스 정부와의 협의 후 이익공유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4. 빠르면 2016년 여름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인 생물다양성법 신법 발효 전까지 이와 같은 사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자들은 구식민지였던 프랑스령의 생물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 및 상호존중을 염두 해 두어야 함

## EU 집행위, 제1회 ABS 컨설팅포럼 개최

1. EU 집행위 환경총국은 2015년 1월 21일 ABS 이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 및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촉진을 위한 첫번째 ABS 컨설팅포럼을 개최하였음
2. EU 규칙 제 15조에 따라 만들어진 본 포럼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로 ELC(Federation of European Specialty Food Ingredients Industries, 스페셜티 식품 원료 산업연합), CETAF(Consortium of European Taxonomic facilities, 유럽 분류학 시설 협력단) 등이 참여
  - \* 스페셜티 식품(specialty food): 대량생산을 하지 않는 고품질의 식품

## 영국 생물자원네트워크

1. 제약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영국의 활동은 8개의 생물자원 센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음
2. 생물자원 센터는 생물자원의 제공뿐 아니라 관련 바이오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 허가,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3. 영국 생물자원 네트워크는(UK Biological Resource Centre Network, UKBRCN) 영국의 바이오 과학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 조정, 타 국가들과의 협력, 영국 산업계 지원, 공공접근포털 서비스 등을 제공함
4.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UKBRCN은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관련 정보(ex.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사용자들에 제공하며, 유전자원 사용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 모범사례를 공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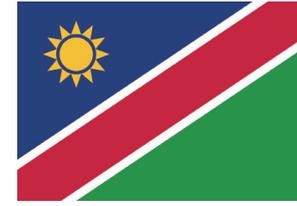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세테갈  
잠비아  
차드  
케냐  
토고

# AFRICA



아프리카

## 나미비아 의회, ABS 법률안 심의 중



나미비아 하원 의회가 올해 4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을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 전통지식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ABS 법률안은 현재 나미비아 상원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다.

나미비아는 1998년 ABS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이후 오랜 기간 수정을 거쳐 왔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BS 입법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2015년 11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본 ABS 법률안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토착 지역공동체의 권리 보호' 및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나미비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자는 국가나 공동체의 대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률안에는 '환경관광부 내 나고야의정서 및 ABS 담당 유닛 신설'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나미비아는 2014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이번 ABS 법률안을 통해 거대 제약 회사들의 자국내 약용 가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무단 이용을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http://allafrica.com/stories/201705110836.html>  
<https://southernafrican.news/2014/08/11/nagoya-protocol-namibia-needs-law-on-access-to-genetic-resources/>

## 나미비아 환경부장관, “자국 ABS법 도입 절차 막바지 단계”



나미비아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규제하기 위한 ABS법 도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포함바 시페타(Pohamba Shifeta) 환경관광부 장관은 작년 11월, 자국 ABS법(안)을 처음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천연자원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이번 나미비아 ABS 법에는 크게 4가지 목적이 담겨 있다. 1)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규제 2)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과 기술들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 보호, 3)이익공유

를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메커니즘 마련 4)ABS 이행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구조 및 필수 절차 설립 등이다.

시페타 장관은 2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나미비아 ABS 전략 이행 체계 개발 워크숍’에 참석하여 ILC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관은 자국의 풍부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국가 발전의 커다란 자산’이라며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IPLCs야말로 ‘유전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 말했다.

그러나 IPLCs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도매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자원을 최저가로 사들인 뒤 큰 이익을 창출하여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있다”고 밝히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나미비아 토착지역공동체들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장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협동체, 관리단, 협회등을 조직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나미비아에는 4,500종의 식물종을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700종은 나미비아에만 있는 고유 식물종인 것으로 조사된다.

나미비아에는 이미 ABS 관련 협정들이 여러 차례 체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나미비아 쿠네네 코모포라 관리 협회’(Kunene Commphora Conservancies Association)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플렉스社’(Afriflex)간의 몰약 (Commiphora resin) 관련 ABS 협정이 있다.

소피아 스왈츠(Sophia Swartz) 천연자원 국회상임위원회 의장은 이 날 워크숍에서 “IPLCs들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왈츠 의장은 “우리가 할 일은 자원 제공자인 IPLCs들이 민간분야 및 연구기관과 공평하고 공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역량 형성 및 기술이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나미비아는 2014년 5월 나고야의정서를 가입(accession)하여 2014년 10월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http://www.lalamobile.com/content/60096/Access-and-benefit-sharing-Bill-soon-a-reality-Shifeta/>

## 남아공,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등록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허가증(Permits)을 발급함에 따라 ABSCH에 두 번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인증서(IRCC)’가 등록되었다.

\* Internationally Recognised Certificate of Compliance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ABSCH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허가증이 ABSCH에 공개되면 해당 문서는 자동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인증서(IRCC)가 된다.

이번에 등록된 IRCC에 따르면 제공자는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인 ‘남아공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로, 남아공의 케이프 주에서 자생하는 ‘스켈레티움 토르투오숨(Sceletium tortuosum)’ 종 및 관련 전통지식을 대상물질로 하고 있다. 대상물질의 이용자는 남아공 제약회사인 HG&H Pharmaceuticals(Pty)이며, 스킨케어 토르투오숨 종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전통고 승인을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였다.

사전통고승인(PIC)에 따라, HG&H는 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해당 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 동안(2015.2.23~2020.2.22) 진전 사항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르면, “HG&H는 스킨케어 토르투오숨 관련 전통지식이 신제품 발견 및 발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인정은 남아프리카 ‘산족 위원회(San Council)’와 ‘나마 공동체(Nama Community)’와의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족 위원회와 나마족에게 지불하는 이익공유 전액은 남아공 ‘국가환경관리법(Act No. 107 of 1998)’ 제28조에 따라 ‘생물탐사신탁기금(Bioprospecting Trust Fund)’에 기탁된다.

제3자 이전에 있어서는 발급청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스킨케어 토르투오숨과 그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3자 이전이 불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최초의 IRCC는 2015년 10월 인도 정부에 의해 등록되었다.

참고  
자료

<https://absch.cbd.int/search/national-records/IRCC>

## 부탄, 나고야의정서-ITPGRFA 상호 이행 워크숍 개최



9월 29일 부탄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및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이하 ITPGRFA)의 상호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부탄 농업산림부 산하 국립생물다양성센터와 국제 농업 연구기관 Bio-iversity International이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정책 마련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 간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 주제는 1)종자 시스템 소개, 2)ITPGRFA의 국가적 이행 역량 강화 방안, 3)사례연구를 통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간의 상호 이행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탄 농업산림부를 비롯한 농업식량규제청, 산림공원서비스부, 부탄국립대학교, UNDP CO 등 범부처 관계자가 23명이 참석했다.

부탄은 2013년 9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이듬해 10월 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국가환경위원회를 국가 연락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moaf.gov.bt/tandem-workshop-on-mutually-implementation-of-nagoya-protocol-and-itpgrfa/>

## 상투메프린시페,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재까지 비준국 수 94개국



상투메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가 올해 1월 10일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현재까지 94개국, 당사국 수는 87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상투메프린시페는 아프리카 중부 기니 만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대륙별 비준 동향을 살펴보면 아프리카(38개국), 중남미(12개국), 아시아(17개국), 유럽(22개국), 오세아니아(5개국)로 집계된다.

아(5개국)로 집계된다.

의정서 비준현황은 CBD 홈페이지(<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세네갈, 나고야의정서 비준(16.3.3), 총 73개 비준국 돌파



2016년 3월 3일, 세네갈 정부는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세네갈의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73개국(EU 포함)이 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32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나고야의정서 제33조에 따라 세네갈은 6월 1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참고로 2016년 9월까지 의정서를 비준하여야 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당사국회의(COP-MOP2)'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네갈은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지정하였으며,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 하는 법률은 현재 제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 아프리카 환경 전문가들 생물해적행위 대책 논의



나미비아, 카메룬, 잠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해적행위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아프리카연합(AU)의 「나고야의정서 공동 이행을 위한 전략 가이드라인(2015)」이 마련됐지만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흡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자국 식물인 페리윙클(*Catharanthus roseus*)을 관상용 식물로 재배하여 세계시장에 판매했으나 제약 회사들은 페리윙클을 이용하

여 암치료제를 개발하였다.

현재 페리윙클의 이용에 대한 마다가스카르와의 경제적 이익공유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생물자원 탐색 및 상업화 과정에서 생물탐사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생물탐사자와 지역공동체 간에는 이익공유가 없다”며 이는 생물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미비아는 “일찍이 서양 식물학자들이 아프리카 전통 치료사들의 전통지식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양약을 개발하였다. 우리의 전통지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비싸서 구매할 수 없는 약이 되어 돌아왔다”고 밝혔다.

카메룬은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팜유로 국부를 늘리고 있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수분매개 곤충을 제공한 카메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합성생물학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합성생물학이나 나노기술 발달로 생물자원을 직접 채집하지 않아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해져 이러한 정보에 대한 출처공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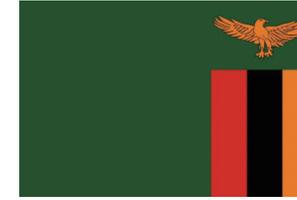
참고  
자료

<https://news.mongabay.com/2017/10/conservation-leaders-in-africa-call-for-a-crackdown-on-biopiracy/>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periwinkle-catharanthus-roseus-178005/>

## 잠비아,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등 보호법 마련



잠비아 정부는 2016년 5월 20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후, 다음 달인 6월 7일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표현의 보호에 관한법”(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 Expressions of Folklore Act No. 16 of 2016, 이하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법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표현에 대한 보호,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체계에 관한 것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유자들의 이용

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 및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보유자인 전통 공동체(traditional community)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 특허기업등록청(Patents and Companies Registration Agency)에 접근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제33조). 접근에 대한 서면합의는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본법은 위반자에 대하여 4년 이하의 구금과 400,000 penalty unit(약 12,000 달러)이하의 벌금을 함께 또는 따로 부과할 수 있다(법 제72조).

참고  
자료

[http://www.wipo.int/wipolex/en/news/2016/article\\_0009.html](http://www.wipo.int/wipolex/en/news/2016/article_0009.html)

## 차드-레바논, 나고야의정서 비준 - 비준국 수 104개국



차드와 레바논이 각각 10월 11일, 10월 13일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104개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차드는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어업부를 지정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 위치한 레바논은 천연자원환경보전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므로 차드와 레바논은 내년 1월부터 당사국이 된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 케냐 ABS 정보포탈 접근 허가 신청 현황



케냐 정부는 국가차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돕고 ABS 정보를 교환하고자 '케냐 ABS 정보포탈'\*을 운영 중이다. 해당 포탈에는 케냐의 천연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접근을 신청하는 기관들의 정보

와 활동 목적들이 공지되어 있다.

\*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information portal for Kenya

케냐 환경관리 및 조정법(2015)\*에 따라 케냐 국가환경관리국(NEMA)\*은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전 21일간의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고된 신청 건은 모두 비상업적 학술목적의 채집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MENDMENT) AC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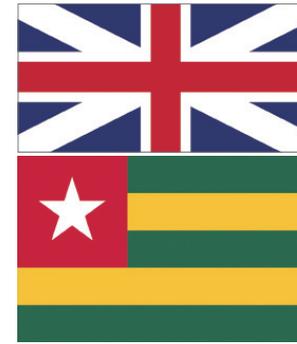
\* the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NEMA):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 이행을 돕기 위한 준정부 기관으로 1999년 환경관리협력법 하에 설립

공고일	신청자	국가	소속	활동
1 2015. 10.12	Sara Elizabeth Heisel	미국	조지아 대학	그레비 얼룩말의 유전자형 분석을 위한 분변샘플 1000개, 자연사한 얼룩말의 조직 및 혈액샘플 30개 수집 케냐 야생동물청과 물질이전협정에 따라 해당 샘플들은 조지아 대학교에 보관될 예정이며 수집 정보는 학술, 보전 용도로만 사용될 예정
2	Josphat Clement Matasyon	미국	에거튼 대학	케냐 카카메가 숲 및 엘곤산의 서식종 분석 및 보전을 위해 대형 균류 및 열대균류 수집
3	Noah Dunham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	자연사한 콜로부스 원숭이의 뼈를 수집하여 추가 연구를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영장류 연구소로 반출
4	Dr. George Omondi Paul	케냐	케냐	케냐 침팬지와 개코원숭이의 결핵연구를 위해 혈액 및 분변 샘플을 채취하여 미국 미네소타 연구소로 반출
5	Dr. Carie Ann Cizauskas	미국	프린스턴 대학	케냐 엠팔라 연구센터에 있는 올리브 개코원숭이와 벨벳원숭이의 분변 샘플을 수집하여 박테리아 DNA 분석, 호르몬 측정 등을 위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반출
6	Nicole Aline Thompson	미국	콜롬비아 대학	케냐 카카메가 숲에 서식하는 긴꼬리원숭이의 분변 및 소변샘플 수집 후 원숭이의 신진대사 연구를 위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으로 반출
7	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Systems	일본	일본 극지연구소	케냐 산 빙하의 미생물 연구를 위해 빙하퇴적물 및 빙하, 빙하해안지역 토양 샘플 채취하여 일본 극지연구소로 반출
8	Kunming Institute of Zoology	중국	쿤밍 동물학 연구소	케냐 야생동물보호국 등과의 능력배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케냐의 주요 동물 서식지 5곳의 동물상 샘플을 수집, 분석 분석한 자료는 학술 용도로만 이용되며 상업적 이익이 추구되지 않음
9 2015. 11.30	Ms Virginia Kimani Wambui	케냐	케냐 산업연구 개발기구	케냐 열대 산림의 목재 및 낙엽에 서식하는 균류들을 채집하여 리그닌(목재섬유소)변형 효소를 분자 동정할 예정
10 2015. 12.18	Mr. Stanislaus Mulu Kivai	미국	헛거스 대학	타나강 망가베이(원숭이류)가 섭식하는 과일 및 나뭇잎과 분변샘플을 채취하여 영양 분석을 위해 미국 헛거스대학교 영양 생태 연구실에 반출될 예정 분석정보는 학술 용도로만 이용되며, 멸종위기 영장류 보전을 위함임

자세한 정보는 <http://meas.nema.go.ke/ab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meas.nema.go.ke/abs/2015/12/18/access-permitcollection-of-plant-food-materials-eaten-by-the-tana-river-mangabey/>

## 토고와 영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6년 2월 22일, 영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영국의 비준으로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총 72개국이며 그 중 당사국은 69 개국이 되었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3월 23일 자국 ABS 법안인 '나고야의정서(의무준수) 규칙 2015'(The Nagoya Protocol(Compliance) Regulations 2015)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EU 규칙(Regulation (EU) No 511/2014)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본문 6장(6 part)과 민사제재와 관련한 절차를 다룬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규칙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xi/2015/821/pdfs/uksi\\_20150821\\_en.pdf](http://www.legislation.gov.uk/ukxi/2015/821/pdfs/uksi_20150821_en.pdf)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현황

<https://www.cbd.int/abs/>

## 기타 아프리카동향

### 보츠와나, 3개년 ABS 프로젝트 실시

1. 보츠와나 환경천연자원보전관광부와 UNDP 보츠와나가 향후 3년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 법 체계, 제도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
2. 보츠와나는 프로젝트 실시 전 11월 9일 ABS 워크숍을 개최하여 MAT, PIC 양식 마련의 중요성, ABS법체계 구축에 있어 IPLC 등 사회 구성원 전원의 참가 및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함

### 아프리카 환경 전문가들 생물해적행위 대책 논의

1. 나미비아, 카메룬, 잠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해적행위 문제 논의
2. 이들은 생물해적행위 사례로 말레이시아 팜유 수분매개곤충 사례와 마다가스카르 페리윙클 사례를 손꼽음
3. 사례 1: 세계 팜유(palm oil)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팜유는 카메룬에서 팜 나무 수분매개곤충 (*Elaeidobius kamerunicus*)을 수입하기 전까지 팜유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음. 그러나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팜유로 국부를 늘리고 있지만 카메룬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있음
4. 사례 2: 마다가스카르는 자국 고유 식물인 페리윙클(*Catharanthus roseus*)을 관상용 식물로 세계시장에 판매했으나 후에 제약회사에서 이를 암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공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츠와나,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 개최

1. 10월 25일, 보츠와나 환경부는 UNDP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을 개최함
2. 워크숍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 및 이행법제 마련, 제도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다룸
3. UNDP와 환경부는 CBD와 나고야의정서의 의의를 강조하며 “자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향후 3년간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4. 보츠와나는 현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임 (2013.2.21 기준)

### 부탄, 나고야의정서-ITPGRFA 상호 이행 워크숍 개최

1. 나고야의정서 및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의 상호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이 9월 29일 부탄에서 개최됨
2. Bioversity International과 부탄 농업산림부 산하 국립생물다양성센터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국책 마련 차원의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의 상호연관성 파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됨
3. 부탄 농업산림부, 농업식량규제청, 산림공원서비스부, 부탄국립대, UNDP CO 등 정부, 국제기관에서 23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진행됨

### 아프리카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개최

1. CBD 사무국은 11월 7일부터 이틀간 우간다 엔테베에서 ‘아프리카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임(SCBD/IMS/ET/LZ/86821)
2. 이번 회의는 CBD 사무국과 우간다 환경관리청이 함께 개최하며, BBI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금 후원을 받음
3. 아프리카 지역 내 각 정부는 CBD, 나고야의정서 기술과학 협력 및 기술이전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씩 추천하여 본 공지문에 포함된 추천서 양식에 따라 9월 29일까지 CBD 사무국에 제출

### 짐바브웨 101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1.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가 9월 1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
2. 현재까지 비준국 수는 총 101개국
3. 짐바브웨는 비준 후 90일 뒤인 11월 30일부터 정식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

### 나미비아 국회, ABS 전통지식법 통과

1. 나미비아 국회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국 입법으로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법(안)’을 최근 통과시킴
2. 동 법은 자국 자연서식지 내·외에 있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에 대한 파생물, 관련 전통지식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음
3. 특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지역공동체 지식재산권(공동체 규범, 관행, 관행 법 등 성문법, 불문법 모두 포함)을 인정 및 보호하는 규정들이 포함됨

### 부탄, 자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ABS 세미나 개최

1. 5월 27일 부탄은 파로 사범대학(Paro College of Education)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와 ‘부탄 생물다양성포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
2. 파로 사범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280명이 참석하여 CBD, 나고야의정서, 부탄의 국내정책 등을 발표 및 논의함
3. 이 세미나는 부탄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기금과 UNDP 부탄이 후원하여 개최됨
4. 부탄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나미비아 의회, ABS 법률안 심의 중

1. 나미비아 하원 의회가 올해 4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을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 전통지식 법률(안)’\*을 통과시킴  
\*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Bill
2. 하원을 통과한 ABS 법률안은 현재 나미비아 상원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진행 중임
3. 이 법률안에 따르면 나미비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자는 국가나 공동체의 대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법률안에는 ‘환경관광부 내 나고야의정서 및 ABS 담당 유닛 신설’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잠비아,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표현물 보호법 입법

1. 잠비아 정부는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지난 2016년 6월 마련하였음(잠비아는 2016년 8월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아직 ABSCH에 업로드된 관련법안은 없음)
2. 본 법안은 제 3장 전통지식, 제4장 유전자원, 제5장 접근 및 이익공유 장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케냐, ABSCH 첫번째 커뮤니티 프로토콜 등록

1. 케냐 오키에쿠족의 생물문화공동체 프로토콜(BCP)은 ABS와 관련해서 다음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광업부: 영역 내에서 발견되는 가치있는 광물 등
  - 환경자연자원부: 마우 숲의 자원의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
  - 건설회사: 숲에서 건설자재를 채취 시
  - 여행사 및 호텔: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
  - 학술기관: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활동

## 아프리카 연합, 동물유전자원과 나고야의정서 보고서 발간

1. 개관
2. 배경
  - 2.1 인간의 지배와 환경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손실
  - 2.2 국제 다자간 대응 및 국내적 이행
  - 2.3 동물유전자원의 사용, 교환 패턴과 트렌드: 아프리카의 주요 ABS 이슈
3. 관련 법적 수단, 정책 프레임 워크 및 재산권
  - 3.1 생물다양성 협약
  - 3.2 나고야의정서
  - 3.3 아프리카 연합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라인
  - 3.4 CGRFA의 ABS 요소
  - 3.5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가축 개발, 동물 동정 및 기록 추적과 관련한 Pretoria 선언
  - 3.6 국가 수의학 및 혈통등록부 규정
  - 3.7 관습법, 생물문화커뮤니티규약 등 기타 지역공동체 수준의 절차
  - 3.8 동물유전자원의 재산권과 사적 소유권
  - 3.9 동물유전자원의 이전 관련 계약
  - 3.10 지식재산권
  - 3.11 가축 보유자의 권리 또는 농부권
4. 동물자원의 교환 및 이전과 관련한 법적 환경 분석
5.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향한 국가 차원에서의 진전
6. 나고야의정서 이행 분석
7. 유전자원의 교환 및 이전과 관련한 기술적 기준 및 규범
8. 현존관행
9. 기술기준 및 규범 제안

10. 아프리카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 및 가이드라인
11. 결론 및 제안

## ABSCH에 남아공 두번째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등록

1.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경부는 HG&H 제약회사에 대한 PIC/MAT 발급
2. PIC에 따르면 대상 유전자원은 Sceletium으로 허가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게 되며 허가의 연장을 위한 진행보고서의 연간제출 의무, 제3자 참여에 대한 서면으로 통보의무를 규정함
3. MAT에 따른 이익공유는 생물탐사신탁펀드에 지불하게 됨

## 세네갈(Senegal) 나고야의정서 비준

1. 2016. 3. 3. 비준, 2016. 6. 1. 발효
2. 73개국 비준(EU 포함), 아프리카 54개국 중 32개국 비준
3. 국가연락기관 : 환경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 현재 ABS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 부재
5. 여러 법률에 생물자원에 관한 표현이 존재하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보다는 생태계 및 생물종관리 규정만 존재
6. 1996년 이후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화 추진,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에 권한 부여
7. 유전자원 관련 규제 및 정책 개발 시 지역공동체 참여
8. WTO 회원국으로서 TRIPs 협정을 적용하나, CBD 및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소속 국가들과 같이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주권과 전통생활양식 보전의 중요성 강조 --> TRIPs 제27.3조 (b)항(생명체에 대한 특허 가능)을 CBD 제8조 (j)와 제15조 (1)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

## 나미비아, ABS법 도입 절차 막바지

1. 나미비아 환경관광부 장관에 따르면 나미비아는 지난 2015년 11월 국회에 ABS 법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법안은 국가자원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있음.
2. 나미비아에서는 2010년 몰약(Commiphora resin) 관련하여 남아공 화장품 기업(Afrilex Ltd)과 ABS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연구자들 및 민간사업자들과 토착민들이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역량강화를 통해 국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AMERICA



## 과라니족(Guarani): “코카콜라, 스테비아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중단하라”

파라과이·브라질 토착민족인 과라니(Guarani) 족이 자신들의 전통 지식을 위협하는 합성 제품에 대해 ‘공정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가 과라니 족의 스테비아(Stevia) 관련 전통지식을 무단 이용하여 부족의 이익을 가로채고, 부족민의 주요 수입원을 위협한 것에 대해 탄원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과라니 족은 수세기 동안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잎을 천연 감미료로 사용해왔다. 현재 코카콜라를 비롯한 여러 다국적 음료 기업들이 스테비아 잎을 이용한 합성 감미료(Steviol glycosides)를 첨가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이익 창출에 대해 6개 대학 및 기관들은 이들을 추적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비영리 소비자 단체 ‘섬오브어스’(SumofUs)와 기업 감시단체 ‘프랑스 리베르페’(France Libertes) 등은 21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코카콜라의 생물해적행위를 비판한 탄원서를 마련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은 합성 스테비아를 특허 출원한 후 이를 음료의 단맛을 바꾸는 ‘천연’ 제품 또는 ‘전통’ 제품으로 브랜드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라니족의 스테비아 잎은 합당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비아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 이익은 다국적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한편, 소비자들은 제품에 사용된 스테비아가 합성 감미료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익공유가 반드시 금전적일 필요는 없지만 과라니 족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몇몇 기업들은 부족민과의 이익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스테비아로 이익을 창출한 다수 기업들은 ‘자사의 활동은 소비자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답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보고서는 ‘펩시코(PepsiCo Inc.)와 코카콜라(The Coca-Cola Company)가 가장 큰 주범’이라고 했다.

과라니족은 코카콜라의 스테비아 이용에 대해 “스테비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업의 스테비아 이용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요구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스테비아와 그 파생물의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은 과라니족을 비롯한 자국민의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입법을 작년 통과 시킨 바 있다.

과라니 족은 선언문에서 “우리의 터전, 지구가 위협에 처해있다”며, “인간의 끊임없는 소비와 탐욕으로 우리의 땅과 공동체가 오염되고, 나아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고 자료** <http://www.telesurtv.net/english/news/Coca-Cola-Urged-to-End-Biopiracy-Against-Indigenous-Guarani-20170222-0031.html>

이미지 출처:

스테비아가 함유된 코카콜라 라이프 (Coca Cola Life with Stevia)

By Mike Mozart of TheToyChannel and JeepersMedia on YouTube [CC BY 2.0 (<https://www.flickr.com/photos/jeepersmedia/16479871158>)].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나고야의정서 적용 잠정 중단 결정



6월 18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및 토착지역공동체 단체들이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로 나고야의정서 승인법(Decree 06-2014)의 잠정 중단을 명했다.

과테말라 시민단체 및 토착지역공동체 단체들은 “나고야의정서가 GMO를 합법화하여 자국의 종자(seed) 및 전통지식을 개인화 및 상업화할 수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Convention 169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와

사전상의를 거쳐야 하나 사전상의 없이 나고야의정서 승인법을 통과시켰으며, 나고야의정서 승인법의 통과 시 의회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진행하여 위험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착 마야족 당국(Autoridades Ancestrales de los pueblos Mayas)’, ‘국가 생물다양성 보호 연맹(ANAPROB: Alianza Nacional de Protección a la Biodiversidad)과 ‘식품 주권 보호 네트워크’(REDSAG: Red Nacional por Defensa de la Soberanía Alimentaria de Guatemala)는 과테말라 내 나고야의정서의 전면 중단과 토착민 기구 형성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과테말라는 2014년 6월 1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참고 자료 <https://ceppas.org.gt/article/suspension-temporal-del-protocolo-de-nagoya-en-gua/>  
<https://foodfirst.org/pueblos-indigenas-de-guatemala-rechazan-protocolo-de-nagoya/>

## 과테말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의무준수 인증서 등록

ABSCH에 세 번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가 등록되었다. 발급국은 과테말라로, ‘국가보호구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Protected Area, CONAP)’를 발급청으로 하여 과테말라 Del Valle 대학에 2015년 10월 9일자로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본 인증서에 따르면 Del Valle 대학은 마호가니(Sweetenia macrophylla King) 및 삼나무(Cedrella odorata L) 유전자원의 유전 변이성 및 산림 관리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두 생물종에 대한 접근을 허가 받았다. 접근 대상종과 사전통고승인(PIC)에 대한 세부사항은 IRCC에 PDF 문서형식으로 링크되어 있다.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해서는 ‘마야 생물권 보전지역(Maya Biosphere Reserve) 산림 구역에 있는 마호가니 및 삼나무의 유전자원 이용에서 오는 이익들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기술 역량 이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과학 정보 접근, 연구 업무에 대한 사본 3부 기탁 등이 있다. MAT 세부정보는 IRCC에 링크된 PDF 파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 IRCC는 ‘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공자(CONAP)의 사전 동의 없이는 연구결과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제3자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absch.cbd.int/search/national-records/IRCC>

## 멕시코 환경 시민단체, 멕시코 생물다양성 입법 반대 성명서 제출



멕시코 환경 단체와 학자들이 자국내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이 멕시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기업의 사유화를 인정하여 생물해적행위를 방조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멕시코 상원의 생물다양성 입법 추진 중단 및 토착 지역공동체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하였다.

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멕시코 소설가 엘레나 포니아토프스카, 그린피스 멕시코, 국가 캠페인 ‘Without Corn There’s No Country’, 인권 단체 ‘Center Fray Francisco de Vitoria’ 등이다.

입법 추진안에 생물종 보호 조항은 누락된 채,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상업화를 위한 제약, 화장품, 농공기업 등 산업계에 특허를 허용하고 있어 멕시코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생물문화유산과 영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피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입법이 기업에게 자국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여 토착 전통 지식 및 생물자원의 사유화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밝히며, 자국 생물다양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착 지역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추진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토착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멕시코 헌법 및 국제조약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 부국인 멕시코가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이전에, 먼저 자국의 생물다양성과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 지식 및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http://www.telesurtv.net/english/news/Mexicans-Protest-Law-That-Will-Amount-to-Biopiracy-for-Indigenous-Communities-20170413-0006.html>

이미지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lag\\_of\\_Mexico](https://en.wikipedia.org/wiki/Flag_of_Mexico)

##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출처 확인 가능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 최초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와 해당 시료의 출처 정보가 함께 연동되는 유전체 관측 메타데이터베이스(GeOMe)\*가 개발되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및 하와이 해양생물연구소 등 8개 연구 기관과 합작하여 개발하였다.

\* GeOMe: Genomic Observatories Metadatabase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되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들의 경우,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는 있지만 생물자원의 채집지나 채집 시기에 대한 정보는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출처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서식지 변화 등 생물다양성의 시기별 추이를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계에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오랜 연구 끝에 GeOMe가 탄생하게 되었다.

8개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컴퓨터 공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GeOMe는 유전 시료의 획득 시간, 환경, 공간, 학술정보를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연동시켜 연구계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GeOMe 개발을 위해 미국국립과학재단, 고든앤베티무어재단, 미국해양대기관리처 등이 기금을 지원하였다.

참고  
자료

<http://insider.si.edu/2017/08/first-new-website-reveals-origin-genetic-samples-time-collected/>

## 미국 특허청 서 출원된 천연 색소 특허에 최초로 ABS 언급돼



최근 미국에 출원된 특허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및 토착지역공동체와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이 명시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에 ABS 진술이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특허(US patent 9,376,569 B2)는 음식과 개인용품에 쓰이는 천연 색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 콜롬비아의 Ecoflora Cares가 출원한 것으로, 콜롬비아에 자생하는 *Genipa americana* 열매에서 식용 가능한 청색 색소를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천연 색소는 음식과 청바지에 사용되는 인공 색소인 '인디고틴(indigotine)'을 대체할 수 있다.

Ecoflora Cares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자원 소임을 권장하는 비영리 협회인 '윤리적 생물교역을 위한 연합(UEBT: Union for Ethical BioTrade)'의 회원으로, 최근 UEBT는 2010년에 개발된 '특허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UEBT 원칙(UEBT principles on patents and biodiversity)'의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UEBT 원칙에는 특허 출원 시 생물자원의 출처 표시 및 ABS 계약과 특허 간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Ecoflora Cares는 안데스 결정문 391(Andean Decision 391)에 입각한 법률을 바탕으로 *Genipa americana* 이용에 대해 콜롬비아 내 다양한 허가증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1년 *Genipa americana* 열매의 천연 색소 개발을 위한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허가증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에는 관련 지역공동체와 여러 건의 상업적, 비상업적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4년 콜롬비아 환경부는 Ecoflora Cares와 계약을 체결하여 천연 색소 개발을 위해 *Genipa americana*의 상업적 이용을 승인한 바 있다.

콜롬비아와 미국 둘 다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상태에서 이 같은 미국 특허 출원은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UEBT의 마리아 줄리아 올리바(Maria Julia Oliva) 선임직원은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수년간 지식재산제도가 ABS 원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여전히 진행 중인 논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역관련 WTO 협정인 'TRIPS'에 특허 출원 시 ABS 의무준수 증거로서 유전자원 출처 표시 요건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 인도, 중국 뿐 아니라 선진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특허 출원에서 ABS 의무준수를 위해 자원의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자료

<http://www.ip-watch.org/2016/09/01/access-and-benefit-sharing-mentioned-in-us-patent-for-natural-dye-might-be-a-first/>

이미지 출처:

[https://ast.wikipedia.org/wiki/Genipa\\_americana](https://ast.wikipedia.org/wiki/Genipa_americana)

## 미국 Maxey 화장품, 케이맨 제도와 산호 수확 이익공유계약 체결



미국의 화장품 회사인 Maxey사가 작년 말 케이맨 제도 정부(Cayman Islands)와 5년간의 산호수확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Maxey사는 자사의 속눈썹영양제인 'Maxeylash island girl' 제품에 사용될 카리브해 black sea rod 산호 기름을 공급받게 된다.

이번 계약에는 Maxey사가 케이맨 제도의 black sea rod 산호 기름을 합법적으로 획득했음을 표시하는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라벨에는 '케이맨 제도 정부와 협력하여 채집한 성분 함유'(Ingredient Harvested in Cooperation with Cayman Island Government)가 명시되어 있다.

케이맨 제도는 보도 성명에서 "미국의 Maxey사는 케이맨 환경부의 엄격한 조건과 감독 아래, 해양물질을 채집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양생물의 지속가능 이용을 강조하고자 해당 화장품 제품에 인증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Black sea rod 산호는 생리활성 지방질인 프로스타글란딘 A를 함유하고 있다. 1피트 높이까지 자랄 수 있으며 심해 200피트 안팎의 카리브해 전역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케이맨 제도는 산호 수확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맨 환경부는 산호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약 사항을 명시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조건에는 해양보호구역 바깥의 지정 구역에서만 산호를 수확할 것, 산호 개체의 일정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호 끝을 채집하고 채집량을 명시할 것, 케이맨 환경부가 채집을 감시하며, 젖은 산호를 기준으로 킬로그램 CI\$25,000 (약 30,000 USD달러)의 로열티 지급할 것, 기름 추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해당 로열티는 '케이맨 환경 보호 기금'에 적립, 향후 케이맨제도의 해양 보호에 사용될 것'이 있다.

또한 본 계약서에는 Maxey사와 케이맨 환경부가 산호 수확 후 8~12주에 해당 채집지로 돌아와 산호 군집들의 상태와 재생산 정도를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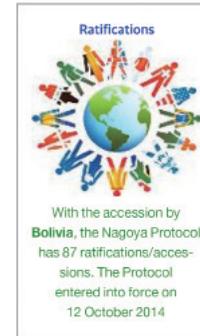
Maxey사는 과거에도 케이맨 제도에서 유사한 종류의 산호를 채집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케이맨 정부는 Maxey사와의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케이맨 정부는 "케이맨 해역에서 30년 넘게 우리 정부와 협력하여 산호를 채집한 Maxey사는 케이맨 산호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산호를 채집해왔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www.cosmeticsdesign.com/Business-Financial/Maxey-Cosmetics-signs-coral-harvesting-agreement-with-Cayman-Islands>

이미지 출처:  
<http://www.panoramio.com/photo/89993126>  
<http://shop.maxeycosmetics.com/products/maxeylash-maintenance>

## 볼리비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비준국 수 87개국 달성



10월 6일자로 볼리비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가 87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2016년에만 17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특히 유럽의 비준 참여가 활발한 실정이다.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올해 나고야의정서 발효 2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스와질란드(Swaziland)와 볼리비아(bolivia)의 비준으로 전세계 87개국의 비준이 성사되었다"며 환영했다.

이번에 비준한 볼리비아는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로 관련 전통지식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체적으로 약리학 연구를 중점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락기관으로는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와 환경수자원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Agua)를 지정하였다.

올해 발효 2주년을 맞이한 나고야의정서는 UN 총회와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국제회의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에 관련 목표 2개가 포함되는 등 점점 국제적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디아즈 사무총장은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가 전면 실시(fully operated)되어 정부 및 기관들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을 위한 관련 정보들을 더욱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press/2016/pr-2016-10-14-abs-en.pdf>

## 나고야의정서 102번째 당사국, 에콰도르



9월 20일 에콰도르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102개국이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에콰도르는 ABS 관련법으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안데스 공동 체제 규정(2011)」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해당 법에는 적용 대상 및 범위, 접근, 이익공유, 의무준수, 타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므로 에콰도르는 12월 19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에콰도르 ABS 법(스페인어) 보기: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D4E558F7-BF48-9A85-2FBE-0AB675108BDA/attachments/REGLAMENTO%20NACIONAL%20DE%20ACCESO%20A%20RECURSOS%20GENETICOS.pdf>

## 에콰도르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국가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 지목



‘에콰도르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해적행위 주요국 대다수가 선진국’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2016년 6월 29일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는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SENESCYT)와 에콰도르 지식재산청(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이 공동 조사, 발표한 것으로 에콰도르 고유종을 이용해 제품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5개국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해적행위로 지목당한 이들 국가들은 에콰도르 유전자원 관련 특허 신청 128건 중 113개의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르네 라미레스(René Ramírez)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당 5개국은 출원된 특허에 이용된 유전자원에 대해서 에콰도르 당국의 접근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에콰도르 정부의 허가 없이 에콰도르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에르난 누녜즈(Hernán Núñez) 에콰도르 지식재산청장은 ‘에콰도르 정부는 이러한 위법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생물해적행위에 이용된 생물종으로는 갈라파고스 토마틸로(Galápagos tomatillo(*Solanum cheesmaniae*)), 에콰도르 호박(squash)(*Cucurbita ecuadorensis*), 병충해 예방 기능으로 알려진 목화 Darwin's cotton(*Gossypium darwinii*)이 차지했다. 또한 피부병, 관절염, 비만 치료로 사용되는 갈라파고스 해조류 Galápagos seaweed(*Ochrophyta*)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루이스 콜로마(Luis Coloma) 잠바투 양서류연구센터(Jambatu Amphibian Research Centre) 과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해적행위 척결에는 에콰도르뿐 아니라 기타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와 입법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콜로마 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익공유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호주, 프랑스, 일본은 CBD에 서명은 하였으나 나고야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란, 이스라엘, 미국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며, 더욱이 미국은 CBD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콜로마 과장은 에콰도르는 생물다양성의 10%에 대해서만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콰도르 정부가 나서서 대학, 연구 센터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자국 내 생물다양성 인벤토리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http://www.scidev.net/global/biodiversity/news/ecuador-names-biopirates.html>

## 트리니다드토바고: 나고야의정서 비준 결정을 위해 카리브해 지역 프로젝트 참여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획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나고야의정서의 진전을 위한 카리브해 지역 국가 프로젝트(Advancing the Nagoya Protocol in Countries of the Caribbean Region)에 참여하기로 발표했다. 본 프로젝트의 참여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획개발부는 CBD 국가연락기관으로 ‘자국의 생물 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코코아, 후추 등 자생식물의 유전자원으로 의약품, 염료, 초콜릿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나고야의정서가 새로운 제품 개발에 사용된 유전자원이 원산국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news.gov.tt/content/trinidad-and-tobago-explore-benefits-advancing-nagoya-protocol#.WK4pldJ96M8>

## 페루 반생물해적행위위원회, 자국 생물종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특허 사례 추적해



‘페루 국가경쟁지식재산보호청’(INDECOP)이 의장을 맡고 있는 ‘페루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The Peruvian Anti-Biopiracy Commission)가 자국 고유종인 ‘사차인치 율라밤바나’(*Plukenetia huayllabambana*)의 불법적 접근 및 특허 사례를 적발했다.

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는 중국 ‘국가임업국 유칼립투스 연구개발센터’가 2015년 7월 16일 중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사차인치 율라밤바나의 접목 및 재배 방법’(출원번호 CN:201510415811:A)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는 동 특허가 페루 국가책임기관과 접근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페루 고유종인 사차인치 율라밤바나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위원회는 특허 보유자에게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사차인치 율라밤바나는 아마존 지역 로드리게스 데 멘도사(Rodríguez de Mendoza)지방의 고유 식물종으로 천연오메가3를 다량 함유한 수퍼푸드로 알려져있다. 정보에 의하면 고대 잉카인들이 등푸른 생선을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차인치에 함유된 높은 오메가3(48%)와 오메가6(33%), 비타민E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점에서 알레르기나 부작용으로부터 안정적이며, 지구상의 식물 중 가장 많은 오메가3와 오메가6를 함유하고 있는 열매이기도 하다.<sup>1)</sup>

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28000088>

페루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는 이와 같은 페루 유전자원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대표사례 15건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한국, 유럽의 마카(maca root) 관련 특허를 들고 있다. 마카는 페루 후닌(Junin)주와 세로 데파스코(Cerro de Pasco)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골다공증, 불면증 치료, 테스토스테론 촉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위 사례 외에도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야콘(yacón),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사차인치(sachainchi), 카무 카무(camu camu)에 대한 해외 특허건을 추적하여 반대를 제기하였으며 해당국 특허청이 이에 따른 특허 철회 및 거부를 유도한 바 있다.

우선 감시 대상 고유종(35종)			
지역고유명	학명	지역고유명	학명
Maca	<i>Lepidium peruvianum</i>	Tarwi	<i>Lupinus mutabilis</i>
Camu camu	<i>Myrciaria dubia</i>	Cañihua	<i>Chenopodium pallidicaule</i>
Uña de gato	<i>Uncaria tomentosa</i>	Cascarilla	<i>Cinchona micrantha</i>
Maíz Morado	<i>Zea mays</i>	Ratania	<i>Krameria officinalis</i>
Tara	<i>Caesalpinia tara</i>	Guanarpo	<i>Jatropha weberbaueri</i>
Yacón	<i>Smallanthus sonchifolius</i>	Manayupa	<i>Desmodium spp</i>
Sacha Inchi	<i>Plukenetia volubilis</i>	Pasuchaca	<i>Geranium dielsianum</i>
Hercampuri	<i>Gentianella alborosea</i>	Achiote	<i>Bixa orellana</i>
Caigua	<i>Cyclanthera pedata</i>	Capirona	<i>Calycophyllum abovatum</i>
Chancapiedra	<i>Phyllanthus niruri</i>	Abuta	<i>Abuta grandifolia</i>
Sangre de Grado	<i>Croton lechleri</i>	Chuchuhuasi	<i>Maytenus macrocarpa</i>
Algodón de Color	<i>Gossypium barbadense</i>	Muñia	<i>Minthostachys mollis</i>
Lúcuma	<i>Pouteria lucuma</i>	Barbasco	<i>Lochocarpus nicou</i>

우선 감시 대상 고유종(35종)			
지역고유명	학명	지역고유명	학명
Chirimoya	<i>Annona cherimola</i>	Paico	<i>Chenopodium ambrosioides</i>
Oca	<i>Oxalis tuberosa</i>	Guanábana	<i>Annona muricata</i>
Olluco	<i>Ullucus tuberosus</i>	Huarizo	<i>Lama glama x Lama pacos</i>
Mashua	<i>Tripaeolum tuberosum</i>	Paiche	<i>Arapaima gigas</i>
Palo de Rosa	<i>Aniba rosaedora</i>		

\* 출처: 페루 반생물해적행위위원회 (<http://www.biopirateria.gob.pe/>)

페루는 2014년 7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법률 제28216호 페루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 및 토착민 집단지식 보호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of Access to Peruvia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Law No. 28216)」에 따라 페루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페루의 유전자원과 토착민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페루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출원되는 특허를 추적 및 확인해오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moellerip.com/ongoing-protection-of-biocultural-heritage/>

이미지 출처:  
Plukenetia huayllabambana sp. nov. (Euphorbiaceae) from the upper Amazon of Peru (PDF Download Available).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108341\\_Plukenetia\\_huayllabambana\\_sp\\_nov\\_Euphorbiaceae\\_from\\_the\\_upper\\_Amazon\\_of\\_Peru](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108341_Plukenetia_huayllabambana_sp_nov_Euphorbiaceae_from_the_upper_Amazon_of_Peru) [accessed Aug 4, 2016]

## 페루의 생물해적행위 투쟁의 성과 및 문제점



1981년 미국인 로렌 밀러(Loren Miller)는 에콰도르의 전통부족으로부터 ‘아야화스카(ayahwasca)’의 샘플을 받아 식물신품종으로 특허를 취득하여 아야화스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생물해적행위(biopiracy)’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사례 이후 다국적 거대기업과 같은 외부자(outsiders)들은 식품과 제약분야 전반에 걸쳐 아마존 토착지역민의 협이나 보상 없이 그들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아야화스카의 본고장인 페루는 생물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일찌감치 나섰다. 페루는 ‘국립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the National Anti-Biopiracy Commission)’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페루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출원되는 특허를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페루지식특허기관(INDECOPÍ)\*의 안드레 발라돌리드(Andrés Valladolid)는 지난달 APEC 회의에 참석하여 “페루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토착지역민들이 수세기간 창작, 개발, 보존한 그들의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 Peru's Institute of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따라서 외부자(outside entity)가 페루 법령 아래 속한 토착전통지식이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이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1,690개의 특허가 페루에 원산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페루의 상징 식품인 ‘퀴노아(quinoa)’, ‘자색 옥수수(purple maize)’, ‘루쿠마(lúcuma)’, ‘캣츠클로(cat's claw)’,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카(maca)’가 있다.

마카는 페루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튼튼모양의 뿌리식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로 중국 수출업자들이 대규모로 마카를 사들인 뒤 페루가 아닌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특허가 출원된 GMO 마카가 점차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립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는 영양 보조제, 불면증 치료제, 남성호르몬 치료 목적으로 등록된 마카 관련 6건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는 폴란드에서 출원된 마카 관련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립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는 야콘(yacón: 당뇨 치료용으로 사용된 안데스 식물종)과 사차인치(sacha inchi: 체중감소 및 피부 개선효과가 있는 페루산 슈퍼푸드)에 대한 일본, 프랑스, 미국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참고 자료 <http://latincorrespondent.com/2016/03/the-successes-and-drawbacks-of-perus-fight-against-biopiracy/>

## 기타 아메리카동향

### 에콰도르 102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1.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에콰도르가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
2. 현재까지 비준국 수는 총102개국
3. 에콰도르는 비준 후 90일 뒤인 12월 19일부터 정식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

### 미국 국무부,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정보 공청회 개최

1. 7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CBD 아래 논의 중인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2. 공청회에서는 CBD,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정보 이용 관련 현재 진행 상황 및 개요 등을 다루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코멘트와 질문을 받음
3. 이번에 받은 코멘트와 관련 회의 등에서 나온 견해들은 CBD 사무국에 제출할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관련 미국의 국가 의견서에 반영할 예정임

### 스미소니언, 출처확인 가능한 유전정보 DB 사이트 구축

1.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6개 박물관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유전 샘플의 출처 및 수집된 시간 등의 정보가 함께 연동되는 유전정보 메타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Genomic Observation Metadatabase(GeOMe)’을 구축함
2. GeOMe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될 예정이며 스미소니언 측은 “그동안 유전정보는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해당 유전 샘플들의 출처 정보는 검색이 쉽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며 해당 웹사이트 개발의 취지를 밝힘
3. 연구자들과 컴퓨터 공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GeOMe는 유전샘플의 획득시간, 환경, 공간, 학술 정보를 NCBI의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와 링크시켜 연구계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임

### 세인트키츠네비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카리브해 지역 워크숍 개최

1. 카리브해 ABS 지역 워크숍이 이틀간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개최됨
2. 세인트키츠네비스 환경부 차관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인트키츠 정부는 의정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힘
3.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지역 워크숍 이후, 곧바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공청회를 이틀간 개최할 예정임(6.21~22)

### 카리브해, 지역의 인식제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홍보동영상 제작

1. 6월 20일, IUCN과 UENP는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해 두가지 버전의 나고야의정서 홍보 동영상상을 제작함 (2분 30초/ 10분)
2. 두 가지 버전의 동영상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나고야의정서가 카리브해 지역에 전체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음
3. 타지역에 비해 ABS 인식이 저조한 카리브해 국가들을 돕기 위해 IUCN 지역사무소는 UNEP와 함께 GEF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홍보동영상 프로젝트는 8개 카리브해 국가(앤티가바바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CBD 사무국, 카리브해 지역 기구(CARICOM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하였음

### 멕시코 그린피스 및 환경단체, 멕시코 생물다양성 입법 반대 성명서 제출

1. 멕시코 그린피스(Greenpeace) 및 일부 환경 시민단체들은 '멕시코 생물다양성법 (Biodiversity Law)' 입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함
2. 그린피스는 성명서에서 "상원 의회 환경천연자원위원회가 이번 입법(안)을 승인한 것은 멕시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특허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토착 전통지식 및 생물자원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준 생물해적행위 법"이라 주장
3. 또한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토착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멕시코 헌법 및 국제 조약 등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함

### 과라니족(Guarani), “코카콜라, 스테비아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중단하라”

1. 다국적기업 코카콜라가 과라니 족의 스테비아(Stevia) 관련 전통지식을 무단 이용하여 부족의 이익을 가로채고, 부족민의 주요 수입원을 위협한 것에 대해 탄원서를 받을 전망임
2. 이 탄원서는 비영리 소비자 단체 '섬오브어스(SumofUs)를 비롯한 기업 감시단체인 '프랑스 리베르떼'(France Libertes)와 '퍼블릭 아이'(Public Eye)등이 마련한 것으로 총 216,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함
3. 과라니족은 수세기동안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잎을 천연 감미료로 사용해왔음. 현재 코카콜라를 비롯한 여러 다국적 음료 기업들이 스테비아 잎에서 유래한 합성 감미료(Steviol glycosides)를 첨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트리니다드토바고: 의정서 비준 위해 카리브 지역 나고야의정서 프로젝트 참여

1. 카밀 로빈슨 레지스(Camille Robison-Regis) 기획개발부 장관은 21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가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진전에 대한 프로젝트(Advancing the Nagoya Protocol in Countries of the Caribbean Region)에 참가할 것임을 발표
2.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자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것임을 밝힘
3. 기획개발부는 현재 CBD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NFP)으로 지정됨

### 미국컬처컬렉션네트워크: 미국 생물 컬렉션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포럼 개최

1. 미국컬처컬렉션네트워크(United States Culture Collection Network)는 2월 9~10일 미국의 컬렉션 기관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2. 미 국무부, CBD 사무국, 스미소니언, 듀크대학교 등 중요 연사들이 참여하여 미국 생물컬렉션과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함

#### • 프로그램 일정표

#### Thursday 2/9/17

시간	주제	연사	소속
1:30 - 3:00	Welcome and introduction	Kevin McCluskey	FGSC, USCCN
	Nagoya Protocol and living collections in the USA	Stephanie Aktipis	US Dept of State
	The Secretariat of the CBD.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 mechanism	Matthew Dias,	
	Global Genome Biodiversity Network	John Codd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3:00 - 3:30	Break		
3:30 - 5:00	the TRUST initiative	Philippe Desmeth	WFCC President, Belgian Science Policy Office
	the Brazil legislation	Manuela da Silva	Vice-President of Research and Reference Laboratories
	Scientific Collections and digital information under Nagoya	David Schindel	
	Impact of Nagoya on a growing biotechnology area	David Nobles	UTEX
6:30 - 9:00 (Dinner session)	History of USCCN	Kevin McCluskey	FGSC
	“Why the Nagoya Protocol to the CBD Matters to Science and Industry in the US”	Jerry Reichman	Duke University

#### Friday 2/10/17

시간	주제	연사	소속
9:30 - 12:00	A collection of cave microbes available through ATCC	Hazel Barton	University of Akron,
	MIRRI ABS best practice manual	David Smith,	CABI/ MIRRI –
	All Work groups on Nagoya documentation (MAA, Certificate of origin, MTA)		
12:00 - 1:30	Lunch		
1:30 - 3:30	Practical aspects of Nagoya for living biodiversity collections	Kyria Boundy-Mills	UC Davis,
	All Report of working groups on shared approaches to responding to information requirements		
	Summary and adjournment	Kevin McCluskey,	

## 안티구아 바부다 국회,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통과

1. 카리브해에 위치한 안티구아 바부다는 2011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였으며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2. 카리브해 영역에서는 반복적으로 연구를 가장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비준으로 안티구아 바부다의 국가자원의 관리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관리행정자원이 부족한 상황임

## 볼리비아, 나고야의정서 2016년 10월 6일 비준

1. 볼리비아가 2016년 10월 6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으며 2017년 1월 4일 당사국이 될 예정임
2. 2016년 10월 13일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87개국에 비준하였으며 78개의 당사국이 있음

## 미국, ITPGRFA 비준안 국회 통과

1. 식량및농업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은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개념과 일치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한 식량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것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체결되어 2004년 6월에 발효하였으며 현재 140개국에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음(한국은 2009년 1월 가입)
2. 조지부시에 의해 서명되고 15년간 그 비준이 미뤄졌던 식량및농업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이 2016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함
3. ITPGRFA의 비준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점플라즘(germplasm)의 원활한 공유가 불투명해지면서 미국 종자교역협회(American Seed Trade Assn, ASTA)를 비롯한 미국 내 80개의 회사 및 조직들에 의해 지지를 받은 바 있음

## 미국 특허청에 ABS 절차 언급한 특허 최초 등록

1. 최근 미국 특허청은 콜롬비아 회사가 유전자원 출처를 표시하고 토착공동체와의 ABS 합의를 명시한 천연 색소 특허를 승인함(미국, 콜롬비아 둘 다 나고야 당사국이 아님)
2. 콜롬비아 회사 Ecoflora Cares는 음식 및 personal care 제품에 사용하는 천연색소를 개발하는 회사로 콜롬비아에서 자라는 Genipa Americana 나무로부터 식용가능한 청색 색소를 추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였음
3. Ecoflora는 UEBT(Union for Ethical Biotrade, 윤리적 생물무역 연합)의 회원으로 2013년 비상업적 목적의 허가 취득을 시작으로 토착공동체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ABS 절차를 이행한 바 있음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나고야의정서 적용 잠정 중단

1.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및 전통단체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2016년 6월 17일 나고야의정서 승인 법(Legislative Decree 6-2014, approval of The Nagoya Protocol)의 잠정 중단을 명함
2.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국회에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착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위험적 요소가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원의 활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통해 유전자 조작 작물 관련 실험 및 특허를 허용함으로써 토착종 및 전통지식의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음
3. 과테말라는 2014년 6월 1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음

## 에콰도르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국가로 미국, 독일, 네델란드, 호주, 한국 지목

1. 2016년 6월 29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에콰도르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로 미국, 독일, 네델란드, 호주 및 한국을 지목
2.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접근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없이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특허를 무효화 할 것을 신청할 것이라고 언급

## 멕시코, COP13 홈페이지 오픈

1. COP-High level segment/COP13/COP-MOP8/COP-CMP2
2. Biodiversity-CBD/Megadiverse countries/Mexican biodiversity/Mainstreaming Biodiversity
3. Participants-Hotel Reservations/Visa
4. MEDIA-Resources <http://cop13.mx/en/>

## 과테말라, ABSCH에 3번째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등록

1. 과테말라의 국가책임기관인 국가보호구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Protected Area, CONAP)는 데루바테 대학에 대해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 등록
2. 본 건은 마호가니 및 삼나무 생물자원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 마야 생물보호지구에서 채집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여 삼림관리 효과를 평가하게 되며 이익공유계약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 현지외에서 이루어지는 DNA 추출, 증폭, 배열해석 등에 대한 모니터링권한, 과학적데이터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CARICOM 토착공동체 책임기관, IPRCA

1. 카리브해 10개국으로 구성된 카리브공동시장(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의 토착공동체들은 약 1년전 승인을 위해 제출된 카리콤 지역 유전자원보호프레임워크 발효를 기대하며 카리콤 유전자원보호프레임 제7조에 따라 토착민 지역 책임기관을 설립
2. 토착민지역책임기관(Indigenous Peoples Regional Competent Authority, IPRCA)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등의 보호, 인식제고 및 교육 컨설팅, 유전자원 이용 모니터링, PIC, MAT 등 이익공유, 라이선스, 관련 허가 및 승인,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의 범주 설정 및 이익의 취득관리 등을 담당하게 됨

## 미국 공협회(ASA), 상원에 ITPGRFA 가입촉구

1. 미국 공협회 회장은 상원의 외교위원회에 식량및농업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의 가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2. 서한에 따르면 미국 공협회는 혁신과 연구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콩시장 및 육종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ITPGRFA의 비준은 육종가 및 연구자들에게 생식질(germplasm)에 접근 및 연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힘
3. 현재 콩(soybean)은 ITPGRFA가 아니라 CBD 나고야의정서에 관할에 있는 유전자원이며 많은 국가들이 생식질의 교환에 있어 이익공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PGRFA의 비준을 늦추는 경우 미국이 콩(soybean)의 위상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임

## 미국 Maxey 화장품, 케이만군도와 산호수확 및 이익공유 계약 체결

1. Maxey 화장품의 속눈썹 영양제는 카리브해의 black Sea Rod(산호) 기름을 함유하고 있으며 케이만군도 정부와 Maxey 화장품은 작년 말 5년간의 산호수확 계약을 체결했음
2. 일반적으로 산호의 채취는 금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케이만군도 정부는 계약내용으로 산호보호를 위해 수확 위치, 채취량, 채취지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고, 화장품의 라벨에는 원료인 산호가 케이만 군도와의 협력에 의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채취되고 이는 환경부에 의해 모니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함
3. 본 계약에 따라 젖은 상태의 산호 1키로당 C\$25,000원의(약 30,000 USD) 로열티가 지급되며 추출된 오일에 대한 로열티의 경우 케이만 환경보호기금에 들어가게 됨
4. 이러한 계약은 케이만 군도의 해양보전법 및 CBD 협약 하의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것임

## OCEANIA



##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 연구 지원금 관련 준거법으로 나고야의정서 제시



호주 정부 산하의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NHMRC)가 연구비 지원에 있어 준수해야 할 준거법 목록에 나고야의정서를 언급했다. 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생명기술 연구자 및 기타 과학자들이 호주 밖에서 자생하는 유전자원에 접근하

기 위해 따라야 할 국제법”이라고 설명하며 “나고야의정서는 연구자 및 개발자에게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2012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한 뒤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호주 환경부는 현재 연구자, 토착민, 산업계,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상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면서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점검기관 설정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nhmrc.gov.au/grants-funding/apply-funding/applicable-laws-and-obligations>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pages/9fc06ac0-f5af-4b47-a80f-d9378088d743/files/nagoya-factsheet.pdf>

이미지 출처:  
[www.indusage.com.au](http://www.indusage.com.au)

## 기타 오세아니아동향

### 사모아, 3개년 ABS 프로젝트 실시

1. 사모아 정부는 지구환경기금(GEF)로부터 미화 35만 달러(3억8천만원 상당)를 지원받아 자국 내 ABS 역량강화를 위한 ABS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임
2. 이번 프로젝트는 3년동안 진행되며 사모아 천연자원환경부에서 주가 되어 UNDP 지부 및 글로벌 ABS 프로젝트 팀과 협업할 예정.
3. 사모아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내 ABS 이행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법체계 기반 마련 및 행정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회, 연구지원금 관련 규정으로 나고야의정서 제시

1. 호주 정부 산하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는 연구비 지원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정 목록에 나고야의정서를 언급하고, 나고야의정서가 호주 외에서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체계로 소개
2. 호주는 2012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연구자, 토착민, 산업계,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상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면서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점검기관을 설정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하고 있음(환경부 홈페이지)

# MIDDLE EAST



## 카타르, 앙골라 나고야의정서 비준...현재까지 비준국 수 96개국



카타르(1.25), 앙골라(2.6)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2개국의 비준으로 현재 비준국 수는 96개국이다. 올해 들어 벌써 3개국(상투메프린시페, 카타르, 앙골라)이 비준하는 등 비준국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올해 초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3호, 제정 2017.1.17)」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2017.2.9 현재) |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합계
비준국 수	18	39	12	5	22	96
당사국 수	17	36	10	5	21	89

비준 동향 참고 사이트: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 나고야의정서 100번째 당사국, 쿠웨이트



6월 1일 쿠웨이트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100개국을 달성하게 되었다.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 총장은 이번 비준에 대해 "100번째 비준국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오늘은 나고야의정서에 있어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쿠웨이트는 환경청(Environment Public Authority)을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07-06-abs-bs-kw-en.pdf>

## 기타 중동동향

### 쿠웨이트 나고야의정서 비준... 비준국 수 100개국 달성

1. 2017년 6월 5일 쿠웨이트 정부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
2. 크리스티아나 파머 총장은 "100번째 비준국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소감을 밝힘
3. 쿠웨이트는 환경청(Environment Public Authority)을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함

### 쿠웨이트 내각, 나고야의정서 비준법 승인

1. 쿠웨이트 내각은 나고야의정서 비준법을 승인하였으며 이 법안은 의회에 보내져 계류 중임(현재 쿠웨이트는 나고야의정서 서명국이 아님)
2.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8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76개의 당사국이 있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CBD 사무국,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ABS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서 공개

CBD 사무국이 유전자염기서열정보에 대한 국가 및 유관기관들의 의견서 전문을 CBD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국은 지난 4월 25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문제에 대한 국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접수 결과, 당사국 13개국(브라질, EU, 인도 등), 비당사국 1개국(미국), 민간단체 37곳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가명 및 기관명을 클릭하면 제출한 의견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무국은 접수한 의견서를 취합하여 내년 2월에 열리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전문가회의('18.2.13~16,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회의는 지역과 성별을 안배하여 당사국\*(14), 비당사국(1), 국제기구·기관(10) 관계자 25명으로 구성되었다.

\* 아프리카(콩고, 나미비아, 우간다), 아시아태평양(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중앙동유럽(벨라루스, 불가리아),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서유럽(캐나다, EU, 스웨덴)

**참고 자료** <https://www.cbd.int/abs/dsi-gr/ahteg.shtml#submissions>



**나고야의정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안내**  
 (근거조항) 나고야의정서 제29조, 결정문 NP-1/3  
 (주요내용) 당사국들에게 의정서 이행 관련 잠정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  
 (제출방법) 온라인 양식(<https://www.cbd.int/abs/NR.shtml>)을 이

용하여 UN 6개 언어 중 하나로 작성  
 (마감시한) 2017년 11월 1일까지  
 공지문: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102-abs-en.pdf>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조항) 나고야의정서 제31조, 결정문 NP-2/4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발효 4년 이후 의정서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 협조 요청  
 (평가자료) 1) 민간 기업, 연구 및 학술기관, 현지의 컬렉션의 ABS 관련 모델계약, 모범관행, 행동규약,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이용 관련 정보  
 2) ABSCH 운영 및 시행 관련 설문지(<https://goo.gl/forms/n8a0hECy91lrL4IJ2>)작성을 통한 피드백 제공

(마감시한) 2017년 11월 15일까지  
 공지문: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104-abs-en.pdf>

**제6차 CBD 국가보고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안내**

(근거조항) 결정문 XIII/27  
 (주요내용)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21) 개최 전(12.11~16)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장소·일시) 2017년 12월 9일(토) 10시~17시, 캐나다 몬트리올 팔레 데 콩그레(Palais des Congrès)  
 (등록방법) SBSTTA 21 및 WG8j 10 대표단 참가 등록을 승인하는 국가연락기관 서명이 담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마감시한) 2017년 11월 3일까지  
 공지문: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101-nr-en.pdf>

**나고야의정서 제10조 세계다자간 이익 공유체계(GMBSM) 관련 국가 의견 제출**

(근거조항) 결정문 NP-2/10  
 (주요내용) 당사국 및 비당사국, IPLC 등에게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제출정보) 현지내, 현지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PIC 승인·획득이 불가능한 상황 관련 실제적 경험 등  
 (마감시한) 2017년 12월 15일까지  
 공지문: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094-abs-en.pdf>



CBD 사무국은 올해 10월부터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바이오브리징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 Regional Bio-Bridge Initiative (BBI) Round Table

바이오브리징 이니셔티브(BBI)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대한민국 환경부가 COP12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이니셔티브다.

BBI의 목적은 과학기술이 필요한 당사국과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당사국 및 기관들을 연계하여 국제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CBD는 지역별로 BBI를 홍보하고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제1차 BBI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며(10.16~18) 회의 장소는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이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 BBI 라운드테이블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우간다 엔테베에서 개최되며, 중앙 및 동유럽 지역 BBI 라운드테이블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다.

**참고 자료** 아태지역 BBI 회의 문서:  
<https://www.cbd.int/doc/?meeting=TSCWS-2017-01>  
 아프리카, 동유럽 BBI 라운드테이블 공지문:  
<https://www.cbd.int/notifications/>

## [CBD] 올해 11월 '제3차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개최



각국의 ABS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위한 CBD 사무국의 온라인 플랫폼 ABSCH(<https://absch.cbd.int>)의 운영 및 기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1월 제3차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는 결정문(NP-1/2)\*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들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당사국 출신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NP-1/2) 사무총장의 ABSCH 시행을 돕고 ABSCH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실질적 문제 해결 등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비공식자문위원회' 설립을 결정한다.

올해 11월 개최될 제3차 비공식자문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선발된 위원은 지역별로 ▲아시아(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 상투메프린시페), ▲중앙 및 동유럽(알바니아, 벨라루스, 헝가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아르헨티나, 쿠바, 멕시코), ▲서유럽 및 기타그룹(유럽위원회(EC), 영국, 스위스)로 구성되었다.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는 제1차 회의(2015.10)에서 ABSCH 운영·관리 진전 사항, 타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과의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였고, 제2차 회의(2016.05)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IRCC) 등록 관련 기술적 쟁점, ABSCH에 제출할 공통양식 등을 논의하였다.

제3차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의 세부 일정 및 논의 사항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060-abs-en.pdf>

'CBD 공지문' 이미지 출처:  
CBD 홈페이지(<https://www.cbd.int>)

## [CBD]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21), 제10차 협약 및 제8조 차항 작업반회의 개최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3)와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의 결정 사항에 따라, 사무국은 올해 말부터 내년 11월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과학기술자

문회 등 다수의 부속기구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1)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에 적용 가능 여부, 2)나고야의정서 제10조 상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의 필요성 및 양식 등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 GMBSM: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부속기구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 11월 초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4)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가 개최된다.

### | CBD 회의 일정 |

회의명	일정	장소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 21)	'17.12.11~14	캐나다 몬트리올
제10차 협약 및 제8조 차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임시공개작업반회의(WG8J)	'17.12.13~16	캐나다 몬트리올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정보 기술 전문가회의(AHTEG)	'18.2.13~15(잠정)	캐나다 몬트리올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 22)	'18.7.2~7	캐나다 몬트리올
제2차 이행검토보조기구 회의(SBI 2)	'18.7.9~13	캐나다 몬트리올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4)	'18.11.3~15(잠정)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 \* 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 \* WG8J: 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 AHTEG: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 \* SBI: The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참고 자료** <https://www.cbd.int/meetings/>

이미지 출처:  
<https://www.cbd.int/2011-2020/>

## [CBD 공지문]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관련 연구사업 참가의향서(EOI) 제출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3) 결정문 XIII/16에 따라 CBD 사무총장은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관련 연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이용과 관련된 용어 및 개념 정립, 염기서열 정보 이용의 조건 및 범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CBD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들의 '사업참가의향서(Expressions of Interest, EOI)'를 받고 있다.

### 연구 사업 일정표(안)

일시	활동
2017년 5~6월 중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017년 6월 26일	연구 사업 계획서 마련
2017년 9월 1일	연구보고서(초안) 사무국 제출
2017년 10월 1일	연구보고서(수정안) 사무국 제출
2017년 10월 15일~11월 15일	연구 보고서 심의
2017년 12월 1일	최종 보고서 사무국 제출
2018년 2월 13~15일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전문가그룹(AHTEG)* 회의 개최

\* Meeting of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 결과물

연구의 결과물로서 연구 요약서(2~5쪽) 및 결정문 XIII/16 제3(b)항에 명시된 연구 내용들을 다룬 연구 보고서(25~30쪽)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 자격

법률, 정책, 생물과학, 정보 및 데이터 관리 분야에 통합적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그러한 지식을 겸비한 단체로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나고야의정서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자(또는 단체)

### 사업참가의향서(EOI) 제출 방법

2017년 5월 19일까지 연구 사업 계획서 및 참여자 이력서를 사무국에(secretariat@cbd.int) 제출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vacancies/2017/proposals/Call-DSI-2017-04-24-en.pdf>

## [CBD]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 CBD 사무총장 취임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Cristina Paşca Palmer)가 3월 20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1968년 루마니아 출신의 파머 총장은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0년 'EU 집행위 기후행동총국'의 국제관계 및 서발칸 국가에 대한 정책분석관으로 활동한 파머 총장은 그 후 'EU 집행위 국제협력개발총국' 기후변화·환경·천연자원과 과장을 책임하면서 기후변화, 산림, 사막화 관련 EU의 전반적인 국제 협력 분야를 총괄했다.

주요 업적으로는 12억 달러 규모의 EU 생물다양성 대표 프로그램인 'Biodiversity for Life Initiative (B4Life)'를 설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험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루마니아 환경·물·산림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제21차,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6년 유엔생물다양성총회 등 다양한 국제 환경회의의 정부 대표로서 활약했다.

파머 총장이 임명된 2017년은 당사국들의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달성 및 '유엔생물다양성 10년'을 4년 앞둔 시기여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파머 총장은 2018년에 25주년을 맞이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4)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이행사항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03-20-ES-en.pdf>

## [CBD 공지문]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및 ABSCH에 정보 게재 요청



CBD 사무국은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및 ABSCH에 관련 정보 게재를 요청하고 있다.

###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NP1/3)에 따르면 “당사국들에게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를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 개최 12개월 전까지 ABSCH를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국 및 비당사국은 잠정국가보고서를 결정문(NP-1/3)에 담긴 보고서 양식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ABSCH를 통해 2017년 11월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ABSCH에 정보 게재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 결정문(NP2/2)에 의하면, 당사국은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게재하고, 비당사국에게도 ABS 관련 정보를 ABSCH에 신속히 게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가 정보를 ABSCH에 게재하려면 우선 ‘공개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며, 공개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은 국가는 가급적 빨리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개담당관은 ABS 국가연락기관에 의해 지명된다.

ABSCH에 제출된 잠정국가보고서와 각 국의 정보는 의무준수위원회와 제2차 이행검토보조기구회의,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017-absch-en.pdf>

## [CBD]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서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 논의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ABS)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지 2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비준국 수는 93개국에 이르렀으며, 작년 말에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 핵심 의제를 꼽자면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를 들 수 있다.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

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양자간 이익공유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즉 1) 동일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여러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월경성 상황), 2)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알 수 없어 사전통고승인(PIC)\*\*의 발급 및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GMBSM: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 PIC: Prior Informed Consent

###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주요 쟁점 사항

제공국들은 “GMBSM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GMBSM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양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국들은 “GMBSM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용국들은 “나고야의정서는 양자간 방식이 추가되며, 다자간 이익공유방식의 경우 극히 국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을 GMBSM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도국들의 경우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GMBSM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이용국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은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가 아니며, 따라서 이익공유를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결론 및 시사점

개도국들은 해외로부터 사전통고승인 없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지외 컬렉션의 유전자원에 대하여 “생물해적행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자간 이익공유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대표적인 현지외 보전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도 GMBSM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존 자유롭게 사용되어왔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에 대해 GMBSM을 적용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계 및 연구계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 여부에 대한 논의와 관련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김진한 과장, 이상준 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조창연 연구사

## [CBD]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주간 멕시코서 개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합성생물학,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등 논의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3)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당사국·비당사국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관련 UN 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토착지역공동체 8,000여명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총회는 협약 아래 두 의정서 회의\*를 동시 개최하여 CBD 사무총

장에 의해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UN Biodiversity Conference)로 총칭되었다.

\* 제8차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회의(CP COP-MOP8), 제2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NP COP-MOP2)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고위급회담'(High Level Segment)이 개최되어 각 국의 환경·농업·해양·관광 관련 장관급 인사들에 의한 「칸쿤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 the Cancun Declaration on Mainstream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for Well-Being

### 주요 결정문

COP13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에 대한 진전 평가 및 이행 강화, 합성생물학,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등의 37개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CP COP-MOP8에서는 의무준수 위원회의 보고, 바이오안전성 정보공유체계(Biosafety Clearing-House)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침, 합성생물학에 대한 협력적 접근방법을 포함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등 총 19개의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NP COP-MOP2에서는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 ABSCH) 등 총 14개의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논의

다양한 의제 중에서도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합성생물학'이었다. 합성생물학은 지난 5년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협약 내 두 의정서와의 관련성과 초점을 맞춘 것은 근래에 들어서였다. 특히 합성생물학 관련 '유전자 드라이브'(Gene Drives)와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는 각각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합성생물학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선발육종(Selective Breeding), 유전자 탐색, 분자생물학적 방법, 제한 효소(Restriction Enzyme)의 이용, 유기체 게놈의 외부 DNA 주입에 대한 유전공학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 결과 만들어진 생명체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규제되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COP 13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개념의 합성생물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본격 논의한 '합성생물학 특별전문가회의'(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Synthetic Biology: AHTEG)의 업무를 치하하고 이들이 제시한 합성생물학에 대한 '운영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생물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마련되었다. 또한 COP13은 합성생물학 결과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향후 잠재적 이익 및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연구를 개별 당사국의 법규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합성생물학에 대한 특별전문가회의(AHTEG) 및 온라인 포럼의 권한을 연장하는데도 합의하였다.

### 유전자 드라이브(Gene drives)

합성생물학 기술 중 하나인 '유전자 드라이브'는 이번 COP 13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유전자의 전승(Inheritance) 기능을 촉진시키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개체군 내에서 우세하게 살아남게 하는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다. 유전자 드라이브와 관련된 응용 사례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말라리아 저항성을 지닌 모기의 전승 기능을 촉진하여, 생태계 내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수를 줄이도록 한 예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유전자 드라이브가 전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는 "유전자 드라이브로 만들어진 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히 확인하기 전에는 실험실에서조차 관련된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모라토리엄)"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기술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으며,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유전자 드라이브로 만들어진 생물체 또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의 합성생물학 결정문을 도출하였다.

###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논의는 COP13 이전에 열린 제20차 '과학기술자문부속회의(SBSTTA 20)'에서 출발하였다. SBSTTA에서는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과연 나고야의정서 ABS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COP13에서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UNEP/CBD/SBSTTA/REC/XX/8)을 도출했다.

따라서 COP13에서는 이 권고문을 바탕으로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사전통고승인을 받을 수 없는 디지털 염기서열의 특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러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명시된 다자간이익공유체계를 통해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NP COP-MOP2의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 의제까지 연결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유전자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필요 없게 만드는 생물 기반 R&D의 표준 관행'이므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생물다양성 부국인 개도국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유 실패가 초기 단계의 나고야의정서체제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맞서며 팽팽한 대립각을 이루었다.

치열한 협상 결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와 관련한 내용상 유사한 두 개의 결정문이 COP13과 NP COP-MOP2에서 각각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정문에는 향후 전문가그룹을 통해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와 관련된 용어, 적용범위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타 협약의 의견을 파악하여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타 협약, 국제기구의 논의 진행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ABS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CBD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FRA)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WHO에서는 유행성 바이러스로부터의 유전 염기서열 데이터의 이익공유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상 논의하고 있다. UNCLOS는 ABS 조항들이 해양 유전자원의 염기서열 정보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IISD Reporting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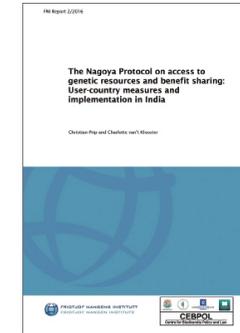
## [CBD]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 공고문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 받습니다. CBD 사무총장은 사무차장보(Assistant-Secretary-General)의 직급이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종이나 종교,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 기회균등 고용주이며, 여성 후보자를 장려합니다.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2016년 9월 30일 (금)까지 UNEP 사무국 이메일 (executiveoffice@unep.org)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채용공고는 (<http://www.unep.org/vacancies/CBDExecutiveSecretary.asp>.)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CBD 홈페이지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6/ntf-2016-108-ES-vacancy-en.pdf>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상반기 나고야의정서 관련 보고서 소개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고서 및 자료의 출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주목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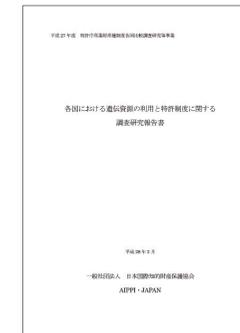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 국가의 조치와 인도에서의 이행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User-country measures and implementation in India

발행: 2016.2 노르웨이 Fridtjof Nansen Institute  
<http://www.fni.no/pdf/FNI-R0216.pdf>

노르웨이 FNI와 인도 CEBPOL(Center for Biodiversity Policy and law)간 공동연구 결과인 본 보고서는 나고야의정서 제 15조에 따른 이용자 조치(국내 이용되는 해외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는 것에 관련된 규정)의 입법 진행 상황 및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인도의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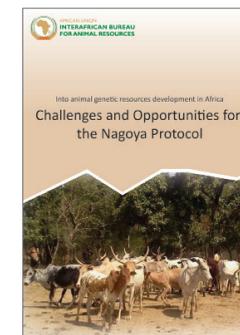


### 각국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조사연구보고서

「各国における遺伝資源の利用と特許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발행: 2016.2 일본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http://www.globalipdb.jpo.go.jp/jpwp/wp-content/uploads/2016/04/1decb88da755aa43d900bff68d9fc457.pdf>

일본 특허청이 일본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를 통해 발간한 본 보고서는 EU,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독일,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페루,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의 유전자원의 이용과 특허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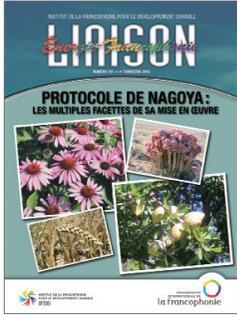


### 아프리카 연합, 동물유전자원과 나고야의정서 보고서 발간

Into animal genetic resources development in Afric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Nagoya Protocol

발행: 2016.4 아프리카연합  
<http://www.au-ibar.org/general-publications>

아프리카 연합이 발간한 본 보고서는 동물유전자원의 이용, 교환 패턴과 트렌드 및 아프리카의 주요 ABS 이슈를 중심으로 법적 수단, 정책 프레임워크, 동물자원의 교환 및 이전과 관련한 법적 환경 분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 IFDD,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다양한 측면들

Protocole de Nagoya : les multiples facettes de sa mise en oeuvre

발행: IFDD, 2016년 봄호

[http://www.ifdd.francophonie.org/media/docs/publications/663\\_LEF\\_101.pdf](http://www.ifdd.francophonie.org/media/docs/publications/663_LEF_101.pdf)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국가 연합) 국제기구 산하 지속가능발전 프랑코포니 연구소(IFDD, Institut de la francophonie pour le developpement durable)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프랑스어 사용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련한 다양한 각도의 고찰 및 다수 불어권 국가들의 ABS 이행 경험을 담고 있다.



### 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Implemen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in eight countries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 Making it work for family farmers

발행: Farming Matters 2016.4 특별호

<http://www.agriculturesnetwork.org/magazines/global/access-and-benefit-sharing-of-genetic-resources>

Farming Matters는 네덜란드 등의 농업관련 기관들이 모인 AgriCultures Network에서 발간하고 있는 잡지로, 2016년 4월 특별호에서는 독일의 Biodiversity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농부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이론과 실제, 브라질 등 각국에서의 식물농업유전자원과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이슈를 다루었다.

## [CBD]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제1차 이행보조기구 회의 결과: 나고야의정서의 진전사항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부속 제1차 이행보조기구(SBI: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회의가 열렸다. SBI는 전략 계획 이행, 당사국총회의 결정 이행 등을 포함한 협약 이행 달성을 위한 내용을 점검하는 기구로 이번 제1차 SBI 회의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 진전 사항, 나고야의정서 관련 아이치타겟(Aichi Target)\*의 이행 진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이치타겟 16: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며, 국내법과 일치하게 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 SBI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게 당사국들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COP13과 COP-MOP2에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SBI는 당사국들에게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국가 법률, 국가 기관 정보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이 COP13에서 채택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SBI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 COP-MOP1)에서 식량 및 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방침을 참조하도록 장려하는 문구를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제1차 SBI 권고문 :

<https://www.cbd.int/doc/?meeting=SBI-01>

## [CBD]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제2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결과: 나고야의정서 관련 내용 중심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부속 제2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회의가 열렸다. SBSTTA는 과학적 측면

에서 CBD의 국제적 이행상황을 검토하는 CBD의 부속기구로 이번 제20차 회의에서는 생태학적 주요해역, 침입외래종, 특히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되어 합성생물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성생물학은 2012년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1)에서 CBD의 신규분야로 채택된 후, 2014년 COP12에서 합성생물학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임시기술전문가그룹(AHTEG: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Synthetic Biology)에서 합성생물학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보고서를 SBSTTA 20에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SBSTTA 20에서는 AHTEG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6년 열리는 COP13에 제안하는 권고문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합성생물학 정의 관련 문구 등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권고문 초안을 마련한 채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권고문 초안에서는 합성생물학을 “유전물질, 생물, 생물 체계의 이해, 설계(design), 재설계(redesign), 제조 그리고/또는 변형을 촉진, 가속화하는 과학·기술·공학을 결합시킨 현대 생물공학의 추가 발전 및 새로운 차원”으로 운영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였으나, 이러한 운영상 정의를 “인정(Acknowledge)”할 것인지, “적절한 것으로 여길 것(Deems it appropriate)”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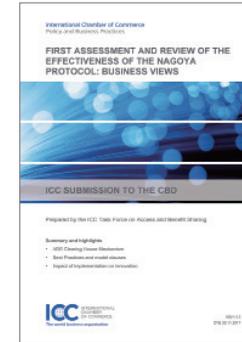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의 이용이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명확히 할 것을 초청한다”라는 문구도 결정을 내지 못했다.

제20차 SBSTTA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합성생물학의 운영상 정의 및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제20차 SBSTTA 권고문 :

<https://www.cbd.int/doc/?meeting=SBSTTA-20>

## 국제상공회의소(ICC), ‘기업 관점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보고서’ 제출



전 세계 130개국 600만 회원을 보유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기업 관점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를 CBD 사무국에 제출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ABS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업 관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 1. CBD 사무국의 ABS 정보공유체계(ABSCH)

유전자원 이용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ABS 법에 합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1) 손쉽게 파악 가능한, 정확하고 분명한 최신 국가별 법률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법률 정보가

실제로 준수함에 있어 2) 실용적인 정보여야 한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CBD 사무국의 ABSCH가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발급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업들은 IRCC가 국제 인증서인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법적 확실성 보장 측면에서 핵심 문서로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IRCC를 ABSCH에 신속히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ABSCH에 최신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업들의 ABS 준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ABSCH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콘텐츠의 한계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당사국들에게 분명하고 완성된 ABS 법률 정보와 국가연락기관의 실제 연락처 정보를 ABSCH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능할 경우 이러한 정보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기업들의 글로벌 의무준수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2. 모범관행 및 모델계약

유전자원 종류 및 이용 방식에 따라 모범관행 및 모델계약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자 의무준수 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금보다 더욱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3. ABS 이행이 과학 발명에 미치는 영향

국제상공회의소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과학 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당사국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 발명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창출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호와 사회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술·제품 개발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 등의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ABS 규정으로 인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천하기 어려운 복잡한 ABS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공회의소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ICC 보고서 전문보기:

<https://cdn.iccwbo.org/content/uploads/sites/3/2017/11/icc-first-assessment-and-review-of-the-effectiveness-of-the-nagoya-protocol-business-views.pdf>



지구환경금융(GEF)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생물자원 부국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마련 및 ABS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사모아는 GEF로부터 미화 35만 달러(3억 8천만원 상당)을 지원 받아 자국 내 ABS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3년간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아 천연자원 환경부와 UNDP 지부가 함께 협업한다.

보츠와나는 환경천연자원보전관광부와 UNDP 지부가 손을 잡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3개년 AB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보츠

와나 정부는 프로젝트 실시 전, ABS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국내 PIC, MAT 양식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PLC 등 사회 전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미지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thegef/844753241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NDP\\_logo.sv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NDP_logo.svg)

사모아 기사:

[http://sobserver.ws/en/13\\_11\\_2017/local/26631/Samoa-to-share-in-benefits-from-genetic-resources.htm](http://sobserver.ws/en/13_11_2017/local/26631/Samoa-to-share-in-benefits-from-genetic-resources.htm)

보츠와나 기사:

<http://www.bw.undp.org/content/botswana/en/home/presscenter/articles/2017/11/09/undp-hosts-access-and-benefit-sharing-inception-workshop-.html>

### 국제상공회의소

133여 개국 1,900여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CBD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CBD 정의조항(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실제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가시적인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CBD 상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유전자염기서열은 여러 유전자원에서 공동으로 발견될 수 있어 각각의 염기서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 영국 학술기관

영국 내 권위 있는 학술기관에서도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영국왕립생물학회 및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를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NCBI) 등의 오픈 데이터에 게재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오픈데이터에 게재하는 것은 기초 연구에 해당하며 이는 나고야의정서 상 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염기서열정보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자 간 ABS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왕립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규제가 R&D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세계적인 이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생물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존재하는 광범위한 개체이기 때문에 미생물 관련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해당 종 및 지리적 출처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 웰컴트러스트생어센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제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웰컴트러스트생어센터(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규율에 대해 ‘득 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센터는 현재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공유로 혜택을 받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기관의 반대 입장을 뒷받침했다.

영국왕립학회 성명서:

[https://www.rsb.org.uk/images/RSB\\_response\\_Defra\\_call\\_for\\_comment\\_on\\_DSI\\_and\\_Nagoya\\_protocol.pdf](https://www.rsb.org.uk/images/RSB_response_Defra_call_for_comment_on_DSI_and_Nagoya_protocol.pdf)

웰컴트러스트생어 성명서:

<https://wellcome.ac.uk/sites/default/files/the-use-of-digital-sequence-information-on-genetic-resources.pdf>

국제상공회의소 성명서:

<https://iccwbo.org/publication/digital-sequence-information-and-the-nagoya-protocol/>

# L'ORÉAL

로레알, 벨레다 그룹 등 세계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있어 '윤리적 생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레알 관계자는 비영리국제기구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과의 인터뷰에서 "자사에게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원료 공급 차원의 의미가 아닌, 제품 개발에 영감을 주는 핵심 자원"이라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물공정무역을 강조하였다.

\* UEBT: Union for Ethical BioTrade

윤리적생물무역연합은 2009년부터 세계 16개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0명의 응답자 중 79%가 "기업은 생물다양성을 존중하여 원료를 확보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답했으며, "생물공정무역을 통해 출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변한 수도 전체 응답자의 73%에 달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생물 공정 무역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업들이 윤리적 원료 확보에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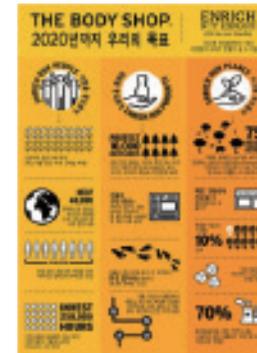
천연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에 사용될 천연 원료의 원산지 출처 확인 및 윤리적 생물 자원 확보에 주력하는 추세이다.

한편,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인도, 모로코, 남아공 등은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을 규제하는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 관계자는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점차 구체화되는 나고야의정서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cosmetics.specialchem.com/news/industry-news/cosmetic-importance-ethical-sourcing-innovation-uebt-000187388>

이미지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27O%27r%C3%A9al\\_logo.sv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27O%27r%C3%A9al_logo.svg)



영국의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The Body Shop)은 파괴된 열대 숲을 복원하는 '바이오 브릿지 캠페인'을 위해 2020년까지 200만 파운드(28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바이오브리지 캠페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벌목, 밀렵, 비지속적인 경작방식으로 훼손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5월에 시작된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이다.

더바디샵의 새로운 기업 이념인 '희생 없는 풍요로움(Enrich, Not Exploit)'에 따라 14개의 세부 목표를 설립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바이오브리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전체 바이오브리지 기금의 58%를 베트남 캐누우트롱 숲의 생물다양성 복원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2%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생물다양성 복원에 사용하였다. 2020년까지 조성되는 기금은 새로운 10개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더바디샵은 바이오브리지 캠페인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Hotspot)내 신규 물질 발굴 기회를 가진다. 실제로 더바디샵은 신규 생물소재를 이용한 천연 화장품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 영국 이스트 크로이던(East Croydon) 지역에 백만 파운드(14억원 상당) 규모의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소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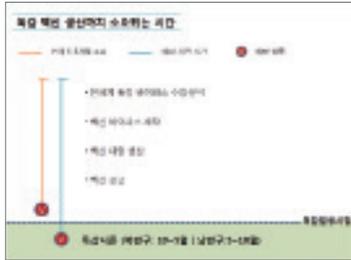
더바디샵 관계자는 "우리의 노하우 및 기술로 전세계 지역 공동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s://www.edie.net/news/7/The-Body-Shop-allocates--2m-for--World-Bio-Bridges-Mission/>

'뉴커미트먼트 인포그래픽' 그림출처=더바디샵:  
<http://www.thebodyshop.co.kr/brand/value/change.asp>

## 나고야의정서, 계절성 독감 백신 공급에 지연 가져올 수 있어

“백신 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 나고야의정서를 적용할 경우 바이러스 이익공유 협상기간으로만 3개월이 소요돼, 시간이 촉박하다”



‘네이처 닷컴’은 2017년 2월 8일자 기사에서 “백신 제약사 및 연구자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백신의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유전자원에는 동·식물 유전자원뿐 아니라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바이러스도 포함된다.

바이러스의 이익공유 협상이 의무화되면 차기 독감 시즌에 맞춰 최상의 백신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논의한 바 있다(제120호 ABS 뉴스레터 참조).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이하 GISRS)는 매년 전 세계의 최신 독감 바이러스 샘플을 수집, 분석하여 독감 시즌에 대비한 백신 바이러스 균주 구성에 대한 권고문을 마련한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관계자는 “권고문에 따라 백신을 제조하는 데는 대략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백신 공급에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백신 공급의 차질은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WHO-GISRS 시스템을 나고야의정서 상 특별 국제문서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GISRS가 특별 국제문서로 인정을 받게 되면 개별적인 협상 없이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을 WHO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에서 추진 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와 공중 보건을 위한 병원체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제70차 세계보건총회(2017.5.22~31)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http://www.nature.com/news/treaty-to-stop-biopiracy-threatens-to-delay-flu-vaccines-1.21438>  
nature.com

## 내추라 코스메틱, 40여개 원료에 대한 UEBT 인증 획득



브라질 화장품 대표기업 내추라 코스메틱(Natura cosmetics)과 독일계 다국적 기업 심라이즈 아마존(Symrise Amazon)사가 아마존 40개 천연물에 대한 UEBT 윤리적 인증을 획득했다. ‘UEBT’(Union for Ethical Biotrade, 윤리적 생물교역을 위한 연합)는 2007년 10월 발족한 비영리 국제기관으로 윤리적 생물교역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의 공정한 이익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릭 커치 로젠가(Rik Kutsch Lojenga) UEBT 사무총장은 “내추라와 심라이즈 아마존은 여러 아마존 지역공동체(자원 제공자)들과의 윤리적 교역을 통해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통한 공동체의 지역 경제와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UEBT 인증을 통해 아마존 밀림지역의 천연오일인 안디로바(andiroba) 오일, 마라쿠자(maracujá) 오일, 아마존 열매인 쿠파아쿠 버터(cupuaçu butter)와 아사이 열매(acai pulp)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혁신기업 100위 중 10위를 차지한 내추라 코스메틱스는 2000년, 아마존 천연물을 소재로 한 에코스(Ekos)라인을 출시하여 수익의 일부를 아마존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다. 2011년 내추라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자원을 제공한 34개의 브라질 지역공동체(총 3,235가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380만유로(한화 50억 상당)의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그 중 160만유로(한화 21억 상당)가 생물다양성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을 위한 이익공유 금액으로 사용되었다.

UEBT의 인증은 그 회사의 회계감사, 제공지역에서의 활동 및 회사의 ABS 이해정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http://www.cosmeticsdesign-europe.com/Business-Financial/Natura-and-Symrise-obtain-UEBT-certification-for-40-Amazon-ingredients>

이미지 출처:  
www.naturabrasil.fr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식재산권 관련 39건의 ABS 모델계약을 공개했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BS 모델계약서 26건, 기 체결된 ABS 계약서 13건이 WIPO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세부 내용과 조항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계약조항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찾고자 하는 항목(예: 금전적 이익공유)을 클릭하면 그 조항이 포함된 ABS 모델계약서가 자동 검색된다.

WIPO는 2000년부터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를 설립하여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제34차 IGC가 2017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

참고  
자료

<http://www.wipo.int/tk/en/databases/contracts/list.html>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체계(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이하 PIP Framework)에 바이러스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PIP framework를 나

고야의정서 특별문서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 글로벌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는 바이러스 생체시료(virus biological material)의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유전자염기서열정보(Genetic Sequence Data, 이하 GSD)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문 시설이 잘 구비된 연구실에서는 바이러스 유전자염기서열정보(GSD)만 있으면 바이러스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체계(PIP Framework) 검토 그룹은 바이러스 생체시료의 정의에 유전자염기서열정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병원체 공유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생체시료의 정의에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포함을 반대하고 있으며, 생체시료 자체와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명확히 구분된 개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정보공유체계인 EpiFlu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독일은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이용 모니터링 방안과 이익공유 모델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체계(PIP Framework)에서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은 '예상치 않은 결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했다.

참고  
자료

<http://www.ip-watch.org/2017/01/29/virus-genetic-information-hot-topic-flu-framework-nagoya-needs-time/>  
<http://www.who.int/en/>

## 세계보건기구(WHO),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논의



올해 5월로 예정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를 앞두고,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EB)가 1월 23일~2월 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세계적인 유행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한 바이러스 샘플의 공유 및 백신 접근에 대한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를 검토하고(EB 140/16),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EB 140/15)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PIP Framework: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benefits"의 약자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범세계적 대비를 위해 2011년 '제64차 세계보건총회'(WHA64)에서 채택되었음

특히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의 경우, PIP Framework 설립 당시에는 PIP 생물물질의 정의규정에는 명시화되지 않았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유행 위험평가(Pandemic risk assessment)를 위한 물리적인 시료 접근이 없이도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통한 인플루엔자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통해 상업 제품 개발도 가능해지면서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PIP Framework 정의조항에 포함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을 다룬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병원체(pathogens)의 공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국들은 1)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 및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2)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양자(bilateral) 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드는 높은 거래 비용, 3)나라별 다양한 ABS 입법으로 인한 병원체 공유의 지연 및 한계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PIC, MAT을 위한 개별 협상 절차는 바이러스 공유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WHO 집행이사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제4조(국제 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에 명시된 "국제 문서"에 PIP Framework가 포함되도록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PIP Framework의 개정 필요성을 다룬 예정이다.

참고 자료 [http://apps.who.int/gb/e/e\\_eb140.html](http://apps.who.int/gb/e/e_eb140.html)

## 세계보건기구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 프레임워크(WHO PIP Framework), 나고야의정서 제4조 상 국제문서 포함 모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공유 및 백신 접근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1년 발족한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 프레임워크'(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이하 'PIP 프레임워크')의 검토 그룹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

까지 공식 검토 회의를 가졌다. 검토 그룹은 PIP 프레임워크가 나고야의정서 아래 '특별국제문서'(specialized international instrument)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며 "만일 PIP 프레임워크가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과 같이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특별 국제 문서로 인식된다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PIP 프레임워크의 독자적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직접적인 의무를 적용 받지 않게 된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관련하여 에콰도르는 'WHO가 나고야의정서 아래 특별 국제문서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질문하였고 태국 보건부 소속 대표자 및 몇몇 검토그룹 위원들은 "나고야의정서 제4조(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아래 PIP 프레임워크가 특별국제문서로 인정된다면 국가들은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들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공유 협정들은 상당한 거래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고 답했다.

태국 측 대표는 "2017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PIP프레임워크를 국제특별문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토그룹은 PIP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 확대,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이들을 '극도로 복잡한 문제'로 규정하고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었다.

검토 그룹의 논의 결과는 10월에 공개되며 관련 예비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ip-watch.org/2016/09/02/how-can-two-access-and-benefit-sharing-international-instruments-coexist-for-public-health-benefits/>

이미지 출처:  
www.un.org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이사회,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논의 예정



올해 10월 르완다에서 개최된 제7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이하 ITPGRFA\*) 이사회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Sequence information of crop genetic resources)을 2019년부터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번 제7차 이사회는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의 공식 논의 여부를 두고 아프리카 개도국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간 팽팽한 대립으로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ITPGRFA 내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 및 미국 등은 염기서열 정보의 경우 ITPGRFA 적용범위가 아니며, 이미 CBD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절충안으로 내년부터 ITPGRFA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의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가 ITPGRFA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의견서 취합하고 2019년 열리는 제8차 이사회에서 의제 항목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참고 자료 <http://enb.iisd.org/download/pdf/enb09691e.pdf>

이미지 출처:  
By FAO, original uploader: w:en>User:Cptnemo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 유엔무역개발회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담당자를 위한 ABS 핸드북 공개



UNITED NATIONS  
UNCTAD

10월 2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ABS 정책 수립 및 규제를 위한 핸드북 '바이오무역(Biotrade)과 접근 및 이익공유(ABS): 기본에서 실천까지'를 공개했다.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964년 설립된 유엔기구 중 하나로 한국 등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핸드북에는 ABS 정책 수립 및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점검사항과 이익공유 사례 등을 담고 있다.

핸드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홈페이지(<http://unctad.org>)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ditcted2017d6\\_en.pdf](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ditcted2017d6_en.pdf)

이미지 출처:  
B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via Wikimedia Commons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페루 생물다양성 보전 및 ABS 역량개발을 위해 워크숍 개최



지난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페루의 미생물, 동식물 자원을 보전하고 이들의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해 페루의 수도 리마(2.8~9)와 잉카도시 쿠스코(2.11)에서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페루는 25,000개 이상의 식물종을 보유한 생물자원 부국으로 해당 식물종 중 3분의 1은 페루의 고유종이다. 동물종의 경우 세계 어류종의 10%가 페루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규모 생물다양성은 비즈니스 창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생물, 동식물을 통해 나오는 유전자원 및 생화학물질은 과학 발명과 신규 제품 R&D의 핵심요소이다. 특히 화장품, 제약, 천연의약 분야에서 생물자원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페루와 같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여러 '생물다양성 부국'들은 의정서를 국가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러한 페루 정부의 고충을 파악하여 돕고자 '페루 지식재산협력기구(INDECOPI)\*와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 하의 지식재산권과 ABS에 대한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했다. 리마와 쿠스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50명 이상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Peruvian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세미나의 주요 논제는 ABS의 핵심요소인 사전통고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한 것이었다. 헤르베르트 타싸노(Herbert Tassano) '페루 지식재산협력기구(INDECOPI) 회장'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으로부터 특정 유전자원 및 생화학물질의 접근 및 이용 유형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접근 및 이용 목적에 대한 조건(terms)들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루에서는 이러한 승인과 합의조건들이 계약, 허가증 또는 라이선스 형태로 진행 된다."고도 했다. 또한 페루에서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어, 유전자원 또는 생화학물질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경우 기업 및 연구자들이 반드시 특정 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 사전통고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상호합의조건 역시 특정 토착지역공동체와 체결해야 한다.

페루는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입법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이다. 페루법(Law N° 27811)에 따르면 상업 이익의 최소 5%는 반드시 해당 ILC와 공유되어야 하며, 최소 10%는 '토착지역민발전기금(Fund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에 기탁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페루 ABS 세미나에서는 ABS 절차의 간소화,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 증진, 출처공개요건 등의 모호한 영역 정의, 의무준수 점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페루 환경부에 따르면 페루 정부와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그동안 80여건의 ABS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연구 활동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면 상업적 활동을 위한 ABS 계약이 더 많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ABS 계약의 체결을 담당하는 페루 기관들 간의 연계가 더욱 필요하다. 이들 ABS 계약 담당기관은 재배 식물종 담당의 '국가농업혁신기구(INEA)\*, 산림종 담당의 '국가산림야생동물청(SERFOR)\*\*, 어류종 담당의 '어업수산청(PRODUCE)\*\*\*'으로 3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Innovation  
\*\* the National Service for Forestry and Wild Animals  
\*\*\* the Fisheries and Aquaculture Services

한편 세미나에서는 부처 간 업무중복을 해결하고 모범관행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참고 자료 [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1212&Sitemap\\_x0020\\_Taxonomy=UNCTAD%20Home](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1212&Sitemap_x0020_Taxonomy=UNCTAD%20Home)

## 유전자원염기서열정보 국제적 규제 논의중

유전자원염기서열정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생물다양성협약(CBD),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재 유전자원염기서열정보는 NCBI의 GenBank, 일본의 DNA정보은행(DDBJ: DNA Data Bank of Japan), 유럽의 ENA(European Nucleotide Archive) 등 여러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료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은 “유전자원 이용자들이 유전자원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하여 ABS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유전자원염기서열정보 접근 시 승인 획득 및 염기서열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은 유전자원염기서열정보가 자국내 ABS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CBD 사무국은 내년 2월 13~15일에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전문가그룹(AHTEG)\*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Meeting of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참고  
자료

<http://www.genengnews.com/gen-exclusives/nations-press-for-international-restrictions-to-govern-genetic-sequence-data/77900903>

##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 ‘생물공정무역과 ABS의 영향’ 논의

비영리국제기구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이 2017년 6월 1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물공정무역 콘퍼런스(BSR 2017)’를 개최했다.

- \* Union for Ethical BioTrade
- \* 2017 Beauty of Sourcing with Respect Conference

이번 콘퍼런스에는 CBD 관계자 및 각국의 국가 기관, 생물소재 바이오 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로레알, 내추라 코스메틱, 심라이즈 아마존, 벨레다 등이 후원하였다.

총 4세션으로 구성된 콘퍼런스에서는 “생물공정무역과 ABS의 영향”을 주제로 ▲내추라 코스메틱사의 아마존 천연소재 Ekos 화장품 사례\*, ▲Parceval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BS 허가 절차 사례 및 시사점, ▲브라질 ABS 절차의 장·단점, ▲식료품 분야의 EU ABS 규칙 이행 쟁점, ▲NGO 단체가 본 과라니족의 스테비아 사례\* 등을 다루었다.

- \* ABS 뉴스레터 제105호 참조
- \* ABS 뉴스레터 제123호 참조

콘퍼런스 둘째 날에는 브라질,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 정부 대표 및 여러 화장품, 식료품, 제약 등 바이오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모여 ABS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UEBT 사무총장은 콘퍼런스를 마치며 정부와 기업 간 활발한 ABS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들이 ABS 허가 절차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내년 콘퍼런스에서 더욱 풍성한 ABS 모범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http://ethicalbiotrade.org/dl/BSR-2017report.pdf>

## 제2차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개발에 대한 준비위원회,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논의



해양법협약(UNCLOS) 하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에 대한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The secon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PrepCom 2) on the elements of a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준비위원회는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를 비롯한 해양보호지역, 환경영향평가, 역량개발 및 기술이전,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적용범위 및 기타 국제문서들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접근(Access)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유엔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ISA)가 행정청이 되어,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환경보호 프로토콜을 샘플 관리 기준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를 언급하며 추적가능성(traceability)과 투명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해(high seas) 레짐에서는 누구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일본은 '해양유전자원 접근에 제한(restrictions)을 도입하는 것과 금전적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R&D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EU는 "어떤 국제기구도 접근을 규제할 권한은 없으며 모든 국가 및 국제사회, 미래세대를 위해 접근(access)은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형태여야 하며 행정적 부담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Benefit-sharing)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상업화에 따른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주(water column) 내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레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메이카는 개도국의 연구 역량 강화 등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찬성하였으며 금전적 이익에 대한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방식을 언급하였다. G77(개발도상국 그룹)/중국은 비금전적 이익으로 역량개발 및 기술이전,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과학연구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미국은 R&D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금전적 이익공유 옵션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제3차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 준비위원회의 일정은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참고 자료 <http://www.iisd.ca/oceans/bbnj/prepcom2/>

이미지 출처: www.un.org

## 기타 국제기구동향

### ITPGRFA, 2019년부터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정보 논의 예정

1. ITPGRFA 이사회는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Sequence information of crop genetic resources)"를 향후 이사회 의제로 논의하기로 결정
2. 개도국들은 농작물 염기서열 정보의 의제항목 설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선진국(일본, EU, 미국 등)들은 농작물 염기서열정보는 ITPGRFA 적용범위가 아니라고 주장
3. 한편 미국은 유럽보다는 덜 강경한 입장이나, 미국의 경우 CBD 당사국이 아니면서 ITPGRFA 당사국이어서 CBD에서는 못했던 ITPGRFA에서의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계획중

### 국제상공회의소 '기업 관점의 나고야의정서 제1차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 제출

1. 국제상공회의소(ICC)는 ABS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업 관점의 나고야의정서 제1차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를 CBD 사무국에 제출함
2. 해당 보고서는 1)ABSCH, 2)모범관행 및 모델 계약, 3)ABS 이행이 발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목차로 하여 나고야의정서 효율성을 평가함
3.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ABSCH에 최신 정보를 게재하지 않아 기업들의 ABS 의무준수가 어렵다고 함. 요약하면 "오늘날 ABSCH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컨텐츠의 한계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CBD 공지]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비공식자문위원회 참가자 추천

1. CBD 사무국은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비공식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당사국들에게 후보자 추천을 공지함 ('17년 12월 4일까지 사무국 메일(secretariat@cbd.int)로 후보자 CV 발송)
2.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비공식자문위원회는 COP-MOP1에서 설립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및 인식제고 사업들을 평가 및 자문함
3. 지역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15명의 당사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3차 비공식자문위원회는 2018.3.20~2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

### CBD 사무국,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관련 연구 보고서 초안 공개

1. 11월 9일 CBD 사무국에서 실시한 'R&D내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성장과 도래: 협약 및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공평한 이익공유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 초안이 동료 검토를 위해 공개됨
2. 해당 보고서는 DSI 용어 정립과 DSI 실태조사를 요청한 COP13 결정문(XIII/16 8)과 제 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NP-2/14)에 따라 실시됨
3. 보고서는 총 85페이지 9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DSI 관련 용어 파악, DSI 이용 분야 및 이용 용도, DSI 보관 및 운영 현황, DSI와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음

## [CBD 공지] 현재 50개국, 나고야의정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1. 현재 50개국(당사국(47), 비당사국(3))이 CBD 사무국에 나고야의정서 잠정국가보고서를 제출함
2. CBD 사무국은 올해 세 차례 공지문(2월, 8월, 10월)을 통해 잠정국가보고서 제출을 권장했으며 최근 또 한 차례의 공지문(11월)을 통해 잠정국가보고서 제출을 독려함
3. 잠정국가보고서 ABSCH 온라인 링크(<https://absch.cbd.int/en/register/NR/new.1>)를 통해 제출 가능

## 프로비탈 그룹, 화장품원료사 최초로 IRCC 획득

1. 스페인 화장품 원료회사 프로비탈 그룹(Provital Group)은 화장품 회사로써는 최초로 나고야의정서 공식 이행을 증명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IRCC)'를 획득함
2. IRCC는 멕시코 환경부가 발급하였으며, 10월 11일 ABSCH에 게재됨
3. ABS 대상물질은 멕시코 전통식물 및 관련 전통지식이며 MAT내용은 비밀로 처리됨
4. 프로비탈 그룹은 해당 전통식물 및 전통지식 이용을 위해 케레타로 주 부족민 그룹 및 케레타로 국립 자치 대학교와 협력하여 R&D 활동을 수행중임

## 유엔무역개발협의회, ABS 핸드북 공개

1. 10월 26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정책 입안자 및 규제담당자를 위한 ABS 핸드북, 「바이오무역(Biotrade)과 접근 및 이익공유(ABS): 개념부터 실천까지」를 공개함
2. 핸드북은 총 9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ABS 정책을 수립하거나 ABS 규제를 실시하는 담당자들의 실무를 지원하고자 개발됨
3. 부록으로 베트남 약용식물 사례, 카메룬 Echinops giganteus 식물종 사례, 페루 Cosmo 사 사례 등을 소개함  
<목차>
  - 1) ABS 소개
  - 2) 정책입안자 및 규제담당자를 위한 핵심 이슈
  - 3) ABS와 Bio-trade의 개념 및 요건, ABS와 Biotrade 간의 상호관계 및 시너지
  - 4) R&D 목적 및 의도 변경
  - 5) 이익공유: 체제 개발 및 계약 협상
  - 6) 나고야의정서 채택: 국내법개발 및 이행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 7) 전통지식 및 IPLC 영토 관련 수행 업무
  - 8) ABS 및 Biotrade 인증 제도, 표준, 모범관행 등
  - 9) 신규 중요 이슈: ABS 관련 지식재산권 및 Biotrade 프로젝트

## CBD사무국, 국가 및 기관들의 DSI의견서 공개

1. CBD 사무국은 각국 정부 및 민간 단체들이 제출한 DSI 의견서를 CBD 홈페이지에 공개함
2. 당사국(13), 비당사국(1), 민간단체(37)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국가명 및 기관명을 클릭하여 각각의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
3. 사무국은 접수한 국가 의견서 등을 취합하여 내년 2월 13일~16일 DSI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 [CBD 공지]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나고야의정서 제31조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는 의정서 발효 4년 후 의정서의 효율성을 평가해야함
2. 결정문 NP-2/4에 따라 제1차 평가에 포함시킬 정보들을 파악해야 함
3. 민간 기업, 연구기관, 현지의 컬렉션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ABS 관련 모범관행, 행동규약, 가이드라인, 모델 계약 개발 및 이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초청
4. 당사국 및 비당사국, IPLC에게 ABSCH 운영관련 설문지(<https://goo.gl/forms/n8a0hECy91Irl4IJ2>)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줄 것을 초청함

## [CBD 공지] 나고야의정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안내

1.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CBD 사무국은 10월 16일 당사국들의 잠정국가보고서 제출을 다시 한번 공지함
2. 온라인 양식(<https://www.cbd.int/abs/NR.shtml>)을 이용하여 UN 6개 공식언어 중 하나로 작성
3. 온라인 제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ABSCH에 있는 워드 양식을 다운받아 사무국 이메일(secretariat@cbd.int)로 제출

## [CBD 공지] 제6차 CBD 국가보고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안내

1.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6차 CBD 국가보고서 역량강화 워크숍(12.9)이 개최될 예정
2. 워크숍은 UNDP, UN FAO, CBD 사무국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워크숍 이후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SBSTTA 21과 WG8J가 개최됨(12.11~16)
3. 참가를 원할 경우, 국가연락기관의 서명을 받은 참가 등록 신청서를 11월 3일까지 사무국에 제출

## 국제상공회의소(IGC), 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입장

1. 파리 소재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DSI를 CBD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하려는 현재의 국제적인 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
2.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에 ABS 규제를 가하는 것은 중요한 R&D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나아가 CBD 및 나고야의정서 목표 달성에도 피해가 된다 주장
3. CBD의 정의조항(제2조)에는 유전자원이 실제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 물질(genetic material)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함. 그러므로 비가시적(invisible)인 DSI는 CBD상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4. 또한 유전자 염기서열은 여러 자원에서 공동으로 발견될 수 있어 각각의 DSI의 이용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불투명하며, 법적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

## [CBD 공지] 나고야의정서 제10조(GMBSM) 관련 국가 의견 제출

1. COP-MOP2 결정문(NP-2/10)에 따라 CBD 사무국은 당사국, 비당사국, IPLC, 이해관계자 들에게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대한 의견을 12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초청함
2. 특히 현지내, 현지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PIC 허가 및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경험 등 정보 제출을 초청함
3. 접수한 국가 의견은 제2차 이행검토 보조기구(SBI)에서 논의되어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에서 고려하게 됨

## WIPO, 지식재산권 관련 ABS 계약서 DB 구축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ABS모델계약서들을 공개하고 있음
2. 현재 DB에는 ABS 모델 계약서 26건, 실제 체결된 ABS 계약서 13건이 게재되어 있음
3. 계약조항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찾고자 하는 항목(예: 금전적 이익공유)을 입력하면 그 조항이 포함된 ABS 모델계약서가 자동 검색됨

## [CBD 공지] 나고야의정서 이행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안내

1. 결정문(NP-1/3)에 따라 당사국, 비당사국은 11월 1일까지 ABSCH를 통해 잠정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
2. 지난 2월 13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1차 공지문이 게재되었으며 본 공지문은 2차 알림에 해당됨
3. 각 국의 국가보고서는 의무준수위원회, 제2차 이행검토보조기구회의,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내용을 취합하여 문서화할 예정

## 더바디샵, 200만 파운드 '바이오브릿지 캠페인' 기금 설립

1. 더바디샵은 착취, 밀렵 등으로 사라지는 전세계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 재구축하기 위해 200만 파운드의 신규 기금을 구축할 예정임
2. 2016년 5월 처음 발족한 바이오브릿지 캠페인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지역의 공동체와 협력하여 그 지역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기여함
3. 더바디샵은 바이오브릿지 캠페인으로 생물다양성 핫스팟 내 신규 천연 물질을 탐사하는 기회를 획득하여 천연소재 화장품 개발에 앞장설 것임을 밝힘

## [CBD 공지]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공지

1.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는 COP-MOP1 결정(NP-1/2)에 따라 설립됨(15명 정원, 지역 균형제)
2. COP-MOP2 결정(NP-2/2)에 따라 그 업무가 연장되었으며, 회기중(2017-2018) 적어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해야 함
3. 이에 따라 당사국 출신 15명의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지역별로 아시아(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 상투메프린시페), 중앙 및 동유럽(알바니아, 벨라루스, 헝가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아르헨티나, 쿠바, 멕시코), 서유럽 및 기타 그룹(유럽위원회(EC), 영국, 스위스)로 구성됨

##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 '생물공정무역과 ABS의 영향' 논의

1. 국제적 비영리 단체 UEBT가 2017년 6월 1일부터 이틀간 '생물공정무역 콘퍼런스'를 개최함
2. 콘퍼런스에는 CBD 관계자, 정부, 바이오 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생물공정무역과 ABS의 영향'에 대해 논의
3. 'Parceval사의 남아공의 ABS 허가 절차 사례', '브라질 ABS 절차의 장단점', 'NGO 단체가 본 스테비아 사례', '루이보스와 ABS' 등을 다루었음
4. 다음날인 2일에는 브라질,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파나마, 남아공 등 정부 대표 및 화장품, 식료품, 제약 등 바이오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모여 공개토론을 진행함

##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 "생물자원의 윤리적 소싱이 중요하다" 강조

1. 로레알, 벨레다 그룹 등 세계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있어 '윤리적 생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남
2. 비영리국제기구 UEBT는 화장품 기업 및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물자원의 윤리적 소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함
3. 5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73%가 "생물다양성의 윤리적 소싱을 통해 출시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 답변
4.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기업들은 제품에 사용된 천연 물질의 원산지 출처 파악에 힘쓰고 있으며 공급 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소싱하도록 주력하고 있음
5. 한편,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인도, 모로코, 남아공 등은 생물자원 이용 R&D 관련하여 국내법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여 적극 대응중임

##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제10차 협약 제8조 차항 작업반회의 개최 일정

1.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COP13)와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의 결정 사항에 따라 사무국은 올해 말부터 내년 11월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다수의 부속기구 회의를 개최할 예정
2. 부속기구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11월 초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4)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가 개최될 예정임

### • CBD 회의 일정

회의명	일정	장소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21)	'17.12.11~14	캐나다, 몬트리올
제10차 협약 제8조 차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임시공개작업반회의(WG8J)	'17.12.13~16	캐나다, 몬트리올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기술전문가회의(AHTEG)	'18.2.13~15(잠정)	캐나다, 몬트리올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SBSTTA 22)	'18.7.2~7	캐나다, 몬트리올
제2차 이행검토 보조기구 회의(SBI 2)	'18.7.9~13	캐나다, 몬트리올

## 유전자염기서열정보(GSD) 국제적 규제 논의중

1. 현재, 유전자염기서열정보(GSD)는 NCBI의 GenBank, 일본의 DNA정보은행(DDBJ: DNA Data Bank of Japan), 유럽의 ENA(European Nucleotide Archive) 등 여러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료 열람이 가능함
2. 그러나 여러 국가들은 “유전자원 이용자들이 GSD를 이용하여 ABS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GSD 접근 시 승인 획득 및 GSD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음
3. 현재 CBD 나고야의정서, FAO ITPGRFA, WHO PIP Framework 등에서 GSD를 ABS 요건에 포함시킬 지 여부 논의 중
4. 특히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은 GSD가 자국내 ABS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CBD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정보 연구사업 참가의향서(EOI) 제출 안내

1. 결정문 XIII/16에 따라 CBD 사무총장은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용어 정립, 디지털 염기서열 이용 조건 및 범위 평가를 위한 조사·범위 연구를 수행해야 함
2. 이에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연구자들의 ‘사업참가의향서’(EOI) 제출을 초청함.
  - 자격조건:
    - 법률, 정책, 생물과학, 정보 및 데이터 관리 등의 통합적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또한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나고야의정서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겸비한 자
  - 제출방법:
    - 연구 사업 계획서와 연구 참여자들의 CV를 2017년 5월 19일까지 사무국 이메일(secretariat@cbd.int)로 제출

### • 연구 사업 일정표

일시	활동
2017년 5~7월 중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017년 6월 26일	연구 사업 개요서 마련
2017년 9월 1일	연구보고서(초안) 사무국 제출
2017년 10월 1일	연구보고서(수정안) 사무국 제출
2017년 10월 15일~11월 15일	연구 보고서 검토
2017년 12월 1일	최종 보고서 사무국 제출
2018년 2월 13~15일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전문가그룹(ATHEG) 회의 개최

##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 CBD 사무총장 취임

1. Cristina Paşca Palmer가 3월 20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함
2. 1968년 루마니아 출신의 Palmer 사무총장은 루마니아 수도에 위치한 부쿠레슈티대학교에서 시스템 생태학, 자원자본 관리로 이학석사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플레처 법률외교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음
3. 주로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EU 집행위 국제협력개발총국의 기후변화·환경·천연자원과 과장, 루마니아 환경·물·산림부 장관을 역임함
4. 주요 업적으로는 12억 달러 규모의 EU 생물다양성 대표 프로그램인 ‘Biodiversity for Life Initiative(B4Life)’를 설계한 것을 들 수 있음

## 합성생물학 온라인포럼에 참가할 전문가 추천 및 합성생물학 관련 정보 제출 안내

1.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 (XIII/17)에 따라 ‘합성생물학 임시 기술전문가그룹’(the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Synthetic Biology (AHTEG)) 및 ‘합성생물학 온라인 포럼’(the open-ended online forum)의 권한이 연장되었음
2. 사무국은 연장된 ‘합성생물학 온라인포럼’에 참가할 전문가를 추천하여 이메일(synbio@cbd.int)로 제출할 것을 당사국 및 기타 정부, IPLC등에 초청함
3. 또한 당사국, 기타 정부, 유관 기관, IPLC에게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다음의 6가지 주제의 정보를 2017년 6월 16일까지 사무국(secretariat@cbd.int)에 제출할 것을 초청
  - 1) 합성생물학 및 그 결과물로 나온 생물체, 구성요소,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인식 제고 활동
  - 2) 협약 3가지 목표에 대한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
  - 3) 합성생물학 생물체, 구성요소,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 수행 경험
  - 4) 합성생물학 생물체, 구성요소, 제품의 악영향 예방을 위해 수행중인 리스크 관리 및 기타 조치들의 예
  - 5) 합성생물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행 중인 규제 또는 개발중인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
  - 6)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고 대조하기 위한 IPLC의 지식, 경험, 관점

## 제13차 당사국총회 및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에 따른 2017-2018 CBD 회의 일정

1. COP13 및 COP-MOP2의 결정문 내용 및 요청사항의 후속 조치를 위해 사무국은 회기중(2017-2018)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공지(SCBD/SPS/DC/VN/jh/86317)

회의명	일시	비고
ABSCH 비공식 자문위원회 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	2017년 4사분기 중	
의무준수위원회 회의	2018년 2사분기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강화에 대한 비공식자문위원회 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	2017년 4사분기 중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기술전문가그룹 회의	2018년 1사분기 중	
제22차 과학기술자문조기구(SBSTTA)회의	2018년 3사분기 중	디지털염기서열 전문가회의 논의결과 검토 예정
제2차 이행자문기구(SBI)	2018년 3사분기 중	- GMBSM 필요성 및 양식 - 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에 따른 특별 국제 ABS 문서를 구성하는 기준 및 그러한 국제특별문서로 인정하는 프로세스 논의 - 제 1차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평가 및 검토 기반이 되는 관련 정보 종합문서 및 의정서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프레임워크(안)

##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및 ABSCH에 정보 게재 요청

1. CBD 사무국은 2월 23일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및 ABSCH에 정보 게재를 초청한 공지문(SCBD/SPS/DC/VN/BG/jh/86322)을 발표
2.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NP1/3)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에 대한 잠정 국가보고서를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개최 12개월 전까지 ABSCH를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이에 따라 당사국 및 비당사국은 늦어도 2017년 11월 1일까지 결정문(NP1/3)에 있는 제출 양식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안내 받음
4. 제출방법: <https://absch.cbd.int/en/register/NR/new>에 있는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UN 공식언어로 작성 후 제출

## 제33차 지식재산·유전자원·전통지식·문화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개최

1.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제33차 지식재산·유전자원·전통지식·문화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33rd Session of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2. 전통 문화 전승물 관련하여 IGC 33은 다음의 의제들을 논의함
  - 전통문화전승물 보호(WIPO/GRTKF/IC/33/4.)
  - 전통문화전승물 회의문서(WIPO/GRTKF/IC/33/5)
  - 연구를 위한 EU 제안서(WIPO/GRTKF/IC/33/6)
  - 지식재산·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문화전승물 관련 핵심 용어 리스트(WIPO/GRTKF/IC/33/INF/)
  - WIPO 전통지식, 전통문화전승물, 유전자원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WIPO/GRTKF/IC/33/INF/8)
  - WIPO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전승물에 대한 문서(안)의 지식재산 관련 기술 검토 (WIPO/GRTKF/IC/33/INF/9)

## 나고야의정서, 계절성 독감 백신 공급에 지연 가져올 수 있어

1. 네이처 닷컴(Nature.com)은 2017년 2월 8일자 기사에서 “백신 제약사 및 연구자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계절성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백신의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
2. 백신 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 나고야의정서를 적용할 경우 바이러스 이익공유 협상기간으로만 3개월이 소요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제약사 및 기업의 입장임
3.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나고야의정서 제4.4조 상 특별국제문서로 PIP Framework를 인정받게 되면, 개별협상 없이 자유롭게 병원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WHO 집행이사회에서 제안함

## 글로벌게놈생물다양성네트워크(GGBN), ABSCH에 MTA양식 게재

1. ‘글로벌게놈생물다양성네트워크’(Global Genome Biodiversity Network Guidance, GGBN)가 2월 2일 물질이전계약서(MTA)양식, 행동규약, 모범관행 자료를 ABSCH에 게재함
2. GGBN은 2011년 발족한 DNA bank 성격의 국제 비영리 네트워크로, 인간을 제외한 생물 종의 동결보존 기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3. GGBN이 공개한 MTA 양식은 3가지 타입으로, 1)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는 물질 제공용 MTA, 2)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물질 제공용 MTA, 3)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물질 수령(receipt)용 MTA로 구분됨

## WHO-PIP ‘바이러스 유전자염기서열정보’ 포함 여부 고심

1.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유행 인플루엔자대비체계(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이하 PIP Framework)에 바이러스 유전자정보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2. 또한 WHO 집행이사회는 PIP framework를 나고야의정서 특별문서에 포함시키도록 제안
3. 이외에도 PIP Framework에서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은 ‘예상치 않은 결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 CBD, 당사국 등에 8j 조항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COP13 개최결과에 따라 CBD는 COP14 개최 전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과 관련하여 8j관련 작업반을 열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며 2017년 3월 30일 까지 아래 사항에 대한 당사국, 토착민 공동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 있는 토착민 공동체의 전통지식 관련 정보의 회송(repatriation)에 대한 Rutzolijirisaxik 자발 지침(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의 모범관행관련 정보
  2. 8j 및 관련 조항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 용어집에 대한 제언
  3. 8j 관련 실행프로그램 7번, 10번, 12번 후속조치 검토(공공 전통지식 기준, PIC 등에 관한 모범관행 등)
  4. 재원동원에 있어 토착공동체의 공동행동의 기여도 평가관련 시범 활동 정보 등
    - \*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과 관련 조항에 관한 작업반은 토착공동체가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받도록 보장하고, 전통지식이 토착민 공동체의 사전통지 하에서만 사용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입법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 WHO 집행이사회, PIP 이익공유 프레임 워크 검토

1. WHO는 5월에 열리는 WHO 연례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를 2017년 1월 23일-2월 1일까지 개최
2. 의제 중 하나로 범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와 유전자원 이익공유 사이의 관계 설정을 위한 이익공유 프레임워크(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PIP) 검토 예정(EB 140/16)
3. 주요내용으로 PIP에 유전자 시퀀스 정보의 포함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나고야의정서와 타 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에 대한 조항인 나고야의정서 제4항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은 '다른 국제적 문서'에 PIP가 포함되도록 선언할 것을 제안

## CBD-COP13, 일본 등에 나고야의정서 체결 촉구하며 폐막

1. 2016년 12월 19일 아사히 신문 기사
2. 제13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일본을 포함한 나고야의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조기 체결을 요청하면서 폐막함
3. 일본은 당초에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에 2015년까지 관련 법의 정비 등 국내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한 상황임
4. 일본학술회회가 2016년 12월 6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관련 국제협약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할 것을 제언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국내 조치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가능한 빠른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CBD-COP13 다수의 결정을 내리며 폐막

1. 칸쿤선언: 각국의 환경부, 농림부, 산림부 어업 및 환경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함
2. Good News: 브라질은 2030년까지 사상 최대규모인 22만 헥타르의 땅을 복원, 멕시코는 자연보호지역을 5개 더 설정, 일본은 16만 달러를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내놓기로 함
3. Bad News: IUCN은 700개의 새롭게 발굴된 조류의 11%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30년간 기린이 40%감소하였다고 밝혔고, CBD 사무국은 아이치 타겟의 2/3가 그 마감기한인 2020년까지 실현되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경고함
4. 결정문: 야생동물 고기로부터 침입외래종, 수중소음 및 기후지구공학에 이르기까지 약 70여 개의 합의가 결정문화 되었음
5. 합성생물학: 동물 및 식물에 있어 특정한 유전적 특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진드라이브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결정문은 각국의 정부를 예방적 접근으로 초청하고 합성생물학의 적용에 대한 현재의 위험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CBD가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당사국들을 장려함
6.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경우 LMO의 위험관리, 이동 및 사용 자제와 의도치 않은 LMO의 국경이동에 대한 결정문을 도출하였으며, 나고야의정서의 경우 PIC과 MAT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의 수립에 대해 합의함
7. 디지털 시퀀스: 가장 논란이 심했던 주제로 브라질, 남아공, 인디아의 경우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의 디지털 시퀀스에 대해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몇몇 국가들이 CBD는 물리적 유전자원

만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대응하였으며, 당사국들은 CBD가 디지털 시퀀스가 CBD 및 나고야의정서에 갖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2017 이루어질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에서 이를 보고하여 2018년에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음

## CBD-COP13, 생물다양성에 대한 190여 개국의 논의의 장 칸쿤에서 개막

1. 2016년 12월 2일 멕시코 칸쿤에서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가 개막되었으며, 이 회합은 아이치 타겟(2011-2020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정한 5개 분야의 20개 목표) 중 2/3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가운데, 190개국의 대표들이 생물다양성 소실 및 환경악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 결정들을 내리는 장이 될 것임
2.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관광업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되며 주목 받고 있는 주제는 아래와 같음
  - 해양쓰레기와 수중 소음 문제, 공해 중 생물학적 중요 지역
  - 생태 복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 바이오 에너지, 농업, 제약, 화학분야에서의 합성생물학과 생물다양성
  - 식량 생산과 꽃가루 매개자의 감소 및 멸종 문제
  - 카르타헤나 의정서 및 나고야의정서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증가와 그 영향

1.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CBD 사무총장 Bráulio Ferreira de Souza Dias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Target 2.5도 포함한다고 밝힘
2. 나고야의정서 비준의 증가와 함께 그 영향력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Council fo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WIPO)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문화 정부 간 위원회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미치고 있음

## WHO PIP 프레임워크, 나고야의정서 제4조 상 국제문서 포함 모색

1. 지난 2011년 시작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공유 및 백신 접근을 위한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비 프레임워크"(PIP Framework) 검토그룹이 다가오는 10월 그 결과보고를 앞두고 2016년 8월29-9월 2일까지 최종모임을 가짐
2. 예비 보고서에서 PIP 프레임워크의 범위 문제, 특히 유전자 시퀀스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극도로 복잡한 문제로 미해결 상태로 남겨졌으며, PIP 프레임워크가 나고야의정서 제4조상의 이익공유에 관한 특별협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밝힘
3. 관계자는 WHO 2017 총회에서 PIP 프레임워크가 국제특별협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UNCTAD, ABS 하에서의 생물무역의 촉진 책자 발간

1.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생물무역촉진 프로그램 제 3기의 결과물의 하나로 'ABS 하에서의 생물무역 촉진' 책자 발간
  1. 서론
    - 1.1 생물무역과 그 발전사 개관
    - 1.2 생물무역의 국제적 기초: 생물다양성협약 및 다른 회의들
  2. 생물무역에 있어 나고야의정서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 2.1 ABS 규정이 생물무역에 미치는 영향
    - 2.2 나고야의정서의 근거
    - 2.3 나고야의정서 규정이 생물무역에 미칠 영향
  3. 국가 ABS 법체계와 생물무역: 관련 이용자와 제공자들
  4. 경계 및 범위 설정
    - 4.1 정의 및 예시
    - 4.2 각각의 요소들이 생물무역 비즈니스에서 갖는 의미
    - 4.3 유전자원과 생화학물질의 R&D 및 산업계에서의 사용
    - 4.4 접근 신청을 받았을 때 규제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
  5. 이익공유의 도전
    - 5.1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
  6. PIC과 MAT의 원칙: 현존하는 시도들 및 생물무역에 있어 선택지들
  7. 의무준수규정과 생물무역에 있어서의 의미
  8. 토착민, 토착지역과 생물무역: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지역적 적용에 있어서의 과제 및 도전
  9. 생물무역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과 인증의 역할
  10. 향후 고려할 점 및 과제

## UN, UNCLOS하 ABNJ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규범 준비위원회 개최

1. 2016년 9월 2일 뉴욕 UN 본부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 준비위원회가 개최됨
2. 회의에서는 이익공유 및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의견의 합치가 유력한 부분들에 대해 정의, 원칙, 접근 및 거버넌스 등 심층 논의가 진행됨

## WHO, 나고야의정서와 병원체 공유와 관련한 의견요청

1. 2011년 64회 WHO 총회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공유 및 백신 접근을 위한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비 프레임워크"(PIP Framework)를 채택하였으며 나고야의정서 서문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2005)에 대한 유념을, 제8조(특별고려사항)에 따라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주의를, 그리고 제4조는 타 국제문서와 나고야의정서의 상호보완적인 이행을 규정하고 있음
2. CBD 사무국은 WHO의 요청에 따라 ABS 국가연락기관에 대하여 병원체공유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2016년 7월 31일까지 정보 및 질문을 회람하여 이러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UEBT, 천연물 공급체계 이익공유 매뉴얼 ABSCH 등록

1. 공평한 이익공유
  - 생물다양성에서 나오는 이익을 왜 공유해야 하는가
  - 윤리적 생물무역에 있어서 이익공유의 요구사항
  - 이익공유를 어떻게 이행 할 것인가?
2. 이익공유의 요건
  - 윤리적 생물무역 기준상 이익공유
  - 윤리적 생물무역 기준 제3원칙
  - 공정한 이익공유의 기준
    - 기준 3.1. 투명한 협의 및 대화
    - 기준 3.2 공정한 가격
    - 기준 3.3 지역발전예의 기여
    - 기준 3.4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전통적 관행
    - 기준 3.5 ABS의 법적 요건
    - 기준 3.6 생물다양성에의 접근
    - 기준 3.7 이익공유
    - 기준 3.8 특허와 생물다양성
3. 공평한 이익공유의 평가
  - 왜 이익공유를 평가하는가?
  - 무엇을 평가하는가
    1. 각 이행단계
    2. 대상 기업 및 공급 체계
      - 평가에 사용되는 참고 자료
      - 단계별 평가 절차
        1. 준비절차
        2. 착수회의
        3. 데이터 수집
        4. 훈련
        5. 정보분석
        6. 최종보고
        7. 최종보고서
4. 결론

## GEF, 나고야의정서기금 사용 경과보고서

1. GEF는 나고야의정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기금(NPIF, Nagoya Protocol Implementation Fund)의 프로젝트 기금사용 경과 보고서 발표
2.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
  1.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글로벌 지원
  2. 중앙아프리카산림위원회 회원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지원
  3.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지원
  4.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촉진 및 적용(아르헨티나)
  5. 나고야의정서이행(부탄)
  6. ABS 상향식 접근: 카메룬에서의 벨류체인과의 성공적인 결합을 위한 지역수준역량강화
  7.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콜롬비아 Choco 지역 천연염료 생산개발(화장품, 식품, 펄스널 케어산업)
  8. 쿡아일랜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역량강화
  9. 나고야의정서를 통한 천연물, 이익공유 및 생물다양성 보전(코스타리카)
  10. 천연물 발굴 및 나고야의정서 역량 강화(피지)
  11. 가봉 ABS 이행
  12.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케냐 소다호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의 개발
  13. 파나마 ABS 적용 촉진

## IFDD특집호,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다양한 측면들

1.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국가 연합) 국제기구 산하 지속가능발전 프랑코포니 연구소(Institut de la francophonie pour le developpement durable, IFDD)에서 발간하는 분기별 발간잡지 Energy-link Francophonie에서 2016년1사분기 나고야의정서 특집호 발간
2. 다양한 측면에서 나고야의정서를 고찰한 본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 ABS 이행에 있어서의 일치와 불일치
    - PGRFA와 나고야의정서 Mohamed Ali Mekouar
    - 나고야의정서 측면에서 본 ITPGRFA의 다자이익공유시스템의 적용 Jorge Cabrera Medaglia
    - 농업유전자자원다양성과 나고야의정서의 기여 Sonya Moralès
    - 상업적 계약을 통한 CBD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Jean-Frédéric Morin et Mathilde Gauquelin
  -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당면과제
    - 나고야의정서와 환경권 Élise Morgera
    - 나고야의정서는 전통지식을 보호하는가? Pag-yendu M. Yentchar
    - 토착공동체와 나고야의정서 사이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Adriana Bessa
    -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난관: 제공자와 사용자의 역량 및 신뢰에 대한 변호 Thomas Burelli
    - 바이오산업의 공급체인에 있어 나고야의정서의 영향 Freedom-Kai Phillips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고야의정서 Konstantina Koutouki et Frédéric Perron-Welch
    - ABS, 생물다양성의 제정을 위한 혁신적인 메커니즘인가? Romain Pirard et Renaud Lapeyre
  - 지역적 국가적 경험
    - EU의 ABS 이행 규칙 Brendan Coolsaet
    - 가이아나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이행: 원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 한 박사 뒤쳐진 프랑스령 토착민을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Philippe Karpe
    - 아프리카 연합의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라인 Olivier Rukundo et Pierre du Plessis

아프리카 지역의 나고야의정서법 고찰 Yacouba Savadogo  
 빈곤과의 전쟁: 아프리카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결정적 요소 Yacouba Savadogo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코트디부아르 Abraham Gadjji et Hermann Foua  
 콩고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 Félix Lilakako Malikuka  
 모로코에서의 나고야의정서의 진행 Mostafa Madbouhi  
 캐나다의 ABS Chidi Oguamanam et Freedom-Kai Phillips

## 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Farming matter 특별호

1. 잡지 Farming matter와 Biodiversity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관련 특집호를 발간 하였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음
  - 농부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이론 및 실제
  - 코스타리카 농가를 위한 야채종자재의 접근 개선
  - 중국 남서부의 참여식물육종에 있어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 진화집단유전학: 이란 Farmers Field와 생물유전자은행
  - 브라질의 종자은행과 국가 정책
  - 네델란드의 감자육종: 농부와 상업육종가의 성공적 협업
  - 8개국에서의 식물유전자원 ABS 이행
  - ABS 시스템, 천배는 더 쉬울 수 있었다!
  - 정당한 이익을 지불하지 않는 산업계: 유전자원을 공격하는 특허들
  - 인디아 지역 종자은행의 ABS 이행에 대한 교훈
  - 에콰도르의 소작농 종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다
  - 짐바브웨 가축농을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
  - 결론: 농부가 주도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로부터 배우다

## UEBT, 한국, 페루, 터키 ABS Factsheet 업로드

1. UEBT는 규정, 특별요건, 실제적고려 사항, 연락기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 페루, 터키의 ABS Factsheet를 업로드
2. 한국: 이용국 중심 대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 연구센터, 관련법 및 ABS 이행법 가안소개
3. 페루: ABS 관련법 소개, 유전자원 종류별, 이용목적별 접근절차, 전통지식 접근절차
4. 터키: ABS 관련법 소개, 유전자원 종류별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 [UEBT 각국 ABS 정보] <http://ethicalbiotrade.org/resources/#6>
  - [한국] [http://ethicalbiotrade.org/dl/Korea%20ABS%20fact%20sheet\\_FINAL.pdf](http://ethicalbiotrade.org/dl/Korea%20ABS%20fact%20sheet_FINAL.pdf)
  - [페루] [http://ethicalbiotrade.org/dl/Peru%20ABS%20fact%20sheet\\_FINAL.pdf](http://ethicalbiotrade.org/dl/Peru%20ABS%20fact%20sheet_FINAL.pdf)
  - [터키] [http://ethicalbiotrade.org/dl/Turkey%20ABS%20fact%20sheet\\_FINAL.pdf](http://ethicalbiotrade.org/dl/Turkey%20ABS%20fact%20sheet_FINAL.pdf)

## UEBT, ABS EU 규칙 인포그래픽

1. 윤리적 생물무역연합이 ABS 관련 EU 규칙의 주요 내용을(적용대상 및 준수 의무) 포함하는 인포그래픽 공개
2. 2016년 5월 26일 열리는 UETB 컨퍼런스에서는 네슬레 및 로레알의 R&D에 있어서의 적정주의의무 준수 사례 발표, 브라질 및 모로코에서의 ABS 허가 및 계약 사례 소개 등이 있을 예정임

## SBSTTA, 합성생물학 권고사항 가안 주요내용

1. CBD 제20회 과학기술보조기관회의(SBSTTA20) 합성생물학 문서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2. [합성생물학의 정의] 임시기술전문가그룹(AHTEG)에서 내린 합성생물학의 정의(합성생물학은 과학·기술·공학이 결합되어 유전자원, 생존생물, 생물계에 대한 이해, 디자인, 재설계, 제조 또는 변경을 촉진 및 가속화시키는 현대의 생명공학의 진보된 발전 및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다)에 대한 결정이 보류 되었으며 두 가지 안이 괄호 속에 병기되었음(정의 자체는 변동 없음)  
i)안의 경우 정의를 인정(Acknowledge)하며, 포함 및 배제 기준(criteria)에 대한 추가적 작업이 필요함을 명기  
ii)안의 경우 정의를 적절한 것으로 여김(Deems it appropriate)
3. [유전자배열과 나고야의정서] ABS에 관련된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1)직접 나고야의정서당사국회의에 이를 분명히 해줄 것에 대한 요청, 2)AHTEG에 관련 구성요소에 대한 것을 제안 요청하는 두 가지 안이 결정 보류 처리되어 괄호 속에 표기

## SBI-1 사이드 이벤트: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능력배양 이니셔티브와 그 과제

1. 시간 및 장소: 2016.5.2. 몬트리올
2. 주요 내용
3. 아이치 타겟 16을 향한 과정과 CBD 사무국에 의한 능력배양 지원활동 - 발레리 노만드, CBD 사무국
4.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체계 구축-IDLO-SCBD 훈련 프로그램- 올란다 사이트 IDLO
5.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ABS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 시도 및 도구들- 수헬 알자나비, ABS 능력배양 이니셔티브

## 2016년 UEBT 총회, 5월 16일 파리에서 개최

1. 윤리적생물무역연합(Union for Ethical Bio Trade, 이하 UEBT)에서는 "생물다양성으로부터의 가치창조 및 공유"라는 주제로 2016년 5월 26일 파리에서 총회를 개최함
2. 본 총회에서는 나투라, 웰레다, 러쉬, 바디숍 등 화장품기업들의 사례 및 향후 전략 발표, 7개국 7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생물다양성 바로미터 설문조사결과 발표, 네슬레/로레알 히말라야 제약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사례 발표, 브라질 원료공급기업 베레카 등의 실전 ABS 과정 및 협상사례 발표 등이 이루어질 예정

## Natura 등, 40여 개 원료에 대한 UEBT 윤리적 채취 인증 획득

1. 브라질 화장품 대표기업 나투라와 독일계 화장품원료사 Symrise Amazon은 40여개의 천연물에 대해 UEBT(Union for Ethical Bio Trade)의 윤리적 채취 인증을 획득함
2. 인증을 받은 원료에는 maracuja 기름, cupuacu butter, acai pulp등이 있으며 인증은 회사의 회계감사 및 제공 지역에서의 활동, 회사의 ABS 이해정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주어짐.

## UN 위원회,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 작업 착수

1.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준비위원회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협정에 있어 해양유전자원, 환경영향평가, 기술이전 등이 논의되었음
2. CBD, FAO, IMO 등 타 국제협약과의 조화 문제, 해양생물자원의 취급, 해양생물자원의 ABS 체계의 적절한 모델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지카 바이러스 R&D: 샘플공유에 있어 인센티브의 필요성

1. 9일 WHO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 따르면 현재 지카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1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5개의 학술기관과 15개의 상업기관) 백신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 이나 진단키트의 경우 이미 몇몇 나라의 승인을 얻은 상황임
2.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달리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체계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샘플 공유에 있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며 WHO는 단순한 승인부터 연구도출 물질의 공유, 백신접근의 우선권등의 이익공유 형태를 고려하고 있음

## WHO, 지카바이러스 샘플 공유관련 논의

1. 지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샘플의 공유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문제들이 WHO에서 논의 되고 있음
2. David Heymann 비상위원회 위원장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이 WHO의 이익공유 프레임워크와 (Panda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work) 더불어 CBD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바이러스 제공국과 백신회사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3. WHO 의장 Margaret Chan은 백신에서 나오는 이익뿐 아니라 함께 협업하는 제삼세계 과학자들에게 출간되는 과학논문에 대한 공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글로벌 게놈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ABS 가이드라인

1. 글로벌 게놈 생물다양성 네트워크(Global Genome Biodiversity Network, GGBN)는 인간유래 유전자원을 제외한 유전자원 시료의 장기보전을 위한 국제바이오은행 모임으로 2011년에 시작되어 20개국의 38개 바이오은행이 참여하고 있음
2. GGBN 홈페이지의 ABS 가이드라인은 모범사례, 행동규범, 표준물질이전계약 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 비준 100개국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다

1. 토고(2016.2.10)와 영국(2016.2.22)의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72개국이 되었으며 이로써 2016년 12월에 열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전까지 100개 비준국 달성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됨
2. 비준서가 발효하는데 90일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6년 9월 전에 비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WHO, 국가간 유전물질(병원체 등)의 공유에 있어 나고야의정서의 영향 조사

1. 영국과 네델란드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상업적 이익의 공유가 국가간 병원체 샘플의 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세계 보건 기구에 요청함
2. (관련 기사는 유료 기사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 IDLO-SCBD,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적 체계 구축 역량강화 코스

1. 국제개발법기구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는 개도국 등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적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016년 2월 22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음
2. 본 과정을 통해 지원자들은 온라인 과정 수료 후 5일간의 오프라인 과정을 거쳐, 오프라인 워크샵에서 최신 자료 및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국의 맞춤형 로드맵을 작성하게 됨
  - 이러닝 세션(2016.4.18-5.13) 4주(주당 4-6시간)
  - 대면 워크샵(5월 2회, 9월 2회 중 택 1)
  - 온라인 네트워킹 및 토론(2016.4~12)

## 2016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 “Mainstreaming Biodiversity; Sustaining People and their Livelihoods”

1.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은 오는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로 “Mainstreaming Biodiversity; Sustaining People and their Livelihoods”을 발표
2. 오는 2016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게 될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역시 분야별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

## WIPO 제29차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개최

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6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함 <제29차 회의 임시 의제>
  1. 개최
  2. 위원 선출
  3. 의제 채택(WIPO/GRTKF/IC/29/INF/2, WIPO/GRTKF/IC/29/INF/3)
  4. 제28차 회의 보고서 채택(WIPO/GRTKF/IC/29/2)
  5. 특정 기구의 자격 승인(WIPO/GRTKF/IC/29/2)
  6. 토착 지역 공동체의 참여
    - 자발적 기금의 운영 최근 현황(WIPO/GRTKF/IC/29/3, WIPO/GRTKF/IC/29/INF/4 and WIPO/GRTKF/IC/29/INF/6)
    - 자발적 기금 자문위원회 임명(WIPO/GRTKF/IC/29/3)
    - 토착 지역공동체 패널을 위한 정보 노트(WIPO/GRTKF/IC/29/INF/5)
    -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과 관련된 통합문서(WIPO/GRTKF/IC/29/4)
    -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 문화적 표현과 관련된 주요 용어
    - 클러스터 C 활동(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계약의 옵션들) 보고서(WIPO/GRTKF/IC/29/INF/8)
  8. 세미나의 횟수 및 기간
  9. 기타 사항
  10. 폐회

## ABS 꿀팁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인도의 모링가(*Moringa oleifera*) 잎의 효능 연구를 위해 현지에서 표본 채집을 하는 경우,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하나요?

학술 연구 목적으로 표본을 채집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나고야의정서 제3조, 제6조



화장품 회사인 K社(사)는 보습에 좋다고 알려진 시어버터와 프로폴리스를 첨가한 크림을 개발하였다. 시어버터는 별도의 연구·개발 과정 없이 첨가만 하였으며 프로폴리스는 자체 연구를 통해 피부 흡수율을 높였다. K社(사)는 각각의 원료에 대해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시어버터는 별도의 연구·개발 없이 첨가만 하였으므로 사전통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프로폴리스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이를 상품개발에 이용하였기에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K-기업은 A국가의 발효식품에서 기능성 미생물 균주를 분리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이용하려고 한다. A국가에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미생물자원도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입니다. 미생물을 연구, 개발하여 상업화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국에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EU에서는 미생물자원센터들이 해외 미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수집단계에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EU미생물자원센터연합 ABS 모범관행매뉴얼: [http://www.mirri.org/fileadmin/mirri/media/Dokumente/generalDocs/MIRRI\\_ABS\\_Manual\\_web.pdf](http://www.mirri.org/fileadmin/mirri/media/Dokumente/generalDocs/MIRRI_ABS_Manual_web.pdf)



한국의 K-기업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드링크 제품으로 '힘나용'을 개발하였다. 드링크 제품 원료로 충청남도 금산의 '인삼'을 사용하였다면, 한국의 K-기업은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내국인이 국내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원산지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한 경우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한국의 K-기업은 한국의 느릅나무를 이용하여 비염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후 상업화 단계에서는 저렴한 중국의 느릅나무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K-기업은 중국과 이익공유를 해야 할까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권한은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중국”과 이익공유를 해야 합니다.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각국의 최신 동향과 법률 및 신고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뷰티기업은 식품으로 수입된 감자를 이용하여, 기미·주근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팩을 개발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제4조에 따라, 감자는 ITPGRFA(식량 농업유전자원) 부속서 64종에 포함되므로, 이익공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감자, 옥수수 등과 같이 ITPGRFA(식량농업유전자원) 부속서 64종의 작물이 “식량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ITPGRFA 제12조제3항(a)), 식량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자원 제공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통고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므로, 8월 17일 이후에 접근 하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만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는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이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 법률에 따라 접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인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접근한 노니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후 제품 개발을 해야 합니다.

\*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 : <http://www.abs.go.kr/kabsch/program/nation/list.do?cid=48>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자원환경부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나라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절차준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전자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현재 이 조항은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동안비법’ 화장품회사는 포도 추출물에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항노화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한다. 포도 추출물은 스위스 기업이 프랑스포도를 수입하여, 추출물로 가공 후 ‘동안비법’에 판매된 제품이다. ‘동안비법’은 화장품 연구개발 전에 사전통고승인을 받으려 하는데, 어느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포도의 원산국\*은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 국가책임기관에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간가공업체를 통해 추출물을 공급받았으므로, 스위스 기업에 원산국과의 유전자원 접근 허가에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지만 다행히도 프랑스는 사전통고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는 ①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②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이루어짐.

※ “유전자원 원산국”은 해당 유전자원을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함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얼마 전 올리브 잎 추출물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문헌을 보고,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탈리아 올리브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통고승인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이탈리아는 나고야의 정서 당사국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힘나용’은 이탈리아의 올리브 잎을 이용하기 위해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어도 관련법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ABS Regulation’의 적용을 받으나 제공국으로서의 규정은 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통고승인 취득의 의무는 없습니다.

※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EU ABS Regulation’은 유전자원 이용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국으로서의 규정은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기능이 있는 인도의 까마중(*Solanum nigrum*)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려고 한다.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까마중은 NTC(Normally Traded Commodities) 목록에 포함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도 중앙 정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Normally Traded Commodities)이라는 의미로 무역촉진을 위해 상품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을 목록화하여 생물다양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물자원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상품(commodity)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생물다양성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제품 개발과정에서 원료로 이용하거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법상의 ‘생물자원’으로 적용되어 사전통고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